



2026. 9.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현황·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예산분석관
최성찬 예산분석관
오지은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곽보영 예산분석관
한주희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행정실무관
장강희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 현황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9.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행 주체로서,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정 기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는 2025년 결산 기준 총 824.8조원(정부순지원수입 140.1조원 제외)으로, 우리나라 GDP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684.1조원의 1.2배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관별 근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에는 비상설 조직이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사무조직 역시 위원회 산하 사무처로 확대 개편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초에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 재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면, 국회의 경우는 정부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최근 쟁점이 되는 기관별 최신 이슈나 사업별 세부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예산의 비중이 높아 상당수 국회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본 보고서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현 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3
2.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	7
3. 공공기관 재무 현황	14
4. 공공기관 인력 현황	18
5.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27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31

정무위원회

1. 한국산업은행	41
1-1.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쟁점	41
1-2. 대규모 지분 장기보유 문제 해소를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확보 필요	58
2. 중소기업은행	60
2-1. 여신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영상 대응방안 확대 필요	60
2-2. 취약산업이나 저신용 영세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67
2-3.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의 관리 운영방향 정립 필요	73
3. 한국자산관리공사	80
3-1. 장기 공매유찰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80
3-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관련 쟁점	87

CONTENTS

4. 신용보증기금	94
4-1. P-CBS 직접발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위험관리체계 마련 필요	94
4-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 필요	101
5. 한국주택금융공사	107
5-1.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관련 신탁계정의 적자 누적 문제	107
6. 서민금융진흥원	115
6-1. 외부 자원성 수익 변동을 고려한 자활지원 계정 자체사업 손익 관리 필요	119
6-2. 자체 서민금융사업의 상환·자활 성과 중심 관리체계 마련 필요	123
6-3. 직접대출채권 상각·제각 이후 회수관리 강화 필요	127
6-4.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위험 관리 필요	131
6-5. 근로자햇살론의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상 적정성 점검 필요	138
6-6. 미수보증료 증가에 따른 연도별·상품별 발생 및 회수실적 등 관리 필요	143
6-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높은 신용손실을 고려한 금융개선 성과관리 강화 필요	146



CONTENTS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한국수출입은행	153
1-1. 신용 편중 리스크에 취약한 기본 사업구조에 대한 재무적 보완 필요	153
2. 한국투자공사	157
2-1. 외부위탁 운용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운용성과 검증 필요	157
2-2. 약 7조원의 전략적투자 결정 이후 실제 납입 및 정책성과 관리 강화 필요	165
3. 한미전략투자공사	169
3-1.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172
3-2.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 간 자금거래, 위험 이전 방지를 위한 통제 필요	17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한국방송공사(KBS)	183
1-1. 근로감독 지적 이후 유사 사례 재발에 따른 프리랜서 인력운영 개선 필요	183
1-2.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 악화에 따른 수입원별 개선방안과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 필요	187
1-3. 시설투자 여력 악화에 따른 교체·유지보수계획 마련 필요	193
1-4. 반복적 손실이 발생하는 KBS 출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197



CONTENTS

1-5. 정원 적정성 점검 및 인력운영 개선 필요	201
1-6.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속적인 미달에 따른 개선 필요	204
1-7. 주택용자금 저리 대출 등 과도한 전세지원금 혜택 지양 필요	207
1-8.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제도 적정성 검토 필요	211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14
2-1.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입구조 다변화 필요	214
2-2. 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 제작설비 투자 위축	220
2-3. 한국교육방송공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문제	2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29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운영 현황 및 재정적 쟁점 분석	229
1-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의 공적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23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한국농어촌공사	241
1-1. 농지연금의 가입 대기 관리 필요	241
1-2.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적격성 관리 철저 필요	247
1-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분양 실적 제고 필요	251
2. 한국마사회	254
2-1. 자회사 위·수탁계약금액 산정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254
2-2. 종축개발사업의 발굴 성과 확산 및 정책효과 관리 강화 필요	258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63
3-1. 인수 비축기지의 지속적 적자 개선 노력 필요	263
3-2. 위탁 비축기지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267
3-3. 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269
4.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72
4-1. 농림수산물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272
5.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공통	281
5-1. 중장기 재무관리 및 사업부문별 실적 공시 필요	281
6. 부산항만공사	287
6-1.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와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287
6-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랜드마크 부지의 매각 지연 및 직접개발에 따른 재무부담 우려	294



CONTENTS

7. 인천항만공사	299
7-1. 일시적 요인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와 수익 기반 약화 문제	299
7-2. 골든하버 부지 매각에 상당 부분 의존한 부채감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 ..	306
7-3. 항만배후단지 미임대 장기화 문제	310
7-4.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에 따른 사업방식 및 재정부담 검토 필요	313
8. 여수광양항만공사	317
8-1.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구체화 필요	317
8-2.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연	323
9. 해양환경공단	327
9-1. 법령상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	327

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하며, 기관의 규모, 정부지원 정도, 사업성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 해제, 유형변경이 이루어짐
-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경영실적평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공시, 경영혁신 등이 적용됨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함¹⁾
 -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그 외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그 중 기금관리 및 기금관리 위탁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정부업무 위탁집행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됨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30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20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관리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운영상 자율성이 높음

[2026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0개)	시장형 (14개)	직원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원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16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준정부 기관 (58개)	기금관리형 (12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¹⁾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46개)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5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총 342개					

주: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 및 개별법에 따라 직접 기금을 관리하도록 명시된 자(기금관리주체: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를 의미함. 반면, 그 외에 개별 기금사업의 집행이나 기금 관리의 일부 업무만 위탁받은 기관(예. 한국관광공사(관광진흥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 2026년 지정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42개로 2025년 331개 대비 11개 증가함

- (신규지정 +11)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
- (지정해제) 없음
- (유형변경)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됨
- 공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1개 감소(31개 → 30개)하였고, 준정부기관의 수는 전년 대비 1개 증가(57개 → 58개)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11개 증가함(243개 → 254개)

[지정 유형별 공공기관 지정현황(2026년 지정 기준)]

(단위: 개)

구분	2025	2026.8.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1	30	△1	-	-	△1
■ 시장형	14	14	-	-	-	-
■ 준시장형	17	16	△1	-	-	△1
② 준정부기관	57	58	+1	-	-	+1
■ 기금관리형	12	12	-	-	-	-
■ 위탁집행형	45	46	+1	-	-	+1
③ 기타공공기관	243	254	+11	+11	-	-
합계	331	342	+11	+11	-	-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2026년도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 2026년 지정 기준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48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각각 37개로 그 뒤를 이었음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지정현황(2026년 지정 기준)]

(단위: 개)

소관 위원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법제사법위원회	-	-	-	1	2	3
정무위원회	-	-	4	2	31	3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1	-	1	6	8
교육위원회	-	-	-	1	22	2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	-	6	20	26
외교통일위원회	-	-	-	1	4	5
국방위원회	-	-	-	-	5	5
행정안전위원회	-	-	1	2	4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1	1	32	3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2	-	6	29	3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2	4	6	22	37
보건복지위원회	-	-	1	3	30	34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8	4	1	12	23	48
국토교통위원회	3	6	-	4	18	31
성평등가족위원회	-	-	-	-	6	6
계	14	16	12	46	254	342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1.29.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 342개(2026년 1월 기준)의 지출(수입)은 2025년 기준 964조 9,048억원으로 2024년 대비 16조 8,626억원 증가함(부설기관 포함)
- 2025년 전체 지출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27.6%이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4%, 기타공공기관 19.7%, 준시장형 공기업이 9.1%를 차지함
 - 2025년 지출 총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7조 9,572억원, 3.7%)이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유형은 기타공공기관(△7조 7,171억원, △3.9%)임

[공공기관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비중)	증감 (B-A)
공기업	시장형	1,827,682	2,729,467	2,599,765	2,614,334	2,660,970 (27.6)	46,636 (1.8)
	준시장형	737,917	741,252	769,496	819,725	881,209 (9.1)	61,484 (7.5)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0	2,240,212 (23.2)	79,571 (3.7)
	위탁집행형	1,579,595	1,729,080	1,829,234	1,910,804	1,968,910 (20.4)	58,106 (3.0)
기타공공기관		1,426,807	2,103,120	1,723,622	1,974,918	1,897,747 (19.7)	△77,171 (△3.9)
합계		7,486,415	9,433,600	9,145,280	9,480,422	9,649,048 (100.0)	168,626 (1.8)

주: 1.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2. 기타공공기관인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입·지출을 포함한 수치임
 3.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및 부설기관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4개 공공기관의 2025년 총지출은 266조 970억 원임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77.8%(2025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전력공사	765,284	1,141,126	1,096,191	1,185,288	1,184,434
한국가스공사	302,545	561,193	488,685	432,678	425,532
한국수력원자력(주)	124,949	142,805	148,349	171,759	185,739
한국도로공사	133,166	148,900	163,806	155,833	148,680
한국서부발전(주)	57,050	107,402	89,124	91,640	126,240
5개 기관 계(A)	1,382,994	2,101,426	1,986,155	2,037,198	2,070,624
전체 시장형 공기업 합계(B)	1,827,682	2,729,467	2,599,765	2,614,334	2,660,970
비중(A/B)	75.7	77.0	76.4	77.9	77.8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16개 공공기관의 2025년 총지출은 88조 1,209 억원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준시장형 공기업 전체 수입·지출의 90.2%(2025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준시장형 공기업의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499,534	449,236	429,392	458,576	507,284
한국철도공사	79,944	100,358	97,364	101,981	118,680
한국수자원공사	56,689	64,395	63,497	60,299	70,029
주택도시보증공사	16,510	17,757	56,109	69,519	60,131
한국광해광업공단	7,240	29,104	40,349	39,146	38,870
5개 기관 계(A)	659,918	660,850	686,711	729,521	794,995
전체 준시장형 공기업 합계(B)	737,917	741,252	769,496	819,725	881,209
비중(A/B)	89.4	89.2	89.2	89.0	90.2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12개 공공기관의 2025년 총지출은 224조 212억원임
 -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8.3%(2025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민연금공단	299,694	349,071	399,503	446,133	505,801
한국주택금융공사	511,687	371,874	677,868	510,953	500,469
공무원연금공단	232,064	249,031	273,966	301,557	331,384
예금보험공사	252,517	253,156	293,759	299,160	262,8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9,455	164,078	157,159	151,207	154,296
5개 기관 계(A)	1,465,418	1,387,211	1,802,256	1,709,011	1,754,832
전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합계(B)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0	2,240,212
비중(A/B)	76.5	65.1	81.1	79.1	78.3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86.7%(2025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1,043,015	1,164,493	1,235,231	1,296,255	1,345,555
국가철도공단	103,473	102,652	110,617	120,913	119,141
한국장학재단	83,195	91,823	95,854	97,292	105,704
한국연구재단	77,850	85,378	98,030	100,088	85,065
한국농어촌공사	44,518	45,654	46,748	47,103	51,441
5개 기관 계(A)	1,352,052	1,490,001	1,586,480	1,661,652	1,706,905
전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합계(B)	1,579,595	1,729,080	1,829,234	1,910,804	1,968,910
비중(A/B)	85.6	86.2	86.7	87.0	86.7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264개 공공기관(10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89조 7,747억원임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이들 상위 5개 기관의 수입·지출이 기타공공기관 전체 수입·지출의 75.6%(2025년 기준)를 차지함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수입·지출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중소기업은행	496,935	697,830	609,239	672,094	633,727
한국산업은행	343,707	594,541	361,713	445,212	396,354
한국수출입은행	95,121	298,069	221,426	296,995	258,36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0,755	125,161	112,713	115,650	118,384
서민금융진흥원	13,929	15,333	25,505	29,794	28,532
5개 기관 계(A)	1,080,447	1,730,934	1,330,596	1,559,746	1,435,357
전체 기타공공기관 합계(B)	1,426,807	2,103,120	1,723,622	1,974,918	1,897,747
비중(A/B)	75.7	82.3	77.2	79.0	75.6

주: 수입과 지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기관의 경우 지출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¹⁾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원) 대비 11조 9,597억원(9.3%)이 증가함

- 2025년 정부순지원수입 규모는 기금관리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0.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1.3%), 기타공공기관(13.9%), 준시장형 공기업(3.3%), 시장형 공기업(0.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기금의 위탁관리나 정부업무의 위탁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 정부순지원수입의 대부분(82.1%)을 차지하고, 자체사업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공기업은 비중이 4.1%로 매우 낮음

1) 정부순지원수입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등을 말함. 단, 출자금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인 현금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음(현물출자는 제외)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기업	시장형	23,092 (2.4)	25,280 (2.4)	18,194 (1.5)	22,786 (1.8)	10,793 (0.8)
	준시장형	54,555 (5.6)	53,370 (5.0)	50,281 (4.3)	57,117 (4.5)	45,579 (3.3)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385,774 (39.4)	445,053 (41.6)	560,003 (47.4)	620,917 (48.5)	712,199 (50.8)
	위탁집행형	372,496 (38.1)	398,207 (37.2)	394,971 (33.5)	424,489 (33.1)	438,459 (31.3)
기타공공기관		142,731 (14.6)	148,258 (13.9)	156,901 (13.3)	156,183 (12.2)	194,059 (13.9)
합계		978,648 (100.0)	1,070,168 (100.0)	1,180,350 (100.0)	1,281,492 (100.0)	1,401,089 (100.0)

주: () 안은 해당 연도의 총계 중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전체의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전년 대비 1.0%p 증가
 - 2025년 총수입 중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2.3%), 기타공공기관(10.2%), 준시장형 공기업(5.2%), 시장형 공기업(0.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은행형 기관을 포함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중심으로 정부순지원수입이 증가하였음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순지원수입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기업	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23,092	25,280	18,194	22,786	10,793
		총수입(B)	1,827,681	2,729,467	2,599,765	2,614,334	2,660,970
		비중(A/B)	1.3	0.9	0.7	0.9	0.4
	준시장형	정부순지원수입(A)	54,555	53,370	50,281	57,117	45,579
		총수입(B)	737,917	741,252	769,496	819,725	881,209
		비중(A/B)	7.4	7.2	6.5	7.0	5.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정부순지원수입(A)	385,774	445,054	560,003	620,917	712,199
		총수입(B)	1,914,414	2,130,681	2,223,163	2,160,640	2,240,212
		비중(A/B)	20.2	20.9	25.2	28.7	31.8
	위탁집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372,496	398,207	394,971	424,489	438,459
		총수입(B)	1,579,595	1,729,080	1,829,234	1,910,804	1,968,910
		비중(A/B)	23.6	23.0	21.6	22.2	22.3
기타공공기관	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4,687	7,250	3,429	4,900	12,412
		총수입(B)	935,763	1,590,440	1,192,377	1,414,301	1,288,442
		비중(A/B)	1.6	0.5	0.3	0.3	1.0
	비은행형	정부순지원수입(A)	128,044	141,008	153,472	151,283	181,647
		총수입(B)	491,044	512,680	531,245	560,617	609,305
		비중(A/B)	26.1	27.5	28.9	27.0	29.8
	소계	정부순지원수입(A)	142,731	148,258	156,901	156,183	194,059
		총수입(B)	1,426,807	2,103,120	1,723,622	1,974,918	1,897,747
		비중(A/B)	10.0	7.0	9.1	7.9	10.2
합계	정부순지원수입(A)	978,648	1,070,168	1,180,350	1,281,492	1,401,089	
	총수입(B)	7,486,415	9,433,600	9,145,280	9,480,422	9,649,048	
	비중(A/B)	13.1	11.3	12.9	13.5	14.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 까지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함
 -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다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음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재정경제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3월 15일까지 제출 4월 10일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5일
회계검사 결과 재정경제부 송부	감사원 → 재정경제부장관	5월 20일	7월 10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7월 31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210.3조원, 부채총액은 768.6조원, 당기순이익은 13.3조원으로 2024년 대비 자산은 58.1조원, 부채는 27.1조원, 당기순손익은 5.2조원이 증가함

- 2025년 부채비율은 174.1%로 나타났으며, 2024년 대비 2025년의 부채 증가율보다 자본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전년 180.5% 대비 6.4%p 하락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1년 26.3%에서 2023년 29.5%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5년 28.7%로 소폭 감소함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2021~2025)]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962.0	1,048.2	1,097.7	1,152.2	1,210.3	58.1	5.0
부채	584.4	671.0	709.7	741.5	768.6	27.1	3.7
(부채비율)	154.7	177.8	182.9	180.5	174.1	△6.4	-
(GDP 대비 비율)	26.3	28.8	29.5	28.9	28.7	△0.2	-
당기순이익	10.7	△13.9	△3.2	8.1	13.3	5.2	-

주: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기본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위 표의 수치 중 일부에서 단순 차이가 발생함
 3. GDP 대비 부채비율 산정 시 GDP는 연도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 지표를 사용하였음
 4. 합계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342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6.4.30.,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1,175.0조원(GDP대비 46.0%)이며,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8조원(GDP대비 49.7%),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6조원(GDP대비 68.0%) 수준임

- 국가채무(D1)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기준에 따른 채무를 의미함
-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을 의미함
-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임

[국가부채 통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유형	2024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75.0조원 (46.0%)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270.8조원 (49.7%)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738.6조원 (68.0%)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구)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12.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4년 1,270.8조원(GDP대비 49.7%)이며, 2023년 1,217.3조원(GDP 대비 50.5%) 대비 53.5조원 증가
- 이 중 중앙정부에 속한 비영리공공기관(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 포함)의 부채는 2023년 59.0조원(GDP 대비 2.5%)에서 2024년 62.0조원(GDP 대비 2.4%)으로 2.9조원 증가함
 - 2024년 일반정부 부채(D2) 산출 시 포함된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중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214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임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3(A)	2024(B)	증감(B-A)
일반정부 부채 (=①+②+③)	1,217.3	1,270.8	53.5
중앙정부(①)	1,167.6	1,219.7	52.1
- 회계·기금	1,128.3	1,182.9	54.6
- 비영리공공기관	59.0	62.0	2.9
- 내부거래	△19.7	△25.1	△5.4
지방정부(②)	70.7	74.6	3.9
- 회계·기금	67.5	70.9	3.4
- 비영리공공기관	4.3	4.5	0.3
- 내부거래	△1.0	△0.8	0.2
내부거래(③)	△21.0	△23.5	△2.5

자료: (구)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12.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부문 부채(D3)는 2024년 1,738.6조원(GDP 대비 68.0%)이며 2023년 1,673.3조원(GDP 대비 69.5%) 대비 65.3조원 증가
- 중앙 비금융공기업(KBS, EBS,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포함)의 부채는 2024년 518.4조원(GDP 대비 20.3%)이며, 2023년 504.0조원(GDP 대비 20.9%) 대비 14.4조원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단위: 조원)

구분	2023(A)	2024(B)	증감(B-A)
공공부문 부채 (=①+②+③)	1,673.3	1,738.6	65.3
일반정부(①)	1,217.3	1,270.8	53.5
비금융공기업(②)	545.4	567.5	22.1
- 중앙 비금융공기업	504.0	518.4	14.4
- 지방 비금융공기업	54.6	59.0	4.4
- 내부거래	△13.2	△9.9	3.3
내부거래(③)	△89.5	△99.6	△10.2

자료: (구)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5.12.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¹⁾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²⁾과 소속외인력³⁾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현원기준)은 45만 3,904명임
-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4년 대비 8,327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이 전년 대비 6,442명 증가, 비정규직은 832명 증가, 소속외인력은 1,054명 증가함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정규직	임원	785 (0.2)	779 (0.2)	765 (0.2)	795 (0.2)	755 (0.2)	△40	△0.1
	일반 정규직	339,569 (76.2)	344,139 (76.4)	344,700 (76.6)	342,231 (76.8)	349,079 (76.9)	6,848	0.7
	무기 계약직	54,556 (12.2)	55,360 (12.3)	53,892 (12.0)	52,953 (11.9)	52,585 (11.6)	△368	△0.9
	소계	394,910 (88.6)	400,278 (88.8)	399,357 (88.8)	395,978 (88.9)	402,420 (88.7)	6,442	0.5
	비정규직	21,978 (4.9)	21,498 (4.8)	21,798 (4.8)	21,826 (4.9)	22,658 (5.0)	832	0.8
소속외인력		29,013 (6.5)	28,842 (6.4)	28,820 (6.4)	27,773 (6.2)	28,827 (6.4)	1,054	△0.2
합계		445,901 (100.0)	450,619 (100.0)	449,975 (100.0)	445,577 (100.0)	453,904 (100.0)	8,327 (100.0)	0.4

주: ()는 비중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주희 예산분석관 (hnjuhi@assembly.go.kr, 6788-4685)

-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6. 5. 1. 자료를 기준(신규지정기관 포함, 지정해제기관 제외)으로 하며,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력규모 현황임
- 2)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소속외인력(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일일근로자 등을 의미함
- 3)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채용한 인력을 의미함

-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은 42만 8,550명, 현원은 40만 2,420명임
-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4,602명 증가, 현원은 전년 대비 6,442명 증가함
 - 공공기관 임직원 정규직의 2025년 정원은 42만 8,550명이었으나 현원은 2만 6,130명 미충원된 40만 2,420명임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정원에 비해 2만명 이상, 정원의 5% 이상 미충원되었으며 2025년의 경우 정원의 6.1%, 총 2만 6,130명 미충원 되었음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8,867	149,984	147,595	148,442	149,333	891	0.1
시장형	75,530	76,169	75,027	75,438	75,896	458	0.1
준시장형	73,337	73,815	72,568	73,004	73,437	433	0.0
준정부기관	117,578	119,480	116,862	117,818	118,973	1,155	0.3
기금관리형	31,063	31,660	30,890	31,124	31,496	372	0.3
위탁집행형	86,515	87,820	85,972	86,694	87,477	783	0.3
기타공공기관	156,626	160,822	157,054	157,687	160,243	2,556	0.6
은행형 공공기관	18,504	18,610	18,274	18,345	18,321	△24	△0.2
기타	138,122	142,212	138,781	139,343	141,923	2,580	0.7
합계	423,071	430,286	421,512	423,948	428,550	4,602	0.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현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B)	2025 (A)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41,964	143,869	142,941	142,385	143,758	1,373	0.3
시장형	73,155	73,772	73,130	72,962	73,435	473	0.1
준시장형	68,809	70,097	69,812	69,423	70,323	900	0.5
준정부기관	111,928	112,999	112,724	112,614	113,502	888	0.3
기금관리형	29,238	29,469	29,563	29,652	29,870	218	0.5
위탁집행형	82,690	83,530	83,161	82,962	83,632	670	0.3
기타공공기관	141,018	143,411	143,692	140,979	145,160	4,180	0.7
은행형 공공기관	16,974	16,914	16,805	16,875	16,827	△48	△0.2
기타	124,044	126,497	126,887	124,105	128,333	4,228	0.9
합계	394,910	400,278	399,357	395,978	402,420	6,442	0.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교(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B)	증감 (B-A)
정원(C)	423,071	430,286	421,512	423,948	428,550	4,602
현원(D)	394,910	400,278	399,357	395,978	402,420	6,442
차이(C-D)	28,161	30,008	22,155	27,970	26,130	△1,840
비율[(C-D)/C]	6.7	7.0	5.3	6.6	6.1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5만 8,817명, 현원은 5만 2,585명임
- 2025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전년 대비 255명 감소, 현원은 전년 대비 367명 감소함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2025년 정원은 5만 8,817명이었으나 현원은 6,232명 미충원된 5만 2,585명임
 - 2025년의 경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은 전체 정규직 임직원 정원 대비 13.7%를 차지하며 정원의 10.6%, 총 6,232명 미충원되었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증감 (B-A)
					정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11,767	11,744	11,110	11,176	11,137	7.5	△39
시장형	4,335	4,328	4,255	4,305	4,333	5.7	28
준시장형	7,432	7,416	6,855	6,871	6,804	9.3	△67
준정부기관	19,802	19,842	18,667	18,647	18,664	15.7	17
기금관리형	5,451	5,416	4,993	4,994	4,996	15.9	2
위탁집행형	14,351	14,426	13,674	13,653	13,668	15.6	15
기타공공기관	31,991	32,152	29,391	29,248	29,015	18.1	△233
은행형 공공기관	4,416	4,420	3,584	3,353	3,060	16.7	△293
기타	27,575	27,732	25,808	25,896	25,956	18.3	60
합계	63,560	63,738	59,169	59,072	58,817	13.7	△255
정규직 대비 비율	15.0	14.8	14.0	13.9	13.7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증감 (B-A)
					현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9,432	10,556	10,450	10,216	10,032	7.0	△184
시장형	4,046	4,129	4,077	4,001	4,005	5.5	4
준시장형	5,386	6,427	6,372	6,215	6,027	8.6	△188
준정부기관	17,535	17,444	17,139	16,797	16,485	14.5	△312
기금관리형	4,697	4,554	4,508	4,434	4,302	14.4	△132
위탁집행형	12,837	12,890	12,630	12,362	12,183	14.6	△180
기타공공기관	27,590	27,360	26,304	25,940	26,069	18.0	128
은행형 공공기관	3,371	3,340	2,828	2,651	2,379	14.1	△272
기타	24,219	24,020	23,477	23,289	23,690	18.5	400
합계	54,556	55,360	53,892	52,953	52,585	13.1	△367
정규직 대비 비율	13.8	13.8	13.5	13.4	13.1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⁴⁾은 1만 464명임

-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임
- 202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은 2021년 대비 2,009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함

4)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합산 수치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4,186	4,514	5,341	5,759	5,828	1,642	8.6
시장형	1,556	1,905	2,261	2,655	2,733	1,177	15.1
준시장형	2,630	2,609	3,080	3,104	3,095	465	4.2
준정부기관	2,788	2,685	2,786	2,933	3,002	214	1.9
기금관리형	629	637	685	693	689	60	2.3
위탁집행형	2,159	2,048	2,101	2,240	2,313	154	1.7
기타공공기관	1,481	1,629	1,750	1,721	1,634	153	2.5
은행형 공공기관	390	416	504	479	385	△5	△0.3
기타	1,091	1,213	1,246	1,242	1,249	158	3.4
합계	8,455	8,818	9,877	10,413	10,464	2,009	5.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⁵⁾ 현원은 2만 2,658명임

- 2025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원은 전년 대비 831명 증가하였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5.6%에 해당함
- 2025년의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 2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실적은 1,176건임

5)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및 재택/가내 근로자, 일시/간헐 업무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을 포함하며 소속외인력은 제외됨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증감 (B-A)
					현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2,882	2,710	2,557	2,375	2,668	1.9	293
시장형	606	501	574	584	623	0.8	39
준시장형	2,276	2,210	1,983	1,791	2,045	2.9	254
준정부기관	4,741	3,768	3,654	4,004	4,311	3.8	307
기금관리형	1,639	904	701	662	769	2.6	106
위탁집행형	3,102	2,864	2,953	3,342	3,542	4.2	200
기타공공기관	14,355	15,020	15,587	15,447	15,679	10.8	232
은행형 공공기관	323	314	320	320	348	2.1	28
기타	14,032	14,706	15,266	15,127	15,331	12.0	204
합계	21,978	21,498	21,798	21,826	22,658	5.6	831
정규직 대비 비율	5.6	5.4	5.5	5.5	5.6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합계
공기업	4	164	67	205	144	584
시장형	4	164	67	205	144	584
준시장형	-	-	-	-	-	-
준정부기관	115	43	97	53	31	339
기금관리형	-	-	-	-	-	-
위탁집행형	115	43	97	53	31	339
기타공공기관	70	62	27	67	27	253
은행형 공공기관	-	7	-	2	-	9
기타	70	55	27	65	27	244
합계	189	269	191	325	202	1,17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원은 2만 8,827명임

- 2025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원은 전년 대비 1,054명 증가하였고, 정규직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은 7.2%에 해당함
- 2025년의 경우,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1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된 실적은 3,054명임

[공공기관 소속외인력 현원 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A)	2025		증감 (B-A)
					정원 (B)	정규직 대비 비율	
공기업	15,619	16,103	16,099	15,133	15,811	11.0	678
시장형	12,686	13,211	13,087	12,171	12,636	17.2	465
준시장형	2,933	2,892	3,012	2,962	3,175	4.5	213
준정부기관	5,054	4,773	4,782	4,772	5,078	4.5	306
기금관리형	915	765	671	794	866	2.9	72
위탁집행형	4,139	4,008	4,111	3,978	4,212	5.0	234
기타공공기관	8,341	7,967	7,940	7,868	7,938	5.5	70
은행형 공공기관	1,094	1,224	1,267	1,355	1,242	7.4	△113
기타	7,247	6,743	6,673	6,513	6,696	5.2	183
합계	29,013	28,842	28,820	27,773	28,827	7.2	1,054
정규직 대비 비율	7.4	7.2	7.2	7.0	7.2	-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소속외인력의 정규직 전환실적(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합계
공기업	20	99	1	1,321	5	1,446
시장형	-	-	-	1,321	2	1,323
준시장형	20	99	1	-	3	123
준정부기관	141	-	-	-	-	141
기금관리형	32	-	-	-	-	32
위탁집행형	109	-	-	-	-	109
기타공공기관	1,109	6	72	158	122	1,467
은행형 공공기관	-	-	-	-	-	-
기타	1,109	6	72	158	122	1,467
합계	1,270	105	73	1,479	127	3,054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공공기관(2026년 지정 기준) 일반정규직 평균 보수는 7,377만원으로 2024년 7,164만원에 비해 213만원 증가하였음
-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낮았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경우는 평균 보수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서도 높았음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 현황(2021~2025)]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81,710	83,226	84,286	85,955	89,052	3,097	2.2
시장형	86,829	88,894	89,206	91,814	95,895	4,081	2.5
준시장형	77,230	78,267	79,980	80,828	83,065	2,237	1.8
준정부기관	70,083	70,920	72,304	73,909	76,105	2,196	2.1
기금관리형	79,551	80,480	81,691	83,382	85,863	2,481	1.9
위탁집행형	67,765	68,578	70,005	71,588	73,715	2,127	2.1
기타공공기관	65,300	66,191	67,584	69,478	71,493	2,015	2.3
은행형 공공기관	108,885	109,299	109,822	112,890	115,925	3,035	1.6
기타	64,779	65,676	67,079	68,959	70,962	2,003	2.3
전체	67,566	68,482	69,838	71,638	73,769	2,131	2.2

주: 시스템에 공개된 유형별 통계자료를 따랐으며, 다만 은행형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별 공시자료를 단순 평균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¹⁾은 2025년 1억 9,944만원으로 2024년 1억 9,086만원 대비 858만원 증가하였으며, 2021~202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2.3%였음

- 2021년부터 2025년 동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이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3억 8,726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한편, 시장형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2025년 2억 4,94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01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현황(2021~2025)]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207,722	202,715	190,263	196,325	220,381	24,056	1.5
시장형	221,655	216,233	180,183	203,428	249,439	46,011	3.0
준시장형	195,531	190,887	199,083	190,111	194,955	4,844	△0.1
준정부기관	193,703	195,988	209,498	212,316	224,985	12,669	3.8
기금관리형	253,087	255,554	258,876	263,938	280,468	16,530	2.6
위탁집행형	178,211	180,449	196,617	198,850	210,512	11,662	4.3
기타공공기관	175,954	179,447	179,495	184,995	190,612	5,617	2.0
은행형 공공기관	419,330	390,865	383,153	405,335	387,263	△18,072	△2.0
기타	173,045	176,920	177,061	182,361	188,262	5,900	2.1
전체	182,208	184,626	185,863	190,863	199,440	8,577	2.3

주: 시스템에 공개된 유형별 통계자료를 따랐으며, 다만 은행형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별 공시자료를 단순 평균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은 연봉제 방식으로 보수 계약을 체결하며, 임원 평균연봉은 기본급, 성과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2025년 1억 6,669만원으로 전년(1억 5,896만원) 대비 773만원 증가하였음

- 2021~2025년 동안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5년 기준 2억 1,854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5년 기준 1억 4,869만원임
- 시장형 공기업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1억 8,4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4만원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 대비 354만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작았음
- 기타공공기관의 2025년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1억 5,868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보다 약간 낮았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2억 9,324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 현황(2021~2025)]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57,125	152,215	144,608	149,579	165,395	15,816	1.3
시장형	167,006	161,451	138,956	154,642	184,485	29,843	2.5
준시장형	148,479	144,134	149,553	145,149	148,691	3,542	0.0
준정부기관	156,846	159,640	169,969	171,625	181,095	9,470	3.7
기금관리형	201,544	202,403	204,207	206,050	218,543	12,493	2.0
위탁집행형	142,731	146,136	159,157	160,755	169,270	8,515	4.4
기타공공기관	148,331	151,190	151,588	154,825	158,681	3,856	1.7
은행형 공공기관	308,937	284,561	283,319	295,488	293,242	△2,246	△1.3
기타	146,411	149,596	150,014	153,144	157,073	3,929	1.8
전체	152,588	153,971	155,942	158,962	166,694	7,732	2.2

주: 시스템에 공개된 유형별 통계자료를 따랐으며, 다만 은행형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별 공시자료를 단순 평균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2025년 1억 7,544만원으로 전년(1억 6,682만원) 대비 862만원 증가하였음

- 2021~2025년 동안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 유형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2025년 기준 2억 2,829만원, 가장 낮은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25년 기준 1억 5,423만원이었음
- 시장형 공기업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1억 8,1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0만원이 증가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2025년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1억 7,027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은행형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2억 9,846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높았음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 현황(2021~2025)]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159,255	153,840	146,884	149,424	166,163	16,739	1.1
시장형	172,809	163,040	144,257	151,755	181,355	29,600	1.2
준시장형	148,605	146,612	148,948	147,592	154,226	6,634	0.9
준정부기관	167,963	171,411	174,602	182,124	189,751	7,627	3.1
기금관리형	204,835	208,961	211,641	215,165	228,291	13,126	2.7
위탁집행형	147,683	150,759	154,230	163,952	168,555	4,603	3.4
기타공공기관	162,835	159,416	161,546	165,864	170,272	4,408	1.1
은행형 공공기관	314,207	289,420	288,236	300,774	298,458	△2,316	△1.3
기타	161,026	157,862	160,032	164,252	168,740	4,488	1.2
전체	163,574	161,863	161,944	166,824	175,439	8,615	1.8

주: 시스템에 공개된 유형별 통계자료를 따랐으며, 다만 은행형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별 공시자료를 단순 평균한 수치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지증진))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함
 - 각 평가 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됨
 - 범주별 가중치는 공기업이 경영관리 50점·주요사업 50점,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이 45점·55점,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이 40점·60점이며, 이와 별도로 혁신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혁신가점) 5점을 부여함

[평가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¹⁾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2025)]

(단위: 개, %)

구분		기관명
공기업 (31)	SOC(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11)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 (12)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57)	기금관리형 (9)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 형 (48)	SOC 안전 (14)
		산업 진흥 (16)
		국민 복지 증진 (18)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1) 기관평가의 대상이 되는 88개 기관(공기업 31개·준정부기관 57개) 중 기관장평가는 82개 기관('25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감사평가는 58개 기관 대상(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25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5개(17.0%), 양호(B) 29개(33.0%), 보통(C) 28개(31.8%), 미흡(D) 13개(14.8%), 아주미흡(E) 3개(3.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1~2025)]

(단위: 개)

구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공기업	2021	36	1	8	9	13	4	1
	2022	36	-	5	13	12	5	1
	2023	32	-	6	10	11	4	1
	2024	32	-	5	11	9	6	1
	2025	31	-	6	10	10	4	1
준정부 기관	2021	57	-	10	22	17	6	2
	2022	57	-	7	23	21	4	2
	2023	55	-	9	20	18	7	1
	2024	55	-	10	17	22	3	3
	2025	57	-	9	19	18	9	2
공기업 · 준정부 기관	2021	93 (100.0)	1 (1.1)	18 (19.4)	31 (33.3)	30 (32.3)	10 (10.8)	3 (3.2)
	2022	93 (100.0)	-	12 (12.9)	36 (38.7)	33 (35.5)	9 (9.7)	3 (3.2)
	2023	87 (100.0)	-	15 (17.2)	30 (34.5)	29 (33.3)	11 (12.6)	2 (2.3)
	2024	87 (100.0)	-	15 (17.2)	28 (32.2)	31 (35.6)	9 (10.3)	4 (4.6)
	2025	88 (100.0)	-	15 (17.0)	29 (33.0)	28 (31.8)	13 (14.8)	3 (3.4)

자료: 재정경제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2026.6.19.)

- 31개 공기업 중 우수(A) 등급은 6개, 양호(B) 등급은 10개, 보통(C) 등급은 10개, 미흡(D) 등급은 4개, 아주미흡(E) 등급은 1개 기관임

[2025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공 기 업 (31)	탁월(S)	-
	우수(A) (6)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양호(B)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보통(C) (1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미흡(D) (4)	주식회사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아주미흡(E)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2026.6.19.)

- 57개 준정부기관 중 우수(A) 등급은 9개, 양호(B) 등급은 19개, 보통(C) 등급은 18개, 미흡(D) 등급은 9개, 아주미흡(E) 등급은 2개 기관임

[2025년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단위: 개)

구분		기관명
준 정 부 기 관 (57)	탁월(S)	-
	우수(A)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양호(B)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보통(C) (18)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흡(D) (9)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아주미흡(E) (2)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2026.6.19.)

- 2025년도부터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2개 기관 중 우수 6개(7.3%), 보통 52개(63.4%), 미흡 17개(20.7%), 아주미흡 7개(8.5%)로 평가

[2025년도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단위: 개, %)

기관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82 (100.0)	6 (7.3)	52 (63.4)	17 (20.7)	7 (8.5)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2026.6.19.)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인사상 조치와 예산상 조치 및 개선계획 제출, 성과급 지급이 있음

-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 및 경고 조치가 있음
 - 해임건의 : 기관장 평가등급이 아주미흡인 기관장 7명 중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 건의²⁾
 - 경고조치 : 기관장 평가등급이 미흡인 기관장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에 대해 경고조치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후속 조치사항	기관장 평가등급	해당기관장	
		재임중	재임외
기관장 해임건의(2)	아주미흡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 경고(12)	미흡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 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 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 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해당 기관장 2명은 사의를 표명하여 2026년 7월 중 각각 의원면직 처리됨

- 중대재해 발생 및 감사 평가 부진에 따른 경고 조치가 있음
 - 중대재해 발생 : 2025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중 재임 중인 11명에 대해 경고조치
 - 감사 평가 부진 : 감사 평가등급이 미흡(D)인 6개 기관의 감사 중 재임 중인 상임감사 1명에 대해 경고조치

[경고조치 현황]

후속 조치사항	조치사유	해당기관장	
		재임중	재임외
기관장 경고(17)	재해발생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 경고(6)	감사평가 등급 미흡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상 조치로 직무급 재원 추가 지급과 경상경비 삭감이 있음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 5개 기관³⁾에 대해 2027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 추가 지급
 - 기관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6개 기관에 대해 2027년도 경상경비 0.5~1% 삭감⁴⁾
- 기관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6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

3)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추후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

- 성과급은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을 대상으로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되, 기관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임원의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 조치가 있음
 - 2025년 당기순이익이 2024년 대비 감소하고 2025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 성과급 25% 자율반납 권고(주식회사 에스알(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감사·상임이사))

정무위원회



1-1.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쟁점

가. 현 황

□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산업¹⁾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한국산업은행 내 별도 계정기금)과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은행(고유계정)의 일부 추가 출자를 통해 조성된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말함

-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모태펀드와 같은 하나의 집합투자 기구가 아닌, 직접투자(지분투자), 간접투자(펀드), 인프라투융자(PF), 저리대출의 종합 금융지원 방식을 망라한 정책 프로그램 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임
-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참여는 대부분 별도 계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이루어짐²⁾

[국민성장펀드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펀드 운용 기간	2026 ~ 2030년 (5년간 투자 재원 조성)
펀드 운용 규모	총 200조원+α (40조원×5년) *종전 150조원에서 확대
재원 조성 계획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 민간투자 75조원 + 추가조성* 50조원 이상 *추가 조성에는 정부와 산업은행(고유계정)의 출자 일부 포함
정부 출자 계획	매년 1조원. 단, 산업은행(고유계정)을 통한 경유출자
투자 대상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방식	직접 지분참여(15조원), 간접투자(펀드 출자, 35조원) 인프라 투·융자(50조원), 저리대출(융자, 50조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및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컨텐츠·핵심광물) 등 12대 첨단산업을 의미함. 향후 우주항공 등 추가 예정

2) 다만, 간접투자 중 정책성펀드는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에서도 일부 출자가 있음

-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은 2025년 9월 법률 개정³⁾을 통해 2026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내에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신설된 별도의 기금을 말함⁴⁾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민성장펀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적인 공공부문 운용주체임⁵⁾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주된 재원은 국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 기존 채권(산금채)과 구분하여 발행하는 정부 보증채권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첨단채)임
 - 첨단채의 2026년 기준 정부보증 한도는 15조원이며, 2026년 8월 말 기준 첨단채의 누적발행액은 1조 2,600억원임
 -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 역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일부 재원을 출연하게 됨
 -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총 3,500억원이며, 2026년 8월 말 현재 기준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이 출연한 금액은 550억원임
 - 그 외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출자 등 재정 지원 사항은 없음⁶⁾

[첨단전략산업기금(한국산업은행 내 별도 기금)의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6			총액
	목표	실적(승인기준)	실적(실제 조달)	목표
첨단채 발행	(보증한도) 150,000	70,295	12,600	750,000
한국산업은행 (고유계정) 출연	(2년간 약정한도) 3,500		550	
계	153,500		13,150	

주: 8월 말 기준. 확대된 총액 200조원 기준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수립 중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8호) : 제3장의3(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4) 본 기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4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45.12.9.까지 운용되며, 이 중 실제 자금지원은 2030.12.9.까지 할 수 있음

5) 다만, 세부 투자심의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심의회위원회’ 및 ‘첨단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에서 2단계로 실시함

6)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의 직접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8월 말 현재 기준 총 17.9조원의 금융지원이 승인되었음

- 당초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30조원(2027년부터는 매년 40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승인 완료된 17.9조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부담분은 8.2조원이고, 나머지는 민간 조달 9.5조원, 재정 투입분 0.1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임
- 분야별로 자금지원 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된 내역을 살펴 보면,
 - ① 직접 지분참여(직접투자) 분야는 당초 투자계획 3조원 중 2.8조원의 투자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분은 1.1조원, 나머지 1.7조원은 민간에서 조달될 예정임
 - ② 펀드 출자(간접투자) 분야는 당초 투자계획 7조원 중 1.6조원의 투자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분은 0.16조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자금 1.3조원, 재정 0.12조원 등이 투입될 예정임
 - ③ 인프라 투융자 분야는 당초 투자계획 10조원 중 6.9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분은 1.3조원, 나머지 5.5조원은 민간에서 조달될 예정임
 - ④ 저리 대출(융자) 분야는 당초 투자계획 10조원 중 6.6조원의 투자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분은 5.6조원, 나머지 1.0조원은 민간에서 조달될 예정임

7) 펀드 출자의 승인의 의미는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결성 의미함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 목표 및 계획승인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6					총액
	목표	계획승인 실적				목표 ¹⁾
		총액	첨단기금	민간	정부재정	
총액	300,000	178,768	82,325	95,243	1,200	1,500,000
직접 지분투자	30,000	28,291	11,200	17,091	-	350,000
간접 펀드출자 ²⁾	70,000	15,900	1,630	13,070	1,200	150,000
인프라 투융자(PF)	100,000	68,662	13,280	55,382	-	500,000
저리 대출(융자)	100,000	65,915	56,215	9,700	-	500,000

주: 2026년 8월 말 기준

1) 기존 총 150조원 기준의 지원 배분계획이며, 확대된 총액 200조원 기준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배분계획이 수립 중임

2) 간접 펀드출자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2 출자분도 민간자금에 포함하였음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계획 승인 이후 실제 투융자 지원이 실행되기까지 신속한 진행방안 마련 필요

□ 계획 승인이 있더라도 실제 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차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 계획 승인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정책금융 한도를 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함
- 따라서 계획 승인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대출약정, 신주인수계약(SSA)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나 사업의 재무나 기술적 상황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확정해야 함
 - 예를 들어 실제 계약 시에는 지원 금리, 담보권 설정, 주식발행가액 (valuation), 이사회 참여권한 부여 여부 등 구체적 지원조건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 내에 인허가 완료, 착공계 제출, 특정 기술 완료 등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을 검증한 이후에야 비로소 투자자금 최초 인출(drawdown)이 가능함

[사업승인 후 일반적인 계약 및 투자 절차]



자료: 한국벤처투자 등,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지식상자, 2026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국민성장펀드는 지원방식이 직접투자, 간접 펀드출자, 인프라투융자, 대출(융자) 등으로 다양하고, 타 금융지원 대비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는바, 신속 집행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제 금융지원이 상당 부분 지연될 소지가 있음. 이를 지원방식 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함

□ 먼저, 직접 지분투자 분야는 첨단기술 산업의 특성상 기업에 높은 가치(valuation)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향후 주식취득가액 설정 등 계약조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음

-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대규모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기술기업에 선제적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특징임
- 이들 기업에 유니콘⁸⁾ 급의 높은 기업가치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지분을 매입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의 입장에서는 과도하지 않은 주식취득가액 등을 협의하는 데에 있어서 심도 깊은 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국민성장펀드의 상당수 직접 지분투자는 여타 정책 목적의 투자와 같이 유사시 원금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주식(보통주) 취득이 아닌 전환우선주(CPS, RCPS)⁹⁾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8)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 3,000억원) 이상

경우 기존 주주들과의 이권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사업 지연의 소지가 있음¹⁰⁾

- 한편, 이와 별개로 민간의 매칭 투자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시 민간 출자금의 납입 여부 확인 등에, 투자목적이 설비투자에 있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및 인허가 지연 여부 등 선행조건 이행 확인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국민성장펀드 사업 중 승인 완료된 직접 지분투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기업명(분야)	기업가치 (증자 전)	계획승인액				출자형태 ²⁾ (잠정)
		총액	첨단기금	민간	기타 ¹⁾	
리벨리온(AI·반도체)	27,000	6,410	2,500	3,410	500 ^[A]	RCPS
업스테이지(AI)	13,000	5,381	1,000	4,081	300 ^[A]	CPS
퓨리오사AI(AI·반도체)	30,000	8,000	3,700	4,000	300 ^[A]	RCPS
리가캠바이오(바이오)	53,000	5,000	2,500	2,500	-	CPS,CB
원익로보틱스(로봇)	13,500	3,500	1,500	2,000	-	CPS

주: 1) A :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

2) RCPS : 상환전환우선주, CPS : 전환우선주, CB : 전환사채

1. 2026년 8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인프라 투융자 분야는 기업 지분의 취득이 아닌 시설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성격을 가지는 바, 다른 투자형태에 비해 사업지연의 우려가 더욱 높음

9) 평소에는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누리다가(우선주),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가 원할 때 보통주(일반주식)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붙어 있는 주식을 말함. 보통주는 기업이 부도나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회수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우나, 우선주는 투자원금이나 미지급 배당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짐

10) 예를 들어, 보통주와 달리 전환우선주(CPS)는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후속 투자 유치시 통상적으로 전환가액 하향조정(Refixing)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음. 특히 공공분야의 CPS 투자는 원금손실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리픽싱 조항을 넣는데, 이 경우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 등의 피해를 입으므로 리픽싱 조건 등에 대해 이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 외에도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임에도 신규 차입, 증자, 매각 등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특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기존 주주와의 관계에서 이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요인임

- PF투자는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물리적 토목·건축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그만큼 투자 전 선행조건의 확인이 대체로 까다로운 특징이 있음
 - 특히 발전소 같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거나 개발행위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 여부와 주민민원, 판로확보(전력망 구매처 확보), 담보물 확인 등 고려할 사항이 통상적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투자보다 더 많음
- 특히 PF투자는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에 비해 프로젝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바,¹¹⁾ 계약조건 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성장펀드 사업 중 승인 완료된 인프라 투융자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분야)	계획승인액					
	총액	투자(자기자본)		융자(PF대출) ¹⁾		
		첨단기금	민간	첨단기금	민간	기타
신안우이 해상풍력 (인프라)	34,000	-	5,100	7,500 (500*)	18,000	-
국가AI컴퓨팅센터(AI)	25,000 ²⁾	180	3,020	21,000 ³⁾		800 ^[AI]
스마일게이트데이터센터 (AI·인프라)	27,962	2,500	3,762	2,500*	13,200 ²⁾	-
영양 육상풍력(인프라)	2,700	-	540	600	1,040	-

주: 1) *는 후순위 대출, [AI]는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을 의미함

2)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정액임

3) 기업금융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1. 2026년 8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끝으로, 저리 대출(융자) 분야는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집중 융자받는 차주의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직접투자는 투자자, 대상기업, 기존 대주주 등이 이해관계자인 반면, PF투자는 SPC(차주), 시행사, 시공사(건설사), 운영관리사, 대주단(금융사), 서비스구매자, 인허가관청 등 이해관계자가 더욱 복잡함

- 일반적으로 대출(융자)은 다른 금융지원에 비해 금융지원의 지연 소지가 비교적 적은 특성이 있음
 - 대출(융자)은 상당수 금융기관과 차주 간 1대 1 약정¹²⁾으로 진행되며, 이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신용도 및 담보력, 현금창출력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는 직접 투자사업¹³⁾에 비해 지원속도가 신속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저리 대출은 1대 1 방식보다는 다수 당사자 간 공동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집중 융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대출(융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업 지연의 소지가 있음
 - 특히 대출실행이 사업 공정예 따라 분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지원기업)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융자 실행 역시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관리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국민성장펀드 사업 중 승인 완료된 저리 융자(대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지역)	기업명(분야)	사업 총액	계획승인액(융자)				
			총액	첨단기금	민간	기타 ¹⁾	자체조달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경기)	삼성전자 (반도체)	88,000	88,000	20,000	5,000	-	63,000
전고체 배터리 핵심소재 제조공장 구축(울산)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차전지)	1,250	1,250	1,000	-	-	250
반도체 테스트용 핵심부품 생산라인 증설(충북)	샘씨엔에스 (반도체)	284	284	200	-	-	84
세종 AIDC 증설 및 GPU서버 도입(세종)	네이버(AI)	9,221	9,221	3,400	-	600	5,221
구형흑연 제조공장 구축(전북)	퓨처그래프 (이차전지)	3,961	3,961	2,000	-	500	1,461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 증축(인천)	비티젠(바이오)	1,090	1,090	650	-	200	240

12) 단, 협조융자나 신디케이트 론 등 다자간 약정에 따른 공동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13) 직접투자나 인프라투자 등은 다자간 계약이 불가피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지분가치(직접투자)나 현금흐름(PF)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계약 전 검토단계가 통상 더 복잡함

(단위: 억원)

사업명(지역)	기업명(분야)	사업 총액	계획승인액(용자)				
			총액	첨단기금	민간	기타 ¹⁾	자체조달
반도체 공정용 불화수소 가스 생산시설 증설(울산)	후성(반도체)	210	210	165	-		45
21가 폐렴구균백신 글로벌 임상 3상 R&D 및 생산시설 구축(경북)	SK바이오 사이언스(백신)	3,858	3,858	2,500	-	500	858
LFP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 구축(대구)	엘앤에프플러스 (이차전지)	3,310	3,310	1,700	-	500	1,110
AI 데이터센터 向 고사양 전력기기 생산공장 구축(충북)	근우(인프라)	266	266	200	-	-	66
초고압 해저케이블 양산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증설(강원)	LS전선(인프라)	1,600	1,600	800	-	-	800
차세대 메모리 기판 생산시설 증설(충북)	심택(반도체)	400	400	200	-	-	200
OLED 신기술 설비 투자(경기)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29,573	29,573	13,000	1,000	1,000	14,573
HBM 전용 테스트 장비 생산공장 구축(충남)	테크윙(반도체)	916	916	500	-	-	416
신공장 건설 및 테스트 장비 증설(경기)	두산테스나 (반도체)	8,554	8,554	5,600	-	-	2,954
차세대 이차전지 마더플랜트 구축(충북)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3,769	3,769	3,000	-	-	769
반도체 장비용 핵심부품 생산시설 구축(경기)	티케이지솔믹스 (반도체)	1,822	1,822	1,000	-	400	422
ADC 링카-페이로드 전용 생산공장 구축(충남)	경보제약(바이오)	406	406	200	-	-	206
친환경 EV 파워트레인용 구동소재 공장 증축(경북)	삼동(모빌리티)	125	125	100	-	-	25

주: 1) 한국산업은행(고유계정)

1. 2026년 8월 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실제 금융지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소지가 있는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집행 촉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민성장펀드가 목표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은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정부의 투융자 지원이 실제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적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분야별로 차별화된 집행방안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정부는 최근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¹⁴⁾ 투자기간도 대폭 확대¹⁵⁾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제한된 금융 여건 하에서 확충된 펀드 지원계획이 지연되지 않고, 당초 목적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원 대비 대폭 증액한 200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부터는 연간 투자금액 역시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충할 계획

15) 최대 15년의 존속기한을 갖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금년 8,8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

(2) 대규모 정책펀드 출자가 타 분야의 민간자금 조달을 구축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펀드출자) 부문의 2026년 한 해 동안의 펀드 결성목표 규모는 7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신규 펀드결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신규 결성규모(약정액 기준)는 27.8조원으로 추산됨¹⁶⁾¹⁷⁾¹⁸⁾
 - 이미 운영 중인 기존 결성펀드를 합친 전체 PEF의 결성(약정) 규모는 167.5조원이며, 이들 펀드의 연간 투자집행 규모는 28.1조원 수준임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결성 규모]

(단위: 개, 조원)

구분	PEF 수		신규 결성약정액	
	2024	2025	2024	2025
대형 PEF	9	26	8.4	15.8
중형 PEF	44	51	7.4	8.0
소형 PEF	120	134	3.4	4.0
계	173	211	19.2	27.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 2026.6.

-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자기자본기준 완화, 정부의 손실 우선흡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면책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음
 - 먼저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의 산정 비율을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¹⁹⁾을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 2026.6.

17) 한편, 이 중 11.2조원이 벤처투자시장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로 추산되며, 벤처펀드의 24.5%인 2.8조원 가량이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한국산업은행 등의 정책펀드가 차지하고 있음

18) 단, 국민성장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외에 벤처투자펀드 및 신기술사업조합 등의 형태로도 결성됨. 벤처투자펀드 및 신기술사업조합을 합친 전체 국내 신규 펀드결성 규모는 4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참고로 중기부 발표 2025년 신규 벤처투자펀드 결성액은 14.3조원임)

1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38의3 사.의 특례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및 주식

만족하는 경우 기존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였음

- 기본적으로 원래 국민성장펀드 뿐만 아니라 벤처펀드, 신기술펀드 등과 같은 비상장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국제적인 바젤III 기준에 따라 투자액의 400%를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할증하게 되므로 타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침
-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개정²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출자자금 등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100%로 인하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동일 자산 투자시 자기자본을 4분의 1만 적립하면 되므로, 타 민간 비상장 사모펀드에 비해 투자유인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²¹⁾
- 또한 자펀드 결성 시 정부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흡수하므로, 선순위 출자자가 되는 민간자본의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보다 높음
 - 예를 들어 정부의 후순위 출자율이 전체 결성액의 3%인 경우,²²⁾ 해당 펀드는 청산 시 3%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정부의 출자지분 잠식으로 이어질 뿐, 다른 선순위 민간투자자는 아무런 손실을 보지 않음
 - 한편, 일정 기준수익률(IRR)²³⁾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민간펀드는 위험을 많이 부담한 후순위 출자자가 초과이익을 가져가지만, 국민성장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의 경우는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순위 민간투자자가 60%로 배분비율이 더 높은 혜택을 가짐²⁴⁾

20)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의 바젤III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은 단기매매 목적의 투기적 거래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기성 고위험 지분투자로 간주해 400%의 최고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 금융당국감독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출자·보증하거나 정책기관(산은 등)이 앵커출자를 통해 후순위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 기존 400% 대신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위험노출, exposure) 수준인 100%를 적용할 수 있음. 본 세칙 개정은 이에 따른 것임

21) 이는 기존 정책벤처펀드인 모태펀드, 신기술펀드 중 일부에도 적용되며, 과거 지방시대 벤처펀드, 미래에너지펀드 등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도 이러한 할증 완화조치가 적용된 바 있음

22) 참고로 정부가 후순위 보장을 할 수 있는 한도는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5%임

23) 일반적으로 멀티플(=회수액/출자액-1) 30% 이상임. 이는 투자기간을 고려한 연 수익률로는 통상 연 4~6% 수준이 됨

24) 또한 국민참여형펀드(한국성장금융 주관) 외에 정책성펀드(한국산업은행 주관)에 대해서는 초과수익 발생시 첨단기금이나 산업은행이 가져가야할 초과이익의 10% 이내를 민간투자자에게 초과로 지급하

-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금융감독원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하지 않는 면책특례를 추가로 부여하였음

□ 그 결과 상반기에 결성완료된 국민성장펀드의 국민참여형 펀드는 모두 별도의 결성시한 연장 없이 최초 결성시한 내에 펀드 결성한도까지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였음

- 상반기에 모집한 제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한국성장금융 주관)는 10개 자펀드 모두가 결성시한인 6월 15일 내에 전체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총 결성액은 7,106억원으로 목표 결성액 7,200억원에 근접하였음

[2026년 상반기 국민성장펀드 간접 펀드출자 분야 펀드결성 현황(총 10개)]

(단위: 억원)

구분		운용사(GP)	목표 결성액	실제 결성액	결성일	진행결과
국민 참여형	대형	디에스자산운용	각 1,200	1,078	2026. 6.15.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완료
		미래에셋자산운용		1,089		
	중형	라이프자산운용	각 800	820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812		
		타임폴리오자산운용		813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842		
	소형	더제이자산운용	각 400	410		
		수성자산운용		421		
		KB자산운용		417		
		오라이언자산운용		404		
계			7,200	7,106	-	-

주: 모집승인된 전체 국민성장펀드(8월 말 기준 모집규모 1조 5,900억원) 중 실제 상반기 중 모집이 완료된 펀드는 국민참여형 10개 펀드 외에는 없음

자료: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는 인센티브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음. 다만, 과거 뉴딜펀드와 달리, 초과이익 발생시 민간투자자가 정부 지분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은 이번에는 부여되지 않았음

- 다만,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목표로한 연내 7조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완료하려면 하반기 동안 5조원 내외의 민간자본 유치가 추가로 필요한바, 이러한 대규모의 민간자금 유치가 타 정책펀드 또는 순수 민간펀드 시장의 민간자본 조달을 구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8월 말 현재 운용사가 선정되어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총 19개로 대부분 특정 정책목표나 사전 선정 투자대상(프로젝트)을 가지고 있는 정책성펀드임. 현재 모집 중인 해당 펀드의 전체 목표결성액은 5.6조원이며, 이 중 정책자금을 제외한 민간투자 필요액은 3.5조원 규모에 달함
 - 그런데 현재 해당 펀드들은 많은 민간투자자가 출자에 참여한 결과, 상당수 펀드는 결성 목표액을 이미 넘어 펀드한도(하드캡, 목표액의 200%)까지 민간투자액을 모집 완료하는 등 민간자금이 추가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

[2026년 상반기 국민성장펀드 간접 펀드출자 분야 펀드결성 현황(총 19개)]

(단위: 억원)

구분			운용사(GP)	결성 목표액 ¹⁾	정책자금 ²⁾	주관기관
정책성 펀드 (1차)	생태계 전반	도전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1,500	640	신한 자산운용
			에이스톤벤처스	(각 750)		
		소형	아주아이비투자	2,000	860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각 1,000)		
		대형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10,000	3,950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각 5,000)		
	특정 목표 지원	코스닥	미래에셋벤처투자/ 브레인자산운용	1,500	640	한국 산업은행
		M&A	웰투시인베스트먼트	3,000	1,200	
		AI·반도 체 중형	대신프라이빗에쿼티	4,000	2,160	
			인터베스트	(각 2,000)		
프로젝트	위탁	키움프라이빗에쿼티	12,000	2,400		
	자체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디인베스트먼트	6,000	2,300		

(단위: 억원)

구분			운용사(GP)	결성 목표액 ¹⁾	정책자금 ²⁾	주관기관
정책성 펀드 (2차)	생태계 전반	중형	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8,000 (각 2,200 ~2,900)	3,210	
			우리벤처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스케일업	스틱인베스트먼트	5,000	2,000	
	특정목표 지원	AI·반도 체 소형	에스엘인베스트먼트	1,000	540	
	지역전용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2,000 (각 1,000)	1,200	
		케이비증권 / 에코프로파트너스				
계				56,000	21,100	-

주: 1) 정책성펀드는 실제 결성액이 결성 목표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는 펀드한도(하드캡)가 있음
(단, 스케일업펀드는 펀드한도가 없음)

2) 정책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비(산업은행 경유출자금), 산업은행 자체자금 등을 모두 포함함
자료: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성장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더하여 하반기에는 총 7,200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펀드,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등이 모집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펀드에 역시 추가로 8,000억원의 민간자금이 필요함
 - 2차 국민참여형 펀드 6,0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2,000억원이며, 현재 위탁운용사(GP) 선정 절차 중

□ 특히 국민성장펀드 외의 일부 정책펀드는 민간자금의 국민성장펀드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결성시한을 대거 연장하는 등 예년보다 민간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다소 겪는 상황임

- 예를 들어,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모태펀드는 금년 4월 말 60개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자펀드의 운용사(GP)를 선정하였으나, 이 중 8개(13.3%)의 자펀드만이 최초 결성시한(7월 말) 내에 결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펀드는 결성시한을 10월 말까지 1차 연장하였음²⁵⁾

25) 자료: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종합포털 공시사항

관련 보도자료: 마켓인, “국민성장펀드가 밟다... 모태펀드 운용사들 대거 결성 연기”, 2026.7.29.

- 이는 모태펀드의 최초 결성시한 내 자펀드 결성완료율이 최근 5년간 통상 20~5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임

[연도별 모태펀드의 최초 결성시한 내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자펀드(A)	128	112	75	115	116
최초 결성시한 내 결성완료(B)	42	25	19	62	52
비율(B/A)	32.8	22.3	25.3	53.9	44.8

주: 연도 구분은 운용사(GP) 선정 공고연도를 의미함. 단,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인 경우는 제외함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주관하는 농업수산물식품모태펀드 역시 펀드 결성 이전에 운용사(GP)²⁶⁾ 선정단계에서 지원사가 없는 분야가 발생²⁷⁾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민성장펀드 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들 정책펀드는 국민성장펀드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민간금융기관의 자기 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인하 적용하는 등 투자지원 혜택을 받았음에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음
 - 이에 비추어보면 해당 정책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투자시 자기자본을 국민성장펀드보다 4배 더 적립해야 하는 순수 민간 사모펀드(PEF)의 경우는 자본 유치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26) 운용사(GP)는 통상 1% 이상의 지분을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유한책임 출자자(LP)와 달리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짐. 일반적으로 펀드 결성시 운용사(GP)가 선정된 이후, 이들 운용사를 중심으로 일반출자자를 모집하여 펀드가 결성됨

27) 농식품투자 계정을 예로 들면, 정기 출자(2월)는 10개 모집분야 중 4개 분야(스마트농업 1개, 미래 혁신성장 3개)에서 운용사(GP)를 선정하지 못하였음. 또한 추가 출자(4월)의 경우는 10개 모집분야 중 5개 분야(일반, 세컨더리, 스마트농업, 미래혁신성장, 지역경제일반)에서, 2차 추가 출자(5월)의 경우는 1개 분야(미래혁신성장)에서 각각 지원운용사가 없거나 지원미달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국민성장펀드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예정된 대규모 민간투자 일정을 계획함에 있어서, 타 정책펀드 및 민간 사모펀드의 자금조달을 구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기업가치가 높은 대규모 투자분야에 자금이 집중되는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전통 제조업이나 초기·시드단계의 혁신 중소·벤처기업 중 비인기 섹터는 상대적으로 투자순위가 후순위가 될 수 있음
 - 특히 상반기 공모에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공제회 등이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바, 이들 연기금·공제회의 기존 투자영역이 하반기에는 투자절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대규모 지분 장기보유 문제 해소를 통한 정책금융 재원의 확보 필요

가. 현 황

-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HMM(구 현대상선),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KDB생명보험(구 금호생명)의 지분을 장부금액 기준으로 총 8조 8,634 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 중 피투자기업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장부가액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HMM	한화오션	KDB생명보험 (자회사)	계
지분율	35.42	15.25	99.69	-
장부금액	68,360	15,167	5,107	88,634

주: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단, KDB생명보험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HMM, 한화오션, KDB생명보험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음
 - HMM(구 현대상선)은 2016년 해운업 불황으로 인해 법정관리 위기 이후, 정부의 「현대상선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2016.11.)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4.) 등에 따라, 주 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전환사채 등을 다량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및 2015년 대규모 부실회계 사태 당시 기존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KDB생명보험(구 금호생명)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지분을 인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고, 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나, 일부 매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완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HMM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매각이 결렬된바 있음
- 다만,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보유지분 1,300만주(4.2%)를 주당 8만 1,650원 단일가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함으로써, 2023년 경영권 민영화¹⁾에 이어 산은 보유비중을 상당 부분 낮춘바 있음
- 한편, KDB생명보험은 한국산업은행을 중심으로²⁾ 결성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속기간이 2025년 도래하여 법인 청산됨으로써, 지분 대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한 종속기업(자회사)으로 재편되었음

□ 한국산업은행의 대규모 지분 장기보유 문제는 본래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이후 회수되어 신산업 분야 등으로 순환·재투자되어야 할 공적자금이 특정 기업에 장기간 묶이면서, 은행 본연의 자금 운용 및 경영환경 전반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는 과거 투입된 구조조정 자금의 회수 지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및 향후 집행될 정책금융의 실효성까지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므로, 향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복원하고 은행의 경영환경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1)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유상증자(2조원 규모)를 통해 지분 49.3%를 확보하며 1대 주주로 올라섰고, 산은의 지분율은 55.7%에서 27.5%로 감소하여 2대 주주가 되었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개시장 매각 등을 진행하여 현재 산은의 지분율은 15.3%까지 감소한 상황임

2) 무한책임사원(GP) 및 지분율 75.9%. 그 외 국민연금공단,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코리안리재보험 등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함

2-1. 여신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영상 대응방안 확대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은행의 총 여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중 통상 3개월 이상의 연체 등 채무 상환능력 저하를 의미하는 ‘고정’ 이하 등급의 여신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여신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중소기업은행의 총 여신은 2026년 3월 말 기준 337.9조원 수준으로 5년 전(254.1조원) 대비 33.0% 증가하였음
 - 반면, 「은행업감독규정」¹⁾에 따른 ‘고정’ 이하 여신은 2026년 3월 말 기준 4.31조원 수준으로 5년 전(2.66조원) 대비 61.9%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고정’ 이하 여신은 2026년 3월 말 기준 1.28%로 5년 전(1.05%) 대비 0.23%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총 여신 및 건전성분류결과]

(단위: 억원,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총 여신(A)		2,540,993	2,753,402	2,958,801	3,072,762	3,260,814	3,379,406
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2,481,367	2,698,065	2,894,653	2,992,128	3,165,291	3,279,646
	요주의	32,996	33,034	37,111	46,243	51,983	56,650
	고정	20,458	17,618	20,842	27,146	35,486	33,791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단위: 억원,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회수의문	2,650	1,972	2,155	2,233	2,210	2,287
	추정손실	3,521	2,713	4,039	5,012	5,843	7,032
	(고정 이하) (B)	26,630	22,303	27,037	34,391	43,539	43,110
고정 이하 여신 비율(B/A)		1.05	0.81	0.91	1.12	1.34	1.2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악화는 상대적으로 고위험 대출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또한 유의미하게 악화된 데에 기인함
- 통상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은 타 대출 대비 연체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²⁾은 2021년 199.5조원에서 2026년 274.7조원으로 75.2조원 증가하여 전체 여신 증가액(83.9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은행 여신의 건전성 지표 악화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대상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당행의 2026년 3월 기준 대기업과 가계대출의 '고정' 이하 등급 여신비율은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인 1.59%, 0.58%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2) 대출(융자) 외에도 지급보증, 채권매입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자금지원 일반을 포함한 수취임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대상별 총 여신 및 건전성분류결과]

(단위: 억원,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총 여신		2,540,993	2,753,402	2,958,801	3,072,762	3,260,814	3,379,406
(고정 이하 비율)		1.05	0.81	0.91	1.12	1.34	1.28
기업 여신	계	2,106,612	2,306,825	2,504,196	2,620,594	2,793,450	2,910,366
	(고정 이하 비율)	1.19	0.91	1.01	1.22	1.45	1.38
	대기업	111,877	124,873	147,589	154,133	154,880	163,803
	(고정 이하 비율)	0.70	0.27	0.46	0.17	0.39	1.59
	중소기업	1,994,735	2,181,952	2,356,607	2,466,461	2,638,569	2,746,563
	(고정 이하 비율)	1.21	0.95	1.04	1.29	1.51	1.36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604,176	648,522	680,935	685,376	697,361	703,776
	(고정 이하 비율)	0.50	0.31	0.49	0.80	1.15	1.03
가계여신		398,710	410,430	416,217	414,718	427,753	428,952
(고정 이하 비율)		0.27	0.22	0.28	0.42	0.51	0.5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중소기업은행은 구조적으로 다른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위기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적 여력이 낮은 구조적 특징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의 크기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여신의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경영상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³⁾은 2026년 3월 기준 14.9% 수준으

3)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총자본)의 비율을 말함.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이 낮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함.

한편, 2013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분모) 대비 보통주 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을 합친 '총자본'(분자)의 백분율로 산출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름

로, 비록 법령⁴⁾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8%)은 충족하고 있으나 유사하게 시중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산은, 수은)과 달리, 자기자본에 통상적인 의미의 고유자본(보통주, 이익잉여금)이 아닌, 결국 상환해야 하는 특수채권(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⁵⁾

이들을 차감하여 고유자본만을 반영한 보통주자본비율⁶⁾을 산출하면 중소기업은행은 11.5%로 전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위기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적 여력이 가장 낮음을 의미함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⁷⁾은 2026년 3월 기준 269.1조원으로 5년 전(190.6조원)보다 41.2% 증가하여 같은 기간 자산의 단순 증가율(36.5%)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4) 「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 5)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아주 길거나 은행의 상환순서가 후순위여서 은행의 입장에서 상환조건이 매우 유리한 채권을 말함(반대로 민간시장에 위험을 전가). 이러한 채권은 은행이 경영위기에 처하더라도 상환압박을 주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당국에 의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당 채권은 상환해야 하는 채권(차입금)이므로 보통주 등 통상적 의미의 고유자본과는 차이가 있음. 2025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중소기업은행의 자기자본 중 신종자본증권(12.0%)과 후순위채권(6.9%)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에 달함

(반면 한국산업은행은 4.8%, 한국수출입은행은 8.3%이며, 후순위채권은 보유하지 않고 있음)

- 6)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의 비율을 말함

- 7)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리스크 수준별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조정 자산 규모로, 단순한 장부상 자산 총계가 아니라 자산의 부도 위험이나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조정한 가상의 자산가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없는 국채는 가중치 0%, 무담보 일반 기업대출은 100%,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20% 전후의 가중치가 적용됨. 바젤Ⅲ 체계 하에서 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90~95%), 시장리스크(0~5%), 운영리스크(5~10%)를 반영하여 산출되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본모로 사용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됨

[주요 은행의 연도별 자기자본비율 지표]

(단위: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국책 은행	중소기업은행	14.8	14.9	15.2	14.9	14.8	14.9
		한국산업은행	15.9	14.9	13.1	14.3	14.0	14.5
		한국수출입은행	15.2	14.5	14.8	14.3	15.3	16.9
	시중 은행	국민은행	18.5	17.7	18.5	17.4	17.6	17.1
		신한은행	18.0	17.9	18.3	17.7	17.9	17.3
		우리은행	16.9	15.8	16.3	15.9	16.2	17.5
		하나은행	17.3	17.2	18.1	17.4	17.9	17.5
		농협은행	17.4	18.8	19.0	17.7	18.0	18.0
보통주 자본비율	국책 은행	중소기업은행	11.2	11.2	11.4	11.4	11.4	11.5
		한국산업은행	14.6	13.9	12.1	13.1	13.1	13.8
		한국수출입은행	13.6	12.9	13.1	12.7	13.8	15.5
	시중 은행	국민은행	15.6	15.0	15.3	14.4	14.9	14.9
		신한은행	14.8	14.6	14.5	14.6	14.9	14.6
		우리은행	13.2	12.8	13.5	13.2	13.5	14.9
		하나은행	15.2	15.2	16.1	15.6	16.5	16.4
		농협은행	15.0	16.1	16.2	15.1	15.0	15.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및 자기자본비율 지표]

(단위: 억원,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위험가중자산	1,906,268	2,047,104	2,196,635	2,380,019	2,563,221	2,691,31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4.8	14.9	15.2	14.9	14.8	14.9
보통주 자본비율	11.2	11.2	11.4	11.4	11.4	11.5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타 금융기관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위험성 측면에서는 불리한 구조적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이익 대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확보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반드시 그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며,⁸⁾ 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시에도 국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을 가지는 저리 발행이 가능하고,⁹⁾ 정부 기금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저리로 차입하는 등¹⁰⁾ 타 은행 대비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¹¹⁾
 -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법령에 따라¹²⁾ 자금운용의 70% 이상을 고유사업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운용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수익성(대출금리)이 높으나, 연체 및 미상환위험(exposure) 역시 대체로 높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¹³⁾ 적립잔액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고정 이하 위험채권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위험채권 대비 대손충당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8)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填)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9)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은행은 중진기금, 소진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정부기금·자금으로부터의 위탁운용액이 2025년 기준 2,750억원 순증하였음. 또한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에 따라 차등배정하는 연 0~1%대의 저리 자금을 2025년 기준 1,799억원 순차입하였음

11) 실제로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조달 수단 중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말 기준 35.1%에 불과하며, 41.2%는 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음

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여신한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은 법 제33조제2호 및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3) 대출부실 등에 따른 장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회계상 영업이익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의미함(회계상 금융자산 손상차손).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할 경우, 같은 영업이익이라도 차감비용이 커지므로 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 중소기업은행의 2026년 3월 기준 회계상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은 4.53조원으로, 5년 전(2.68조원) 대비 69.4%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전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34%로 5년 전(1.05%) 대비 0.29%p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정' 등급 이하 위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NPL coverage ratio)은 2021년 100.5%에서 2023년 150.6%까지 상승하였다가, 2026년 3월 기준 다시 105.2%까지 하락하였음. 이는 실제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이 회계상 예측치보다 더욱 가파르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중소기업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적립비율(coverage ratio) 지표]

(단위: 억원, %)

구분	2021.3.	2022.3.	2023.3.	2024.3.	2025.3.	2026.3.
대손충당금 적립잔액	26,763	29,745	40,703	46,813	48,464	45,345
총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5	1.08	1.38	1.52	1.49	1.34
고정 이하 여신(NPL)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00.50	133.37	150.55	136.12	111.31	105.1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요컨대 중소기업은행은 최근의 급격한 여신 건전성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 완충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확충 등 손실흐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자금조달 시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시장성 채권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고금리 시기 조달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원가성 핵심예금의 수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손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¹⁴⁾

14) 일반적으로 예금은 연이율 0% 대의 저원가성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은 반면, 채권은 전액 시장금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금리상승기에는 예금 수신 위주의 자금조달이 유리함. 반면, 특히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물 위주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만기가 수시로 도래하여 차환시 금리 상승이 실시간으로 조달비용에 반영되는 한계가 있음

2-2. 취약산업이나 저신용 영세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은행은 2025년 기준 7.7조원의 기금 및 재정자금¹⁾을 비롯하여 총 85.1조원의 대출(융자) 자금을 시장에 신규 공급하였으며, 이 중 69.2조원(81.3%)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음
 - 회수액을 차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액은 14.7조원으로, 전체 대출 순증액(15.1조원)의 97.4%에 달함

[중소기업은행의 2025년 재원 및 지원대상별 대출(융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말		2025년 중		2025년 말		증감액 (B-A)
		잔액(A)	구성비	신규공급	회수	잔액(B)	구성비	
합계		3,003,121	100.0	851,352	700,705	3,153,768	100.0	150,646
재원별	자체재원 (중금채 등)	2,786,341	92.8	772,441	623,772	2,935,010	93.1	148,669
	기금 및 재정자금	201,050	6.7	76,592	72,824	204,818	6.5	3,768
	외화자금	15,730	0.5	2,319	4,109	13,940	0.4	△1,790
지원 대상 별	중소기업	2,471,921	82.3	692,064	545,200	2,618,785	83.0	146,864
	가계	427,222	14.2	124,479	121,225	430,476	13.6	3,254
	대기업 및 공공분야	103,979	3.5	34,809	34,281	104,506	3.4	528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국가재정법」상 기금 등 정부재정을 위탁 운용하거나(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이 조성한 정책금융자금을 조달받아 운용하는 온렌딩자금, 그 외 민간(예.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은 중규모 기업에 비해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면서도, 지원정책 이용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금융의 지원에 있어서 취약산업이나 저신용 영세차주 등 금융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중소기업 규모별 지원정책 필요성 및 어려움 응답현황]

(단위: %, 점)

구분	금융·세제지원이 정책과제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	지원정책 이용시 어려움 요인(점수)			
		절차 복잡성	자격요건 높음	경쟁과다	피드백 부족
소기업	32.1%	3.57	3.58	3.65	3.25
중기업	26.5%	3.52	3.46	3.46	3.11

주: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자료: IBK경제연구소, 「2025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조사 - 신 정부에게 바란다」, 2025.7.

- 반면,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들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미래 주력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금융지원 방향이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66조원의 연간 중소기업자금 중 혁신성장 영위기업에 15조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조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나. 주요 쟁점

- 2026년 2분기 산업별 대출현황을 살펴 보면, 1차 금속, 전자·전기기계 등 주력 제조업 및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전통적인 한계업종인 섬유나 내수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임
 - 2026년 2분기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채권 잔액 현황을 살펴 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제철·비철금속 등 소재산업으로 구성된 1차 금속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 전년동기 대비 8.8% 순증하여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음. 그 뒤로 반도체·로봇·AI 등의 하드웨어 부분을 망라하는 전자·전기기계 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7.0% 순증하여 그 뒤를 이었음. 바이오나 2차 전지 등의 주력 부분을 포함하는 화학 부문 역시 5.5% 순증하였음
 - 반면, 섬유 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하여 오히려 대출이 역성장하였으며, 제조업 외에는 음식숙박업의 대출(1.9% 순증)이 중소기업 전체 대출 증가(4.4% 순증)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취약산업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타 산업에 비해 부진한 상태임
 - 한편, 통상적으로 직접적인 고용창출 계수가 낮고 R&D 투자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기술개발, 산업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전년동기 대비 4.8% 순증하여 전체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음²⁾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업종별 중소기업 대출채권 잔액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2분기	2026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연평균 증가율
제조업	섬유	4.04	4.20	4.39	4.44	4.51	4.44	4.53	4.47	△1.3	1.9
	의복·가죽	2.17	2.41	2.53	2.55	2.82	2.98	2.94	3.12	5.9	6.5
	화학제품	6.68	7.21	7.80	8.44	8.86	9.30	9.10	9.61	5.5	6.9
	고무·플라스틱	9.12	9.96	10.68	11.23	11.88	12.17	12.26	12.59	2.7	5.9
	1차 금속	5.70	6.12	6.36	6.63	6.99	7.44	7.26	7.89	8.8	5.5
	조립금속	14.56	15.63	16.75	17.83	18.75	19.68	19.54	20.00	2.3	6.2

2) 이들 대출은 건물·토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임대료 등 현금흐름이 명확하여 중소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체로 리스크가 낮고 자산 확장이 쉬운 안전여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2분기	2026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연평균 증가율
	기타 기계	19.37	20.81	22.09	23.55	24.46	25.18	24.99	25.70	2.8	5.4
	전자·전기기계	6.15	6.67	7.10	7.59	8.29	8.64	8.57	9.17	7.0	7.0
	통신기기	5.60	6.03	6.44	6.71	7.00	7.15	7.17	7.50	4.6	5.0
	자동차	7.00	7.38	7.81	8.35	8.92	9.35	9.26	9.68	4.5	6.0
	기타	21.63	23.50	25.32	26.93	28.35	30.21	29.83	31.08	4.2	6.9
건설업	전체	5.45	6.09	6.62	7.15	7.25	7.67	7.67	8.10	5.6	7.1
	(프로젝트 파이낸싱)	0.19	0.13	0.16	0.13	0.10	0.06	0.09	0.05	△42.5	△21.5
도소매	전체	30.02	32.98	36.55	37.95	39.47	41.60	41.04	42.65	3.9	6.7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20.64	22.84	24.57	26.00	28.27	31.86	31.07	32.55	4.8	9.1
	사업서비스업	4.85	5.68	6.73	7.46	8.07	8.76	8.49	9.46	11.4	12.6
기타	음식숙박업	4.15	4.40	4.69	4.59	4.66	4.91	4.92	5.01	1.9	3.4
	운수창고업	4.08	4.44	4.74	4.93	5.26	5.61	5.45	5.80	6.4	6.6
	기타 서비스업	15.57	17.53	19.56	21.42	23.38	24.92	24.43	25.63	4.9	9.9
합계		186.78	203.87	220.72	233.75	247.19	261.88	258.53	270.00	4.4	7.0

주: 각 연도 대출채권 잔액은 말잔 기준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으로 대출유형 별로 살펴보면, 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신용보증부 대출의 증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2분기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채권 잔액 기준, 담보대출 채권은 전년동기 대비 4.5% 순증, 2020~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4% 순증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음. 신용대출 역시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4.3%)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음
- 반면, 신용보증부 대출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0.1% 감소하여 사실상 정체되었으며, 2020~2025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0.4% 증가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업종별 중소기업 대출채권 잔액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 2분기	2026 2분기	전년동기 대비	연평균 증가율
중소 기업 대출	담보대출	116.87	131.48	146.33	155.96	169.82	183.35	180.17	188.34	4.5	9.4
	신용보증부 대출	36.03	37.54	37.64	37.11	36.62	36.77	36.83	36.78	△0.1	0.4
	신용대출	33.88	34.84	36.74	40.68	40.75	41.77	41.53	44.89	8.1	4.3
총대출	담보대출	142.22	157.58	172.43	182.25	197.34	212.00	208.10	217.19	4.4	8.3
	신용보증부 대출	44.98	49.11	50.73	51.12	50.36	48.89	49.52	48.07	△2.9	1.7
	신용대출	46.57	47.65	50.00	53.73	52.88	54.73	54.38	58.31	7.2	3.3

주: 각 연도 대출채권 잔액은 말잔 기준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기관³⁾이 취급하는 보증잔액은 2025년 기준 157.9조원으로 2020년 (129.0조원)에 비해 연평균 4.1% 증가하였음
 - 이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정체 현상은 보증부 대출 시장 전반의 정체가 아닌,⁴⁾ 타 시중은행으로의 보증서대출 수요 이탈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⁵⁾
- 보증부 대출은 신용과 담보가 모두 부족한 저신용·영세 중소기업이 신용을 보장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품인바, 이러한 보증부 대출의 저조 현상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이들 3대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임. 그 외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연계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등이 일부 있음

4) 실제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2026년 3월 보증부대출 잔액(240.0조원)은 전년 동월(238.2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은행은 1.7조원 감소함(50.1조→48.4조원)

5)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은행 자체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에 따른 보증연계 대출심사의 보수화 경향 역시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음

- 특히 보증부 대출은 중소기업은행이 3대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우대 등을 받는 상품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출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신용 영세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⁶⁾

[3대 신용보증기관의 최근 5년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신용보증기금	63.9	71.4	76.6	81.6	82.9	83.5	5.5
기술보증기금	25.7	26.5	26.7	28.3	29.1	29.9	3.1
지역신용보증재단	39.4	43.1	46.7	44.6	42.8	44.5	2.5
계	129.0	141.0	150.0	154.5	154.8	157.9	4.1

주: 각 연도 보증잔액은 말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참고로 최근 3대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서는 보증비율이 종래(85~90%) 대비 전액보증(100%)까지 상향한 보증서도 확대·지원함으로써, 은행 입장에서 해당 대출은 미상환 위험을 분담하지 않는 무위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3. 중소기업은행 자회사의 관리 운영방향 정립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은행은 현재 9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은행이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 현황]

(단위: %, 억원)

자회사명	업종	중소기업은행의		매출액	2025년 당기순이익
		지분을	누적출자액		
(주)IBK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	100.0	2,655	8,782	2,456
IBK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	87.8	6,000	30,063	575
IBK연금보험(주)	보험업	100.0	4,900	7,115	112
IBK자산운용(주)	집합투자업	100.0	241	309	107
(주)IBK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100.0	1,936	1,213	△504
(주)IBK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1,000	47	△18
(주)IBK시스템	금융전산업	55.6	17	3,987	△45
IBK신용정보(주)	신용조사,채권추심업	100.0	30	343	27
(주)IBK서비스	용역서비스업	100.0	30	848	5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¹⁾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²⁾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 시, 전체 공공기관의 자회사 중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과의 경쟁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바 있음

- 해당 15개 자회사 중 8개가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에 해당함. 이는 해당 기관이 현재 민간기업과 금융시장에서 완전하게 경쟁 중인 기업임에도 중소기업은행이 상당액의 자본을 출자하여 재원을 묶어두고 있음을 의미함

[공공기관 미지정기관 중 민간 경쟁 중인 자회사 현황]

주무부처	모회사명	자회사명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이지케어텍(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KDB생명(주), 산은인베스트먼트(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
	중소기업은행	(주)IBK벤처투자, (주)아이비케이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주),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주)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문화체육 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주)아리랑TV미디어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도 공공기관 총 342개 지정, 미지정기관도 경영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 2026.1.

- 일반적으로 민간과 완전히 경쟁하는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공공성 때문임.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회사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상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절차 및 내용, 경영공시, 평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금융과 같이 민간시장이 성숙하였더라도, 중소기업 지원 등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을 지원하거나 직접투자 등 중소기업은행 모회사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연계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공공성을 근거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 그렇지 않고 자회사의 사업방식이 민간 금융기관과 유사하다면, 이는 재무구조상 민간에 비해 우위에 있는³⁾ 공공분야가 공공성이 낮은 사업영역에서 민간 영역을 침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회사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본 분석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금액(6,000억원)을 출자하고 전체 지분 중 87.8%를 가지고 있는 IBK투자증권(주)을 사례 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음

- IBK투자증권(주)은 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이에 부수되는 신탁,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기업임
- 일반적으로 모회사인 중소기업은행은 대출(융자)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간접금융을 주로 취급하는바, 주식발행(IPO)이나 주식혼합형 채권(CB·BW), 벤처펀드 조성 등 직접금융 영역에 대해서는 연계지원 필요성이 크에도 모회사가 직접 모두 수행할 수 없어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이해됨
- IBK투자증권(주)의 2025년 기준 매출액은 3조 63억원, 당기순이익은 575억원이며, 모회사인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한 배당금은 105억원임

3) 국책은행의 자회사는 자본조달시 국가의 보증채를 발행하는 모회사로부터 저리 차입이 가능하고, 적자 누적 시에도 모회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 기업에 비해 경영상 우위요인이 있음

4)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창업 초기(벤처캐피탈) - 성장기(캐피탈/융자) - 성숙기(IPO/증권)으로 이어지는 금융 성장사다리 제공이 필요한데, 모회사 중소기업은행은 「은행법」상 지분투자 제한이나 자산건전성 규제 등으로 인해 연계 금융영역에 수반되는 고위험 혁신 투자를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IBK투자증권(주)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중 모회사인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출은 외부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민간과 경쟁 중인 기업으로 판단됨
 - 2026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기준, IBK투자증권(주)의 매출액(영업수익)은 전년 동기(1조 7,878억원) 대비 96.8% 증가한 3조 5,182억원⁵⁾인데, 이 중 모회사인 중소기업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1,220억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음

[IBK투자증권(주)의 매출액 및 중소기업은행과의 거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매출액(A)	매출액 중 중소기업은행과의 거래				
		수수료	이자	금융상품	계(B)	비중(B/A)
2025년 연간	30,063	1.3	237	795	1,033	3.4
2026년 상반기	35,141	0.8	124	1,096	1,220	3.5

주: 별도 기준

자료: IBK투자증권(주)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으로 IBK투자증권(주)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펀드 결성·운용(GP)이나 채권발행·인수 및 신탁 등 중소기업 금융 실적이 상당수 존재함
 - 펀드 결성 관련, IBK투자증권(주)은 2026년 상반기 기준 53개 관계기관 펀드 또는 신기술조합에 운용사(GP) 등⁶⁾으로 참여하여 이들 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에 대한 직접출자 규모는 취득가액 기준 683억원 규모임
 -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 및 신용보강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중소기업 대상 영업부문인 중소기업 솔루션(SME solution) 부문의 매출이 2026년 상반기 기준 160억원 발생하였음

5) 연결 재무제표 기준

6) 일부 지분투자자(유한책임투자 LP) 1개 포함

- 또한 전국 중소기업은행 영업망과 연계한 복합금융을 통해, 중소기업 법인이나 경영자 개인 대상 소매 자산관리(WM) 부문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763억원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도 중소기업 금융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 결과 IBK투자증권(주)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고 있음

[IBK투자증권(주)의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2026년 상반기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주요 내용
중소기업 지원부문(SME)	160	26	사모펀드, 신기술조합, 중기채권 인수
기관 금융(Wholesale)	3,548	81	기관 채권중개, 퇴직연금 등
소매 금융(WM)	763	301	법인 및 개인 유희자금 및 자산관리
대체금융(PF)	302	△66	부동산개발 PF 등 유동화 등
상품 트레이딩(S&T)	30,206	14	파생상품, 국공채, 헤지거래 수수료
기타	203	54	기타 고유계정 및 본사 관리부문
계	35,141	381	-

주: 별도 기준

자료: IBK투자증권(주)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반면, 일부 업무에서는 타 투자증권사 대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서의 차별화된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 특화 투자증권사로서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케일업 기능이나, IBK투자증권(주)는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IPO 실적이 매년 공모액 기준 1~3%에 그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IPO 실적이 없음

[IBK투자증권(주)의 연도별 IPO 실적 및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모액 기준	IBK투자증권(주) ¹⁾	433	749	394	560	246
	전체 코스닥 ²⁾	33,426	24,858	22,562	20,467	22,665
	비율	1.3	3.0	1.7	2.7	1.1
건수 기준	IBK투자증권(주)	4	4	2	3	2
	전체 코스닥	75	66	77	70	69
	비율	5.3	6.1	2.6	4.3	2.9

주: 1) IBK투자증권(주)의 공모액은 주관사 실적을 의미하며, 일반 IPO(직상장) 뿐만 아니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한 상장을 포함함(2021년 2건, 2022년 3건)

2) 2020년 이후 IBK투자증권(주)의 IPO는 유가증권시장(대기업) 상장실적 없이, 전량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자료: 연도별 IBK투자증권(주) 사업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또한 매출액 중 275억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부동산 PF 유동화 영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26년 상반기 기준 대규모 손실(108억원)이 발생한 것은 중소 금융지원 업무에 부합하지 않음
 - 부동산 PF 유동화란 부동산 개발 시 시행사나 건설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형태로 재발행하고, 미판매시 증권사가 매입이나 채무인수를 약정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의미함
 - 부동산 PF 유동화는 수수료가 높아 단기 수익성이 좋으나, 대다수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중소 건설사 등 중소기업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구조로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IBK투자증권(주)은 일부 중소기업 특화 금융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반 민간 증권사와 차별화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공공성과 관련이 적은 사업영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 및 정부는 민간과 경합하는 금융 시장 영역에서의 자회사 운영에 있어서, 운영 방식상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회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회사의 사업내용 상당수가 민간 금융기관과 경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이나 지분 재조정을 포함한 관리 운영 및 출자재원 운용상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3-1. 장기 공매유찰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위탁 관리 및 개발, 체납조세(국세·지방세) 및 압류재산 정리, 가계 재기지원(부실채권 인수 및 소각), 기업정상화 지원(펀드출자¹⁾, 유동성공급²⁾, 기타 자금대여·보증·채권인수) 등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그 중 국공유재산 위탁 관리 및 개발 업무는 ① 국유재산을 정부 대신 대부·매각하고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관리하고, ② 국유재산(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공공재산 포함) 중 저활용 재산을 개발하여 자산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업무를 맡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6년도 투자·회수계획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투자	회수	투자	회수
투자	국공유재산 관리·개발	국유지 위탁	262	793	384	363
		공유지 등 위탁	1,031	442	828	390
		소계	1,293	1,235	1,212	753
	가계 지원	부실채권인수	5,181	10,537	5,267	8,957
		새출발기금 출자	12,000	158	-	141
		새도약기금 출자	4,000	13	-	60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기업구조혁신펀드(캠코 직접 조성하고 운용), 기업지원펀드,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상 민간에서 결성한 펀드에 대한 캠코의 자금출자), 부동산펀드·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2) 자산 및 선박 등에 대한 매입 후 재임대(Sales and Leaseback: S&LB) 포함

(단위: 억원, %)

구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투자	회수	투자	회수
		소계	21,181	10,708	5,267	9,158
	기업 지원	금융지원	6,553	1,539	6,000	2,240
		펀드조성	6,134	2,740	3,610	3,569
		자산매입	5,226	7,609	4,100	5,210
		소계	17,913	11,888	13,710	11,019
	합계		40,387	23,831	20,189	20,930
구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수입 (채납)	처분 (매각 등)	수입 (채납)	처분 (매각 등)
조세 및 압류채권 정리			39,443	8,232	48,630	8,959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그 중 국유재산 매각은 행정목적이 상실된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

- 2025년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간 국유재산 매각금액은 1조 6,885억 원 수준임. 대부분(86.8%) 수의매각이 차지하고 있고, 경쟁입찰(공매) 방식의 입찰은 연간 2,232억원 수준임
 - 수의매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유지 내 자투리 땅, 국가 외에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건물 점유자 대상 불하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법규매각임³⁾
 - 한편, 경쟁입찰(공매) 방식의 매각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자산거래 플랫폼(온비드)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3) 해당 매각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 100%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것이 원칙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도별 국유재산 매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건수	입찰(공매)	145	114	349	795	891
	수익매각	3,691	4,257	7,126	7,976	6,676
	계	3,836	4,371	7,475	8,771	7,567
매각 금액	입찰(공매) ¹⁾	168	180	1,208	2,248	2,232
	수익매각	13,224	14,590	16,667	19,808	14,653
	계	13,392	14,770	17,875	22,056	16,885

주: 1) 입찰(공매)의 매각금액은 낙찰금액을 의미함. 단, 대금미납으로 매각이 무산된 사례는 제외함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5년간 국유재산 입찰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감정평가 금액 대비 평균 낙찰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1년에는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102.0%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나, 2022년 이후 점차 비율이 하락하면서 2025년에는 감정평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73.8% 수준에서 낙찰액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매각물량 공급건수가 종전 대비 대폭 증가한 반면, 입찰 참가자수 증가는 그에 못미치는 데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 입찰참가자수를 입찰매각건수로 나눈 경쟁률은 2022년 5.84대 1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3.53대 1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도별 입찰매각(공매)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

구분	입찰 매각건수	입찰 참가자수	경쟁률 ¹⁾	감정평가액 (A)	낙찰금액 (B)	평균 낙찰가율 (B/A)
2021	145	589	4.06	166	169	102.0
2022	114	666	5.84	173	180	104.0
2023	349	1,147	3.29	1,331	1,208	90.8
2024	795	2,157	2.71	2,895	2,248	77.6
2025	891	3,142	3.53	3,009	2,232	74.2

주: 1) 총 입찰참가자수 / 총 입찰매각건수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또한 입찰매각에 이르기 전, 입찰자가 없어 공매가 장기유찰된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각 연도 상반기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6년 상반기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 일반재산의 전체 개찰 건수는 64건으로 전년 상반기(3,621건)의 1.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 유찰건의 재개찰 건수는 44건으로 전년 상반기(3,453건)의 1.3% 수준에 불과함
 - 특히 기존에 5회 이상 유찰이 발생한 국유 일반재산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는 한 건도 공매 입찰에 부친 실적이 없음

[전체 국유재산의 입찰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도별 입찰매각(공매) 현황]

(단위: 건, 명, 억원, %)

구분	전체 개찰건				기존 유찰건의 재개찰건 ¹⁾					
	계(A)	낙찰(B)	낙찰률 (B/A)	유찰 (A-B)	계(C)	낙찰(D)	낙찰률 (D/C)	유찰 (C-D)	10회 이상(E)	E/A
2022	93	65	69.9	28	31	7	22.6	24	-	-
2023	558	116	20.8	442	493	63	12.8	430	3	0.5
2024	2,892	313	10.8	2,579	2,757	206	7.5	2,551	31	1.1
2025	3,621	452	12.5	3,169	3,453	320	9.3	3,133	44	1.2
2026	64	20	31.3	44	44	6	13.7	38	-	-

주: 1) 동일 물건에 대해 2회 이상의 개찰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수로 각각 계상함

- 매년 개찰일이 1월~6월(상반기)인 국유 일반재산(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 일반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매각 건 기준. 낙찰 후 취소는 낙찰로, 개찰취소 및 유찰 후 수익계약은 유찰로 처리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및 온라인자산거래플랫폼(온비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그 결과, 기존에 장기유찰되었던 재산의 경우, 상당수는 현재 추가적인 공매 절차 등 매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 진행 또는 매각 외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2025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 일반재산 중 10회 이상 유찰건에 대한 현황]
(단위: 백만원, %, 회)

주소	종류	감정평가액 (최종 기준) (A)	최종회차 최저입찰액 (B)	비율 (B/A)	유찰 횟수 ¹⁾	개찰결과 (낙찰액)	최종 개찰일
대구시 남구 ○○동	대지	1,862	931	50.0	14	낙찰(950)	'25.5.22
대구시 중구 ○○로	시설	1,353	947	70.0	7	낙찰(962)	'25.9.11
충청남도 아산시 ○○면	대지	4,638	3,247	70.0	15	유찰	'25.5.22
경상북도 성주군 ○○읍	상가	2,495	1,497	60.0	12	유찰	'25.10.2
대구시 서구 ○○동	주택	1,948	1,754	90.0	36	유찰	'25.10.16
광주시 광산구 ○○동	잡종	1,741	1,741	100.0	22	입찰취소	'25.11.27
서울시 마포구 ○○동	주택	10,333	10,333	100.0	22	입찰취소	'25.11.27

주: 1) 과거 모든 매각 횟수 포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국유 일반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매각 건 기준. 낙찰 후 취소는 낙찰로, 개찰취소 및 유찰 후 수의계약은 유찰로 처리

자료: 온라인자산거래플랫폼(온비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반적으로 공매자산이 장기 유찰되는 원인은 경매시장적 요인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음

- 우선 법령상 최저입찰가격의 조정 하한선의 존재를 들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유찰된 공매건은 다음 공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을 회당 10%p씩 감액하는데, 국유재산은 법령⁵⁾에 따라 최초 감

4) 참고로 2026년도 일반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은 매월 90~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낙찰률은 전반적으로 다소 하락하였음(1월 53.1% → 6월 37.2%, 서울 아파트 기준)

자료 : 지지옥션 / 머니투데이, “공공매입 카드에 경매시장은 가우뿔”, 2026.8.31. 보도를 재인용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

정가의 50%까지만 감액할 수 있음⁶⁾

- 따라서 시장수요가 하한가에 못미치는 경우, 재차 공매를 하더라도 하한선 이상으로는 입찰을 할 수 없어 장기 매물이 될 수 있음
- 재감정평가 역시 장기 유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법령⁷⁾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화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반영⁸⁾하여, 변경된 감정평가액의 100%를 기준으로 재개찰이 진행됨
 - 통상적인 공시지가의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최저입찰가격의 상향요인이 되므로, 매각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제도는 국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의가 있는바, 공공의 자산가치를 방어하면서도 민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기 공매유찰 재산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함

- 현행 제도는 국유재산의 염가 처분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장 수요와 괴리된 채 비인가·유휴 재산을 장기 방치하여 공매 관련 행정비용의 누적을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의 범위에서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일반재산으로서 총괄청이 정하는 일반재산
2.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

6) 반면, 공매시장과 달리 민간 경매시장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장기 유찰물건의 경우 최초 감평가 대비 90% 이상 감액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함

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따라서 유찰 부동산의 재감정 시 종전 유찰이력을 반영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하한선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차등화 방안 마련, 일정 횟수 이상 유찰이 반복된 재산의 경우 추가 공매를 제한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와 같이 장기유찰 재산의 매각절차 미진행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미이용 자산의 진부화, 기능저하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추가적인 감소가 우려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재산에 대한 추가 매각진행 또는 매각 외 활용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기 유찰 자산의 누적은 감정평가액 대비 시장 수요 및 투자 매력도가 낮은 데 기인하므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인근 공공개발 사업과의 연계 등 자산가치 제고(value-up)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 역시 민간 매각 추진 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 목적 활용 수요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바,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 평가됨⁹⁾

9) 기획재정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5.12.15.

3-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 관련 쟁점

가. 현 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과 새도약기금은 취약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 채무조정기금을 말함
-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및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연체 차주의 신청을 받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새도약기금은 저소득·취약계층 중 장기연체자 특화 채무정리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소액 무담보 부실채권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의 주요 제도 비교]

구분	새출발기금(매입형)	새도약기금
대상	코로나19 여파 및 이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자 (원금 5,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원금 감면(최대 90%), 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	장기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탕감) 또는 채무조정
출범시기	2022년 10월(제2회 추경)	2025년 10월(제2회 추경)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
연체기간	90일 이상	7년 이상
지원 내용	순부채 기준 30~80% 원금 감면 (저소득·취약계층 최대90%)	상환능력 심사 후 일괄 소각 (소각대상 아닐 경우 채무조정)
채무조정 심사기준	소득, 자산(신청 이후)	소득, 자산(일괄 매입, 신청불요)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양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분리된 법인(주식회사)으로서 별도 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양 기금에 간접 출자(경유출자)하고 있음

- 정부는 양 기금에 대한 경유출자를 위하여 새출발기금 출자 목적 2조 9,100억원, 새도약기금 출자 목적 4,000억원 등 총 3조 3,1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였음
 - 이를 이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에 2조 4,100억원, 새도약기금에 4,000억원 등 총 2조 8,100억원을 실제 출자하였음
- 한편,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새출발기금 출자 목적 2조 9,100억원 중 새출발기금에 실제 출자하지 않은 현물출자분 5,000억원은 새출발기금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사채(캠코채) 발행용 자기자본으로 활용되었음
 - 새출발기금은 자체 채권 발행을 위한 신용이 없으므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사가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이를 차입하고 있음. 새출발기금이 공사에 시장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총 3조 4,700억원 규모임¹⁾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및 새도약기금에 대한 출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			
	출자		출자		대여(공사채 발행)	
	2025	누적	2025	누적	2025	누적
새출발기금 ¹⁾	12,000	29,100	12,000	24,100	15,500	34,700
새도약기금	4,000	4,000	4,000	4,000	0	0
계	16,000	33,100	16,000	28,100	15,500	34,700

주: 1) 새출발기금 경유출자 목적의 정부 → 공사로의 재정 출자액은 2022년 제2회추경 1조 1,000억원(현물 5,000억원 포함), 2023년도 본예산 2,800억원, 2024년도 본예산 3,300억원, 2025년도 본예산 5,000억원, 2025년도 제2회추경 7,000억원 등임. 2026년에는 신규 정부출자 사항이 없음

1. 2025년 말 기준

자료: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해당 자금은 추후 새출발기금 자본잠식시 추가 유상증자 또는 대여자금의 출자금 전환 등 손실흐수용 유보자금(buffer) 용도로도 활용 가능함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년 결산 결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출자금의 가치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공사의 자본이 크게 감소하였음
 - 2025년 기관 운영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1,66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영업외이익과 법인세비용 반영 시 1,5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음
 - 그러나 공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미실현 손익)가 대폭 하락한 결과, 기관이 거둔 총 포괄손익은 8,580억원 감소(-)로 나타났음
 - 그 중 공사가 보유한 새출발기금 지분가치의 하락분은 1조 4,065억원²⁾에 달하며, 이는 새출발기금에 출자한 전체 출자금(2조 4,100억원)의 58.4%에 달함(잔여 지분가치는 1조 3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5년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영업이익	+1,661	당기순이익(실현손익)		+1,502
영업외이익	+363	미실현 손익 ¹⁾	새출발기금	-14,065
법인세비용	-522		그 외의 비상장지분	+744
당기순이익(실현손익)	+1,502	총 포괄손익(자본증감)		-8,580

주: 1) 새출발기금 지분가치 손실 등에 따른 미래의 예상 법인세 감소분(이연법인세) +3,228억원은 반영하지 않음(총 포괄손익에는 반영)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새출발기금은 2026년 7월 말 현재 총 211,408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147,217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음. 약정을 체결한 채권규모는 총 13조 5,418억원 수준임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평가손실 1조 4,065억원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누적된 평가손실액이나, 2024년 이전에는 실적자료 부족으로 평가손실액의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가, 2025년 당기에 전액 평가손실액으로 인식되었음

- 이 중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을 감면시키는 매입형³⁾ 채무 조정의 대상자는 74,644명이며, 이들에 대한 채권원금 6조 8,449억원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4% 수준임
- 새출발기금은 남은 26% 수준의 채권(약 1.8조원)에 대해 최대 1~3년⁴⁾의 거치기간 부여 후 최장 10~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바, 잔여 채권의 현금 회수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측됨
- 이를 감안하면 공사의 새출발기금 지분가치 하락분(1조 4,065억원)은 채무 조정에 따른 채권감면(상각)액과 만기가 연장된 잔여 채권의 현재가치 하락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새출발기금의 누적 지원실적(2026년 7월 말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신청	약정 체결		
		계	매입형	중개형
인원 기준	211,408	147,217	74,644	72,573
채권원금 기준	333,817	135,418	68,449	66,969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지분가치 하락에 대해, 새출발기금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무조정에 따른 원금감면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에 정부출자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입장임

- 애초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따라 일부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로 설립되었는바, 지분가치 하락은 상당 부분 채권감면(상각)에 따른 것으로서 사업방식 그 자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임

3) 매입형 프로그램은 주로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직접 채권자가 되어 원금을 일부 감면시키는 프로그램을 말함.

반면, 중개형 프로그램은 대개 아직 부실에는 이르지 않은 부실우려차주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원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4)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의 경우

- 또한 해당 평가손실액(1조 4,065억원)은 전체 정부 출자액(2조 9,100억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새출발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야기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임

□ 그러나 새출발기금은 추가 채권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의 평균매입가율⁵⁾이 해마다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는 향후 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2025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매입형)의 채권감면 약정 체결실적은 채권원금 기준 5.2조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 7월 말 현재는 6.8조원으로 30.7% 증가한 상태임

[새출발기금의 누적 지원실적 추이]

(단위: 명, 억원)

구분	신청(전체)		약정 체결(매입형)		기금 자본가치
	인원 기준	채권원금 기준	인원 기준	채권원금 기준	
2025년 12월 말	174,673	277,327	57,491	52,354	10,035
2026년 7월 말	211,408	333,817	74,644	68,449	(미확정)
증가율	21.0	20.4	29.8	30.7	-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의 평균매입가율 역시 해마다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이 과거 지적된바 있음⁶⁾
 - 2023년 이후로 매입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담보 채권의 매입가율이 당초 제도 설계시 예상된 매입가율(0~35%)⁷⁾를 넘어, 매년 상승하는 추세임

5) 새출발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매입시 채권원금 그대로가 아닌 위험도를 고려하여 100% 이하의 매입가율로 매입함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에서 재인용

7)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2023.8.4.자 서울경제 보도 관련 설명” 보도자료, 2023.8.4.

- 무담보채권은 담보·보증부채권에 비해 채무 이행력이 낮아 채권감면(상각)폭이 큰 부실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 이후에도 이러한 매입가율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경우, 신규 매입채권의 상각폭은 기존 채권 대비 높을 소지가 있음

[연도별 새출발기금 채권매입가율(누적)]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담보·보증부	85.3	85.7	84.2	84.1
무담보	22.8	36.6	38.6	38.7
합계	29.2	41.8	43.9	44.4

자료: 금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부위원회」에서 재인용

- 끝으로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유사 사례의 경우, 채무조정(채권상각) 후 남은 잔여채권의 정상상환율은 60~7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잔여채권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함

[과거 유사 채무조정 사례별 정상상환율 현황]

(단위: %)

구분	국민행복기금 (2013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2022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	15억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인 채무자	15억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원금 30~9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원금 0~90%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원금 30~90% 감면, 10~20년 장기 분할상환
정상상환율	최종 완제율 60.2% (64만명 중 41만명)	2024년 기준 누적완제율 73.5%	(미 정)

주: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인 부실차주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민행복기금 상환율) 한국일보, “역대 빚 탕감 수혜자, 10명 중 6명은 다 갚았다”, 2022.8.16.에서 재인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상환율) 신용회복위원회, “2025.4.29. 동아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25.4.29.

- 한편, 최근 공사는 과거 새출발기금 손실 보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 받아 보유 중인 한국도로공사 주식(출자 당시 가액 5,000억원)⁸⁾에 대해, 새출발기금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 중임
- 다만, 공사 입장에서 이는 건전 자산인 우량 공기업 지분을 고위험 비상장지분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공사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함⁹⁾
 - 또한 차후 새출발기금의 자본감소가 심화될 경우, 공사는 추가 출자 등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에 나설 수 밖에 없으나, 이는 또다른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¹⁰⁾
- 어느 정도의 새출발기금 손실은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금조달 기반의 침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정부와 공사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새도약기금 역시 새출발기금과 사업구조가 유사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새도약기금에 대해서도 초기 제도 운영단계에서부터 매입가율 및 상환관리 등 면밀한 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2025년 말 장부가액 기준으로는 4,626억원 규모

9) 한국도로공사 주식은 우량 공기업 지분으로서 장부상 공정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산임. 따라서 이를 새출발기금에 현물출자하면, 공사 장부에서는 우량 공기업(도로공사) 지분이 결손이 누적되는 한계 기구(새출발기금)의 비상장 신주로 대체되는 악영향이 발생함

10)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증자 부담 뿐만 아니라, 별도로 새출발기금에 대여한 대여금의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함을 의미함.

특히 새출발기금이 보유한 조정채권은 만기가 최대 20년으로 장기이나, 공사가 새출발기금에 보유한 대여금의 만기는 2026년 10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비교적 단기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만기 불일치로 인해 향후 대여금 만기연장 및 차환 등이 불가피한바, 공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

4-1. P-CBS 직접발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위험관리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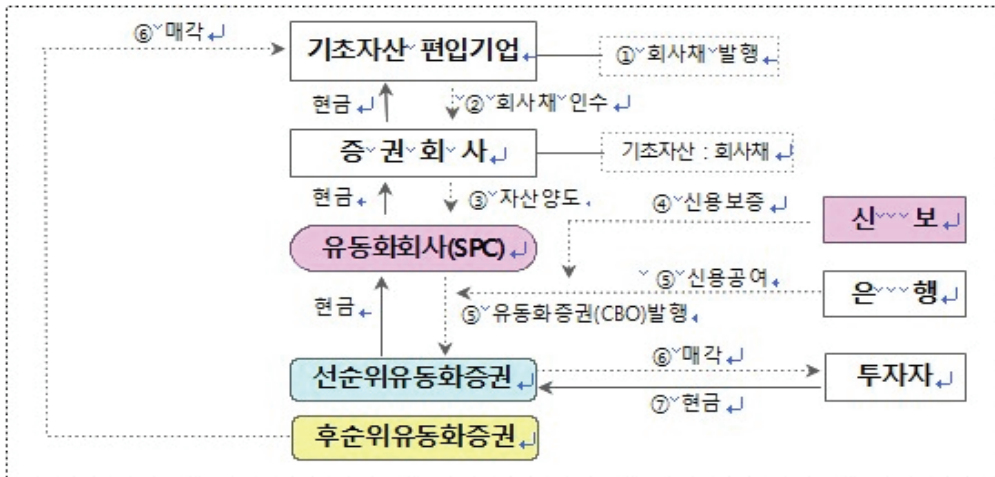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주요 사업은 유동화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등 신용보증사업과 매출채권보험, 신용정보 관리 및 기업의 경영·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P-CBO)¹⁾에 신용보증을 제 공함
 - 기초자산의 부실로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한 경우 수탁은행이 부족액을 신용공여하고, 신보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대위 변제²⁾한 후 부실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함

오지은 예산분석관 (jiejun.oh@assembly.go.kr, 6788-4684)

1)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다수 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하여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임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P-CBO 발행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신용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유동화전문 회사(SPC)를 통한 P-CBO 발행 외에 신보가 신탁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개정법은 신보가 회사채 등을 직접 취득·인수하여 자체 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신보를 통해 발행되는 ‘자기신탁을 통한 유동화수익증권’(이하 “P-CBS”라 함)은 신보 고유계정이 편입기업의 회사채 등을 직접 인수한 후 신탁계정에 신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P-CBS)을 발행하는 구조임

[2025년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관련 주요 개정사항(「신용보증기금법」) 및 동 법 시행령]

조문	주요 개정사항	효과
제1조(목적)	신보의 설립목적에 기존 기업의 채무보증외에 회사채 등 유동화 수행을 추가	신보가 직접 회사채 등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제2조제7호의2 (정의)	‘회사채 등 유동화’의 개념을 신설하고, 기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회사채 등을 양수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과 함께 신보가 회사채 등을 취득·인수한 후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규정	기존 SPC 방식 외에 신보 자체 신탁방식 P-CBS 발행 허용
제23조(업무)	신보의 법정 업무에 유동화보증 및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을 명시	신보가 보증뿐 아니라 회사채 취득·신탁·유동화증권 발행 업무까지 직접 수행 가능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신보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 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후,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SPC 설립 없이 신보의 직접 P-CBS 발행 가능
	금융위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회사채 취득·보유·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에 대해 신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신탁업 인가 없이 신보가 신탁방식 유동화업무 수행 가능

나. 주요 쟁점

- 신보는 개정법에 근거하여 2026년 6월 최초 P-CBS를 발행하였는데, 중견기업 13개 기업이 편입되었으며, 기업당 평균 발행액은 206억 9,000만원으로 기존 SPC 방식의 26억 3,000만원보다 약 7.9배 큰 수준임
 - 신보는 직접발행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 발행 실패와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발행규모와 신용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P-CBS가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회사채 인수·운용 전문인력과 위험관리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중소기업도 직접발행 지원대상에 균형 있게 포함할 필요가 있음

[발행방식별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개사, 회)

구분	2025	2026.7
발행액 합계	4,754,682	2,185,603
- 기존 SPC 방식	4,754,682	1,916,603
- 신보 신탁계정 직접발행	0	269,000
직접발행 횟수	0	1
편입기업 수 합계	1,441	741
- 기존 SPC 방식	1,441	728
- 신보 신탁계정 직접발행	0	13
편입기업당 평균 발행액	3,299.6	2,949.5
- 기존 SPC 방식	3,299.6	2,632.7
- 신보 신탁계정 직접발행	0	20,692.3

주: 2025년은 연간 실적, 2026년은 7월까지의 누적 실적이며, 편입기업당 평균 발행액은 발행액을 편입기업 수로 나누어 산정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P-CBS로 인해 신보가 부담하게 되는 단계별 위험]

단계	주요 내용	단계별 위험
① 편입기업 선정	P-CBS에 편입할 기업을 심사·선정	기업 부실 위험 편입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도가 발생하면 기초 회사채의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② 회사채 발행·인수	편입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신보 고유계정이 이를 우선 인수	자금조달 및 보유 위험 회사채 발행 후 유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보가 회사채를 직접 보유하므로,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③ 유동화자산 이전	고유계정이 보유한 회사채를 신탁계정에 신탁	구조·운영 위험 다수 기업의 회사채를 신탁·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산관리 및 회계처리 등이 복잡해질 수 있음
④ P-CBS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선·후순위 유동화증권 발행	발행조건 위험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투자수요가 부족하면 예상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하거나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⑤ 투자자 매각	선순위 유동화증권을 시장 투자자에게 매각	매각·시장 위험 투자수요가 부족하면 유동화증권이 불리한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음
⑥ 만기까지 관리	편입기업의 회사채 원리금으로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	부도·회수 위험 편입기업이 부도나면 기초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후순위증권 등으로 손실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보의 보증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⑦ 차환 지원	만기 도래 기업이 신규 P-CBS 등을 통해 자금을 다시 조달	부실 이연 위험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차환지원이 반복되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신보의 위험이 누적될 수 있음

- 또한 법률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제 담당인력의 전문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채 인수·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신보는 향후 유동화증권 전액 직접 발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P-CBS는 중견기업 중심의 1회 발행에 불과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근거만으로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내부통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보는 발행규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회사채 인수·운용 전문인력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보증채무 이행재원 및 부실자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P-CBS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포함한 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 필요

가. 현 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 조달 관련 금전채무 보증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신보가 관리·운영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법령상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근거법령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2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등)	①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받는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관리한다.

- 기금은 그간 양도성예금(CD), 연기금투자플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하던 여유자금 중 1,000억원을 2025년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블라인드펀드)에 투자함
 -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은 뒤, 펀드 운용사를 통한 투자 대상 발굴 및 투자 집행을 하는 방식임

[특별인프라펀드 지분증권 개요]

구분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세부 내용
목적	출자금 모집이 어려운 민자사업에 출자금 지원
운용사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투자대상	BTO/BTL사업 또는 혼합방식(BTO+BTL)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법인 지분증권(자기자본 1/3 이내)
운용방식	블라인드펀드
목표수익률	국고채(5년) + 1.1% 이내
펀드규모	2,000억원(신보 및 산업은행 각 1천억원)
투자기간	신탁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회수방안	(지분증권) 지분매매 또는 대출(유상감자)로 회수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식·출자증권 등의 인수·매입을 기금의 운용 용도로 포괄적 허용하고 있음
- 다만 기금의 특별인프라펀드 출자는 기금의 법적 설치목적인 신용보증과는 위험의 성격 및 자금회수 구조가 상이함¹⁾

1)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미달 또는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한 타인자본의 원리금 미상환 리스크를 보강하는 목적이며, 사업 운영 개시 후 원금 상환을 통해 보증해지되는 구조를 가진. 이에 반해 동 출자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 출자사업별 건설 완료 시점에 지분증권 매매 등을 통해 출자금 원금 및 수익금 회수 예상됨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근거법령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기금의 운용)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폴에의 예약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²⁾

□ 한편 기금의 투자범위가 최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특별인프라펀드 관련 투자근거는 2024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2025년 11월에는 보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주식·지분 투자뿐 아니라 대출 및 대출채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다만 기금의 설치근거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주된 기능을 민간투자사업 관련 금전채무의 ‘보증’으로 규정했지만, 투자업무 자체를 기금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2) 23. “특별 인프라펀드”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한 법 제41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4.10.14., 개정 2025.11.28.>
24.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란 특별 인프라펀드 중 주식, 지분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관련 법령 개정 연혁(「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비고
2024.10.14. 이전	법령 상 특별인프라펀드 관련 명시적 정의 없음	기존에는 예탁·유동화회사 출자 등 중심으로 기금 운용
2024.10.14.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를 정의하는 법령 신설	민간투자사업의 주식·지분에 투자(보증과 연계되지 않은 투자임)를 하는 인프라펀드에 기금의 출자를 허용
2025년	기금이 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 출자	2024.10.14. 신설 규정에 근거
2025.11.28.	“특별 인프라펀드”를 새로 정의하고 주식·지분뿐 아니라 대출· 대출채권까지 투자대상에 포함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을 지분투자에서 대출로까지 확대함

나. 주요 쟁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금융자산 중 단기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비중은 2021년 53.5%에서 2025년 16.6%로 36.9%p 하락³⁾하였으며, 2025년 투자기간이 최대 10년인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이(8.3%) 투자됨
 - 금융자산의 운용방식이 예금·CD 등 만기가 정해진 상품에서 투자성과와 회수여건에 따라 회수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자산(특별인프라펀드)으로 일부 전환되었음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단기자산 배분 비중을 낮춘 것은 기금운용평가 시 권고되었던 중장기 자산 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향에 따른 것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비중	2022	2023	2024	2025	비중	증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9	0.2	22	8	23	21	0.2	2
단기금융상품	4,682	53.3	1,717	2,799	2,485	1,982	16.4	△2,700
- 정기예금	2,514	28.6	491	510	570	360	3.0	△2,154
- 양도성예금증서	2,168	24.7	1,226	2,289	1,915	1,622	13.4	△546
장기금융상품	847	9.6	2,132	621	322	0	0	△847
- 정기예금	191	2.2	300	77	0	0	0	△191
- 기타의 금융상품	656	7.5	1,832	544	322	0	0	△656
지분증권	3,240	36.9	5,150	6,840	8,220	9,067	75.1	5,827
기타의기타금융자산	0	0	0	0	0	1,000	8.3	1,000
합계	8,788	100.0	9,021	10,268	11,050	12,070	100.0	3,282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4,701	0	1,739	2,807	2,508	2,003	0	△2,698
총 금융자산 대비 비중	53.5	0	19.3	27.3	22.7	16.6	0	0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종전 CD와 연기금투자풀 수익증권 등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으나, 2025년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을 투자함
- 그러나 모펀드 납입액 중 자펀드에 출자된 금액은 428억원으로 42.8%에 불과하고, 현재 투자사업은 2031년 준공 이후 지분매각 또는 감자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므로 회수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됨

[특별인프라펀드 출자금의 단계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납입·투자액	미집행액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모펀드 납입	1,000	0
모펀드의 자펀드 납입액	856	0
(신보 납입분 중 자펀드 납입액)	428	0
대장흥대 광역철도 투자(실집행)	591	265

자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향후 유사한 장기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및 신규 보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환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등 적정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별인프라펀드의 투자집행률과 예상 회수시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자집행 또는 투자사업의 준공·지분매각 지연 등으로 자금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1.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관련 신탁계정의 적자 누적 문제

가. 현 황

- 유동화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가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¹⁾²⁾을 취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저당채권을 공사가 양수하여 현금화·유통시켜줌으로써 시중은행에 정책모기지 자금을 재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기본적으로 공사는 해당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공사의 독립계정(신탁계정)에 분리하여 보관(자기신탁)함³⁾
 - 한편, 공사는 자기신탁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표준화된 자체 증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유동화)하여 자금을 마련함. 해당 자금은 다시 시중은행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됨
- 이 때, 공사가 신탁계정을 통해 발행하는 자체 유동화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⁴⁾이라 함. MBS는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채권으로서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1) 보급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공사가 주택구입자금을 장기·고정금리로 조달·지원하는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적격대출은 2024년 신규공급 종료).
그 중 보급자리론은 무주택·서민의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소득·대출한도 제한을 가지며 금리 역시 공사 공시금리로 더욱 저렴한 특징을 가짐(반면,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은 없으며, 금리는 고정금리이나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기준+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결정)
- 2) 반면, 일반적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의 자산일뿐, 공사의 채권신탁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3) 이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스스로가 위탁자 겸 수탁자가 되는 채권보관 및 운용방식을 자기신탁방식이라고 함.
「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는 채권을 외부 특수목적회사(SPC)에 맡기지 않고 공사 내부의 별도 계정에 분리하여 운용함으로써, 공사 파산시에도 해당 자금은 압류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파산절연의 효과가 발생함.
그 결과 공사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드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공사 내에 간이한 방식으로 채권의 신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됨

4) Mortgage-Backed Securities

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상당 부분 (2025년 기준 79.0%)을 차지하는 자금조달 수단임

-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는 신탁계정을 통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외에도, 공사가 자체 자산으로 직접 발행하는 형태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⁵⁾도 있음
- 양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위험(부도위험)의 관점에서는 모두 공사가 보증을 서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의 실질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만기 전 상환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함⁶⁾⁷⁾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누적발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2023	2024	2025	2026. 8.
주택저당증권(MBS)	3,971,784	164,611	106,803	123,386
채권담보부채권(MBB)	159,926	24,928	28,463	23,833
합계	4,131,710	189,539	135,266	165,189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Mortgage-Backed Bond

6) MBS의 경우, 스스로 자금을 굴릴 수 없는 신탁의 본질적 한계(유입과 유출의 일치, pass-through)에 따라, 만일 기초가 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이 조기에 상환되면, 신탁계정 역시 콜 옵션을 발동하여 MBS를 조기상환하게 됨.

이 경우, MBS를 구매한 투자자는 비록 원금은 보장되나, 만기 이전에 원하지 않는 자금의 조기상환을 경험하므로 만기 대비 낮은 수익의 실현, 자금의 재융통 부담 등을 지게 됨. 이러한 MBS의 위험은 차주의 조기상환의 위험이 높은 금리 하락 시기에 주로 발생함

7) 반면 MBB의 경우, 스스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실체인 공사가 발행하므로, 비록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의 자체 신용에 따라 기존 만기스케줄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음.

따라서 MBB는 MBS와 달리, 원금손실 뿐만 아니라 조기상환의 위험 역시 발생하지 않는데, 이처럼 1차적으로 발행기관(공사)이 상환책임(무조건적 선순위 청구권)을 지고, 2차적으로 담보자산(신탁된 주택저당채권)을 통한 배타적 우선변제권이 책임을 지는 MBB의 법적 이점을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라 함. MBB는 공사와 담보자산이 동시에 부실에 빠지지 않는한, 사실상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MBB를 커버드본드(covered-bond)라고 부르기도 함

8) MBB는 해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특징을 반영하여 해외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비교]

구분	주택저당증권(MBS)	채권담보부증권(MBB)
실질적 성격	신탁계정을 통해 발행하는 채권 (신탁수익증권)	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 (공사채)
자산소유권	신탁계정에 이전됨 (단, 공사가 업무 수탁)	공사가 가짐
원리금수취권	신탁계정이 가짐 (단, 투자자에 확정수익 지급)	공사가 가짐 (단, 투자자에 확정수익 지급)
투자자의 부도 및 조기상환위험	부도위험 없음. 조기상환위험 있음 (신탁계정이 위험을 부담하나, 기초채권 청산시에는 콜옵션 보유)	없음 (공사가 전적으로 위험부담)
안전성	공사의 연대 지급보증으로 안전	공사 신용 + 담보채권의 이중상환청구권으로 더욱 안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부문인 신탁계정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는 MBS 발행에 따른 자금 조달비용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주택저당채권에서 나오는 기초 수익을 상회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 2025년 공사의 신탁계정은 5조 3,496억원의 영업비용과 4조 9,649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여, 총 2,6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관련 신탁계정의 손익 및 순자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기순이익	526	△760	△2,083	△2,662	△2,628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다량으로 풀린 주택저당채권의 발생수익은 정
체되어 있는 반면, 조달비용은 최근의 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임

- 코로나19 확산 및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전후하여 시중에 주거안정 목적의
정책모기지 자금이 저금리⁹⁾로 다량 공급되었음. 2020~2022년까지 정책모
기지 누적 공급액은 총 87조원 수준임
 - 고정금리로 공급되는 정책모기지 상품 특성상, 해당 공급자금은 이후 금
리가 오르면 중도상환되지 않고 최장 30~50년의 만기까지 상당수 채권
이 고정(lock-in)되는 효과가 발생함

[연도별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보금자리론	공급액	36.4	23.3	17.0	43.9	6.6	19.0	15.1
	잔액	69.1	83.4	89.7	112.7	113.9	109.6	115.8
적격대출	공급액	4.3	4.5	1.5	0.1	-	-	-
	잔액	48.7	45.4	42.4	38.9	34.4	30.2	27.9
합계	공급액	40.7	27.8	18.5	44.0	6.6	19.0	15.1
	잔액	117.8	128.8	132.1	151.6	148.3	139.8	143.7

주: 적격대출은 2024년을 끝으로 신규 공급 중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반면 2023년 이후 금리상승기가 되자, 해당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발행
금리는 급등하여, 조달비용이 발생수익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연물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년물 MBS의 경우, 2021년 초 발행금
리는 1%대 중반 수준을 보였으나, 2026년 9월 초 현재는 크게 상승한
4%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¹⁰⁾

9) 보급자리론의 최저적용금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연 2%대로 공급되었음

10) 2026년 9월 4일 선순위 기준 5년만기 3개월 이표채(콜옵션 없음)의 MBS 발행금리는 연 4.45%임

[연도별 MBS 발행금리 추이(연이율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평균금리 ¹⁾	1.66	1.99	3.78	4.49	3.52	3.23	4.25
발행액 ²⁾	466,000	342,65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123,386

주: 1) 평균금리는 회사별 평균금리를 발행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치임. 단, 연물별 발행비중이 다르므로 가중평균된 평균금리가 해당 채권의 금리 추이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님

2) 스왑 발행분은 제외한 신규 발행액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이처럼 기본적으로 공사가 발행하는 MBS 채권은 수익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나, 채권발행은 상대적으로 단기채 위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만기구조 불일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최근 심화되는 추세임

- 2025년부터 최근까지 채권시장에서는 MBS 채권의 시장 선호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지표인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¹¹⁾가 연물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임
-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10년 이상)의 스프레드 증가폭이 더욱 큰데, 이는 만기가 긴 장기 MBS 채권일수록 채권시장의 선호가 더 많이 감소함을 의미함
 - 2026년 MBS의 연물별 신용 스프레드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물의 경우 2024년 대비 비슷하나, 20년물·30년물의 경우 각각 40.6bp, 39.5bp 증가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임

11) 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개별 채권의 유통수익률(또는 발행금리)의 차이값(격차)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무위험 안전자산인 국고채 대비, 만기는 같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타 채권은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시장 유동성 위험에 비례하여 시장금리(요구수익률)가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격차(가산금리)를 가리킴

[연도별·연물별 MBS의 신용 스프레드 현황(동일만기 국고채 기준)]

(단위: bp=0.01%p)

구분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2021	-	-	-	+26.3	+40.8	+30.1	+26.8	+26.8
2022	-	-	-	+65.0	+83.1	+84.6	+84.4	+85.8
2023	-	-	+46.1	+57.8	+76.4	+94.9	+103.0	+101.3
2024	-	+23.2	+20.9	+19.5	+23.7	+26.3	+31.9	+37.5
2025	+21.3	+15.3	+16.7	+18.3	+30.1	+40.0	+63.4	+56.3
2026.8.	+28.3	+27.0	+26.7	+27.0	+49.3	+64.1	+72.5	+77.0

주: 1. 잔존만기가 남아있는 미상환채권을 대상으로 함(따라서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실효된 2021~24년도에 발행된 일부 단기채는 스프레드값이 없음)

2.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만을 대상으로, 스왑 발행은 제외한 신규 발행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 결과, 공사 역시 장기채보다는 비교적 시장 수용성이 높은 만기 1~3년의 단기채 위주의 채권 발행으로 대응하고 있는바, 이는 수익과 채권발행 간의 만기 불일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026년 8월까지의 MBS 발행분 중 단기채의 비중(52.2%)은 2024년 대비 11.8%p 늘어난 반면, 장기채(20.4%)는 6.3%p 감소함

[연도별·연물별 MBS의 발행액·비중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단기채(1~3년)	중기채(5~7년)	장기채(10~30년)	계 ¹⁾
2024	발행액	66,294	53,100	44,700	164,611
	비중	40.4	32.4	27.2	100.0
2025	발행액	42,348	35,100	29,100	106,803
	비중	39.8	32.9	27.3	100.0
2026.8월	발행액	64,174	33,600	25,100	123,386
	비중	52.2	27.4	20.4	100.0

주: 집계액은 표에 나타나지 않은 후순위채권을 합친 것이므로, 연물별 집계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사업구조는 금리 안정기보다는 특히 최근과 같은 금리 급변기일 수록 더욱 공사의 손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일반적으로 금리가 안정적인 경우, 공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MBS 발행금리를 시장에 맞게 설정하여, 정상적인 마진을 낼 수 있음
- 반면, 금리가 급변하는 경우, 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공사는 차주의 행태 변화로 인해 손실을 볼 소지가 높음
 - 금리 상승기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채무를 유지하여 채권이 고정(lock-in)되는 반면, 채권발행(자금조달) 금리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여 공사의 역마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¹²⁾
 -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기존 대출을 갚고 신규 대출로 차환함으로써, 채권의 조기상환이 발생하여 수입기반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음¹³⁾

□ 결국 이러한 손실 문제는 조달금리 대비 공사가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인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상 어느 정도의 사업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금조달 기반의 침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공사는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및 자금 조달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기존의 자산-부채 불일치 구조에서 현재와 같은 단기채 발행 비중의 증가는 향후 금리 재상승시 대규모 차환(roll-over)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 투자기관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상품구조의 다양화¹⁴⁾

12) 이는 ① 앞서 언급한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라, 주로 대출을 1~3년 단기 MBS로 조달하여 만기 도래 시 고금리로 차환하는 문제 외에도, ② 대출 실행 후 MBS 발행까지 소요되는 2~3개월간의 시차 중에 금리가 상승할 위험, ③ 정책적 금리 통제로 신규 대출금리를 조달금리보다 낮게 묶어두는 정책적 요인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13) 일부는 MBS의 콜옵션 발동으로 공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채권시장에서 옵션프리 미엄만큼 MBS의 조달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14) 예컨대 보험사나 연기금 등과 같이 장기 투자수요가 있으나,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큰 기관에 대해 콜옵션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옵션프리미엄을 축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방안 마련

- 또는 해외 외화 커버드본드(MBB)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장기 MBS 발행에 집중된 수급 압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정책적으로는 과거 저금리 시절 공사가 축적한 신탁 잉여금(buffer)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므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전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정책적 금리격차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기에 최소 비용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아울러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9월 출범하였으며,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상품에는 햇살론 일반보증 ·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미소금융 등이 있음
 -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 다양한 재원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15)에 따라 구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
 - 구분회계는 서민금융보완계정,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자활지원계정(I, II), 고유계정으로 나누어짐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상품(2026.2월 말 기준)]

(단위: 만원)

상품명	대상	한도	대출기간	금리	재원
햇살론 일반보증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②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 가능	1,500	3년 / 5년 원리금 균등	12.5% 內 (보증료 2.5% 포함)	재정 금융회사 출연
햇살론 특례보증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1,000	3년 / 5년 원리금균등	12.5%* (보증료 5.5~6.5%) 사배자9.9%* (보증료 2.9~3.9%) * 성실상환시 최대 3%p 추가 금리 인하	

- 15)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위: 만원)

상품명	대상	한도	대출기간	금리	재원
햇살론 유스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이면서, 만34세 이하인 대학 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內), 청 년사업자(창업 1년 內)	1,200	최대 1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8년, 상환기간 최장 7년)	최대 5.0% (보증료 1% 포함) 사배자 2.0% (보증료 0.1% 포함) (이자보전 △1.6% 지원시)	재정
햇살론 카드	①연간 가처분소득 600 이상 ②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③신용카드 미보유자 ④서금원 신용관리 교육 이수자	300 (최초 200, 성실상환 시 추가 100)	최대 5년	-	금융회사 출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100 (연체자는 최초 50, 성실상환 시 추가 50)	2년	12.5%* 사배자 9.9%* * 전액 상환 시 납 부이자 50% 페이 백 지원 완제자 재대출 4.5%	기부금 (은행 등), 후면예금 운영수익
미소금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②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에 해당하는 자	최대 7,000 (상품별 상이)	3년 ~ 5년 (거치 6개월~1년)	2.0~4.5% (상품별 상이)	기부금 (기업·은행 등), 후면예금 운영수익
민간사업 수행기관 지원	①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②인증·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1,000~ 10,000 (취급기관 별 상이)	최대 6년 (취급기관별 상이)	6.0% 이하 (취급기관별 상이)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內 영세 상인	1,000	최대 2년 6개월 (6개월 거치기간 포함)	4.5% 이하	

주: '사배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의미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의 자원 및 구조]



주: 2026년 상품 개편 이전의 구조이며, 개편 후 주요 상품은 앞의 표 참조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각 계정별로 자원과 상품이 다르며, 고유계정은 금융상품 알선 사업 등을 수행함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등을 운영 및 관리
- 자활지원 I 계정은 미소금융사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수행
- 자활지원 II 계정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햇살론유스 신용보증사업을 수행
-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햇살론 신용보증 사업을 수행

[구분회계별 주요 사업]

구분회계		주요 사업
휴면예금등관리계정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등을 운영 및 관리
자활지원계정	I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전입금과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수행
	II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햇살론유스 신용보증사업을 수행
서민금융보완계정		정부 및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햇살론 신용보증사업을 수행
고유계정		설립 당시 납입받은 자본금을 재원으로 금융상품 알선사업 및 국민행복기금관리 등 고유사업을 수행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 상품]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정책 목표	청년층의 저축 장려 및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 성을 위해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자산가격 상승 등으 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 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에 대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 마련을 지원 하여 교육·취업·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①청년(19세 이상 ~ 34 세 이하)	①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①청년(19세 이상 ~ 34세 이하) * 청년 금융상품 공백기(26.1월~가 입일) 중 35세 도래한 청년 가입지원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 세 대상자 제외)	②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병역기간(최대 6년) 은 제외) ·종합소득금액 6,300 만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 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② 개인소득 기준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원 이하 ·(일반형)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우대형)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기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 상공인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 소기업 신규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	③ 가구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	③ 가구소득 기준 ·(일반형) 기준중위소득의 200%이하인 자 ·(우대형) 기준중위소득의 150%이하인 자 ·(기여금 미대상) 기준중위소득의 200%이하인 자
지원 내용	·납입금에 대해 1차년도 2%, 2차년도 4% 저축장 려금 지급(최대 36만원)	·납입금에 비례한 매 칭형태로 기여금을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납입금액의 3~6% 수준)	·(일반형) 납입금액 6% 지급 ·(우대형) 납입금액 12% 지급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혜택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금리	기본금리 5%(최대 6.0%)	취급 은행별 상이(최 대 6.0%)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취급 은행별 상이(최대 8.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6-1. 외부 자원성 수익 변동을 고려한 자활지원 계정 자체사업 손익 관리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의 2025년 재무 및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자본 규모가 확대되어 재무상태표상 외형과 자본 기반은 개선되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하여 손익 측면에서는 수익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영업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비용 중 근로자해탈론 종료에 따른 출연금반환비 1,549억원 발생 등 비용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저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서민금융진흥원 재무 및 손익 현황(2021~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총계	36,469	43,071	51,984	52,953	58,957	6,004	11.3
부채총계	29,444	34,663	44,706	41,911	45,495	3,584	8.6
자본총계	7,025	8,408	7,279	11,042	13,462	2,420	21.9
영업수익	7,403	9,942	15,319	17,342	18,530	1,188	6.9
영업이익	2,939	1,291	△1,197	3,612	2,128	△1,484	△41.1
당기순손익	2,972	1,365	△1,117	3,774	2,420	△1,354	△35.9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서민금융진흥원의 2025년 전체 당기순이익은 2,42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구분회계별 손익을 살펴보면 자활지원 I 계정에서 2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자활지원 I 계정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연도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22년 19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86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도 398억원의 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다시 273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됨

[서민금융진흥원 구분회계별 손익 현황(2022~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수익	비용	손익
1. 휴면예금등 관리계정	434	429	5	1,068	68	1,001	1,046	48	998	914	101	813
2. 자활지원계정	2,980	3,425	△444	6,728	6,174	554	5,707	5,437	270	5,614	5,821	△207
자활지원 I	2,571	2,764	△193	6,202	5,334	868	5,183	4,785	398	5,069	5,342	△273
자활지원 II	409	661	△251	526	840	△315	523	652	△128	545	480	65
3. 서민금융 보완계정	6,460	4,676	1,784	7,550	10,233	△2,683	10,741	8,267	2,474	12,308	10,514	1,794
4. 고유계정	595	575	20	617	605	12	610	577	33	629	609	20
5. 내부거래	△453	△453	-	△561	△561	-	△594	△594	-	△633	△633	-
합계 (내부거래 차감)	10,017	8,652	1,365	15,402	16,518	△1,117	17,509	13,735	3,774	18,832	16,412	2,420

주: 서민금융진흥원은 구분회계를 2021년 10월 시행하여 2022년 자료부터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자활지원 I 계정은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자체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금과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자체 서민 금융사업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등 일부 정부 수탁사업도 동일 계정에서 회 계처리하고 있음

□ 자활지원 I 계정 손익의 변동에는 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대손비 용뿐 아니라 외부에서 조성되어 '이전수입'으로 인식되는 재원의 변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2년 자활지원 I 계정의 이전수입은 약 1억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 193억원이 발생
- 2023년에는 이전수입이 1,42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868억원의 당기순 이익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이전수입 1,080억원, 당기순이익 398억원임
- 2025년에는 이전수입이 326억원으로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 273억원으로 다시 전환

[자활지원 I 계정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영업수익	2,571	6,202	5,183	5,068
이전수입	1	1,427	1,080	326
자활지원 I 당기손익	△193	868	398	△273

주: 이전수입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일반기부금 등으로 구성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자활지원 I 계정의 당기손익은 자체 서민금융사업의 영업성과뿐 아니라 기부금·금융기관 출연재원 등 외부에서 조성되어 당기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므로, 계정 전체의 당기순손익만으로 자체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은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의 차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나타내지만, 자활지원 I 계정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사업의 특성상 이자수익 외에 기부금·출연재원 등이 이전수입으로 인식되는 비중이 상당함
- 2024년 대비 2025년 수탁사업을 제외한 비용은 626억원 감소하였음에도 손익은 674억원 악화되었고, 같은 기간 이전수입이 754억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2025년 손실 전환에는 재원성 수익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성 수익을 구분한 상태에서 이자수익, 대손비용, 대출채권 평가·처분손실, 회수액 및 사업운영비 등을 별도로 살펴보아야 함

[자활지원 I 계정의 상세 손익 현황(2024~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구분	2024(A)	2025(B)	증감(B-A)
수익 합계(수탁사업 제외)	2,232	936	△1,296
이자수익	707	557	△151
이전수입	1,080	326	△754
기타의 영업수익	445	54	△391
비용 합계(수탁사업 제외)	1,830	1,204	△626
대손상각비	601	385	△216
대손상각비환입	△4	△34	△30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319	311	△8
기타영업비용	880	504	△376
판매비와관리비	33	38	5
영업손익(수탁사업 제외)	402	△268	△670
당기순손익(수탁사업 제외)	398	△276	△674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자활지원 I 계정의 전체 당기손익과 별도로 외부 재원성 수익의 영향을 구분한 자체사업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활지원 I 계정의 연도별 손익을 ‘자체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외부 재원성 수익’, ‘수탁사업 수익·비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을 반영하기 전 자체사업 손익과 외부 재원 반영 후 손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당기순손익의 변동이 사업 자체의 수익·비용 변화에 따른 것인지 재원조성 규모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결국 자활지원 I 계정은 당기순손익 자체보다 외부 재원 투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손익과 재원소진·회수 구조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외부 재원 규모의 변동과 자체사업의 경영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2. 자체 서민금융사업의 상환·자활 성과 중심 관리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은 자활지원 I 계정을 통해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 자체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자활지원 I 계정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금과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사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계정임
 - 미소 사업수행기관 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재단은 자체 기부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법인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
 -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이를 재원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구조임
 -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인회에 대출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상인회가 해당 자금으로 상인회원에게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대부업체 이용조차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금원이 직접 소액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임. 종전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2025년 3월 변경함
- 최근 5년간 주요 자체 서민금융사업 공급 현황을 보면, 미소 사업수행기관 대출은 2021년 875억원에서 2025년 904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은 2021년 99억원에서 2025년 8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매년 450억원 내외로 공급

- 미소 사업수행기관 대출은 2021~2025년 합계 4,460억원, 4만 931건이 공급되었고,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은 같은 기간 합계 464억원, 1,366건이 공급됨
-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2021년 417억원, 2022~2024년 각 450억원, 2025년 446억원 공급

[주요 자체 서민금융사업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건,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합계	증감(B-A)
미소	대출 금액	875	893	892	896	904	4,460	8
	대출 건수	8,534	8,312	8,348	7,985	7,752	40,931	△233
민간사업	대출 금액	99	91	96	94	84	464	△10
	대출 건수	185	178	271	389	343	1,366	△46
전통시장	대출 금액	417	450	450	450	446	2,213	△4
	지원시장 수	337	338	334	332	333	1,674	1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금액	-	-	958	983	1,326	3,267	343
	대출 건수	-	-	165,325	180,947	174,974	521,246	△5,973

주: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3월부터 취급

2. 지원시장 수 합계는 중복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3월부터 공급하였으며, 2023년 이후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 및 상각액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규대출액은 2023년 958억원에서 2025년 1,32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기말잔액도 2023년 931억원에서 2025년 2,337억원으로 증가
-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로 상승하였고, 2025년 상각액은 338억원으로 나타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회수·손실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23	2024	2025
신규대출액	958	983	1,326
신규대출건수	165,325	180,947	174,974
회수액	25	176	350
기말잔액(A)	931	1,722	2,337
연체율	11.7	32.2	37.8
대손충당금(B)	267	652	659
대손충당률(B/A)	28.7	37.9	28.2
대손상각비	268	391	355
상각액	-	1	338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서민금융사업에 대해 공급실적뿐 아니라 상환·회수·자활성과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성격의 사업으로, 단순 공급 확대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자활지원 I 계정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금과 민간 기부금 등 한정적·변동성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급된 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회수되어 다시 서민금융 재원으로 순환되는지 점검할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급실적 외에도 일부 상환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율·재연체율, 정책서민금융 재이용률 등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정상상환율 및 완제율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중심으로 제시됨
- 그러나 자체 서민금융사업인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대출, 전통시장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정상상환율, 회수율, 연체율, 완제율, 자활성과 등이 제출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공급 이후 실질적인 상환·자활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민간사업수행기관 및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구조¹⁾이므로, 사업수행기관 단위의 지원금 관리뿐 아니라 최종 이용자 기준 성과관리도 강화하여야 함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2)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이행 여부, 이용자 연체관리 여부 등을 점검
- 그러나 사업수행기관별 최종 이용자의 정상상환율, 연체율, 회수율, 자활성과 지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점검이 최종 이용자 성과까지 포괄하도록 개선할 필요

□ 따라서 자체 대출사업의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신용점수 변화, 제도권 금융 전환율,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자활성과 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

- 정책목적을 고려하되, 반복 이용 여부, 상환유예·채무조정 연계 여부 등을 함께 관리하여 단순 대출공급을 넘어 자체 대출사업의 자활성과를 확인할 필요

1) 자체 대출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간접지원과 최종 이용자에 대한 직접대출로 구분됨

2)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직접대출채권 상각·제각¹⁾ 이후 회수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은 자활지원 I 계정을 통해 미소금융사업대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자체재원을 활용한 직접대출사업²⁾을 수행하고 있음
 - 직접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이후 원금 회수뿐 아니라 연체·부실에 따른 신용 손실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임
- 2025년 말 자활지원 I 계정의 대출채권 총액은 5,658억원이며, 이 중 미소금융사업대출채권이 2,599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채권이 2,337억원으로 두 상품이 자활지원 I 계정 직접대출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함
 - 미소금융사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696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채권은 659억원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대손충당률은 31.5%, 28.2% 수준임

[2025년 말 자활지원 I 계정 주요 직접대출채권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가액	대손충당률 (C/(A-B))
창업취업지원대출	110	11	64	35	65.0
사회적기업지원대출	247	33	101	114	46.9
생활안정지원대출	38	9	6	23	20.8
전통시장소액대출	319	17	27	275	9.0
미소금융사업대출	2,599	394	696	1,510	31.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337	-	659	1,678	28.2
지자체협약대출	7	-	2	5	23.4
합계	5,658	464	1,554	3,640	29.9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1) 대손상각비는 신용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며, 제각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처리임. 장부상 제거가 채권의 법적 소멸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회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보유하는 대출채권으로, 수행기관 대상 대출과 최종 이용자 대상 직접대출을 포함

- 직접대출채권의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있음
 - 이사회 주요 안전에 2023년 및 2024년에 미소금융 직접대출채권 상각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미소금융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각각 부실대출채권 상각안이 이사회에 상정됨
 - 따라서 직접대출채권의 상각은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출사업 운영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관리 절차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공급 확대와 연체율 상승에 따라 2025년 상각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규대출액은 2023년 958억원에서 2024년 983억원, 2025년 1,32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기말잔액 역시 같은 기간 931억원에서 2,337억원으로 확대됨
 - 연체율은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도 2023년 268억원, 2024년 391억원, 2025년 355억원 발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출 및 연체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23	2024	2025
신규대출액	958	983	1,326
신규대출건수	165,325	180,947	174,974
일반 회수액	25	176	350
기말잔액	931	1,722	2,337
연체율	11.7	32.2	37.8
대손상각비	268	391	355

주: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3월부터 취급
 2. 기말잔액은 기초잔액 + 신규대출 - 원금회수 - 상각 ± 기타 변동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직접대출채권의 상각·제각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상각 후 회수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재원손실을 관리하여야 함
 - 채권 상각·제각은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회계상 대출채권에서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절차이므로 상각액의 증가는 향후 직접대출사업에서 회수되지 못한 재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직접대출상품 제출자료에서 상각액까지는 확인되나, 이미 상각한 직접대출채권에서 이후 얼마가 회수되었는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25년 직접대출상품 관련 제출자료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규대출액, 회수액, 기말잔액, 연체율,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처분손실 및 상각액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그러나 상품별·상각연도별 상각 후 회수액, 상각 후 회수율 및 상각 후 채권 관리 실적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회수액 350억원은 상각채권 회수액이 포함되는지와 그 규모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상각 이후의 회수성과를 식별하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상각·제각 이후의 회수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상채권의 상각·제각 후 누적 회수액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2년 75억원, 2023년 136억원, 2024년 234억원, 2025년 392억원으로 증가함
 - 제각 후 회수율도 2021년 0.1%에서 2025년 0.6%로 상승하였음
 - 이는 상각 이후에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별도의 성과지표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줌

[보증 구상채권의 상각·제각 후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상각·제각 후 누적 회수액	29	75	136	234	392
제각 후 회수율	0.1	0.3	0.4	0.5	0.6

주: 1. 상각·제각 후 대위변제채권 누적 회수액 기준이며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5는 제외

2. 제각 후 회수율은 상각·제각 후 대위변제채권 누적 회수액을 전체 대위변제채권 누적 대위변제금액으로 나누어 산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보증 구상채권과 달리 직접대출채권은 ‘상각 → 상각 후 회수 → 최종 미회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발생함

- 예를 들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년 338억원이 상각되었지만, 해당 상각채권 중 이후 회수된 금액, 회수 대상 채권의 잔액, 채무조정이나 추심을 통해 회수된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음
- 상각액만 관리하면 당해연도 회계상 제거된 채권 규모는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이후 회수 노력의 성과와 최종적으로 자체 재원에서 손실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기 어렵게 됨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 구상채권에 적용하고 있는 상각 후 회수 관리의 관점을 직접대출채권에도 확대하여, 상각부터 최종 회수까지의 채권관리 이력을 상품별로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직접대출상품별로 당해연도 상각액과 건수뿐 아니라 상각채권의 발생연도, 대출 실행일부터 상각까지의 기간, 상각 전 채무조정·추심 이력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함
- 결국 직접대출은 상각액 자체보다 상각 이후 얼마를 추가로 회수하여 자체 재원으로 다시 환류시켰는지까지 확인해야 최종적인 손실 규모를 평가할 수 있음

6-4.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위험 관리 필요

가. 현 황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원권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된 계정임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는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외에도 협약 등에 따라 자기앞수표 발행대금과 실기주과실 등이 출연되고 있음
 - 휴면예금 등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받은 휴면예금 등을 예수부채로 계상하고, ‘휴면예금 찾아줌’ 등 온·오프라인 조회·지급 서비스를 통해 원권리자에게 반환하고 있음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재원은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휴면예금 등과 해당 자금의 운용수익으로 구성됨
 - 계정의 자금은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 등의 지급,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및 계정 운영 등에 사용되며, 운용수익의 일부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되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됨
 - 2025년 9월 19일부터는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뿐 아니라 서민금융보완계정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됨
 - 서민금융보완계정은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는 매년 약 4,400억~6,600억원이 출연되었음

- 2025년 출연액은 5,4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3억원(17.4%) 감소함
 - 2025년 출연액 감소는 휴면보험금 출연액이 2024년 3,024억원에서 2025년 1,890억원으로 1,134억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 같은 기간 원권리자 지급액은 매년 약 2,600억~3,7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25년 원권리자 지급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14억원(23.7%) 증가하였으며, 지급건수는 65만 8,000건임

[휴면예금 등 출연 및 원권리자 지급 현황]

(단위: 억원, 만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출연액 합계	4,415	4,399	4,529	6,555	5,412	△1,143	△17.4
· 휴면예금	364	445	504	372	494	122	32.8
· 자기앞수표	3,159	2,885	2,779	3,143	3,010	△133	△4.2
· 실기주과실	10	15	16	16	18	2	12.5
· 휴면보험금	882	1,054	1,230	3,024	1,890	△1,134	△37.5
원권리자 지급액	2,574	3,179	2,952	3,018	3,732	714	23.7
원권리자 지급건수	171	102.8	90.7	70.8	65.8	△5.0	△7.1

주: 출연액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연도별 재원조성액임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서민금융진흥원은 2018. 8. 6. 「자금운용세칙」에 직접운용·위탁운용 관련 장을 신설하여 외부 운용기관 선정, 목표수익률·위험한도 설정, 반기별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함

- 금융투자상품·외부위탁 운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운용 세칙」 제11조에 따르면, 현금성자금은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에 예치하고, 그 외 여유자금은 금리 입찰을 통해 운용하고 있음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운용세칙]

제11조(금융상품별 자금운용) ① 직접운용의 경우, 현금성자금은 주거대출은행 등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에 예치하고, 그 외 여유자금은 금융기관별 금리입찰을 통해 운용한다.<개정 2018. 8. 6>

② 규정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8. 8. 6>

1. 신용상태 우수(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채권의 매입<신설 2018.8.6, 2020.11.23.>
2.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트러스트(MMT), 머니마켓렐(MMW),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연동예금(EL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시장형 상품중에서 원금보존추구형 단기운용상품의 매입 또는 예치<신설 2018. 8. 6>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산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함에 따라 현금·예치금과 금융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25년 말 계정의 자산은 2조 9,512억원으로 전년 말 2조 7,988억원 대비 1,524억원(5.4%) 증가함
 - 2025년 말 금융자산은 2조 7,677억원이며, 이 중 원리금유지형 금융자산¹⁾이 1조 9,350억원, 실적형 금융자산²⁾이 8,327억원임
 - 현금·예치금 840억원을 포함하면 현금·예치금과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의 96.6%를 차지함
 - 2025년 말 예수부채는 2조 7,613억원으로, 휴면예금예수부채 1조 7,310억원과 휴면보험금예수부채 1조 302억원으로 구성됨
 - 예수부채는 2025년 중 5,412억원이 새로 출연되고 원권리자에게 3,732억원이 지급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1,679억원 증가함
 - 2025년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영업수익은 914억원, 영업비용은 10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13억원임
 -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766억원과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이익 147억원으로 구성됨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의미함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의미함

- 영업비용은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손실 65억원, 기타영업비용 31억원 등으로 구성됨
- 2025년 중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 자활지원 I 계정으로 전출된 금액은 958억원임
- 서민금융진흥원 내에서 한 계정이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경우 계정 간 전출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함.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자본은 2024년 말 2,024억원에서 2025년 말 1,879억원으로 145억원 감소함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21,578	24,010	27,988	29,512	1,524	5.4
· 현금·예치금	873	988	1,130	840	△290	△25.7
· 금융자산	20,126	22,295	25,921	27,677	1,756	6.8
예수부채	20,819	22,396	25,933	27,613	1,679	6.5
자본	747	1,597	2,024	1,879	△145	△7.2
영업수익	434	1,068	1,046	914	△132	△12.6
영업비용	429	68	48	101	53	110.4
당기순이익	5	1,001	998	813	△185	△18.5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실적형 금융자산 월평균 운용잔액은 2024년 3,503억원에서 2025년 5,513억원으로 2,010억원 증가함
- 반면, 동 금융자산 관련 이익은 2024년 290억원에서 2025년 147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관련 손실 65억원이 발생함
 -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손익은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관련 손실 400억원이 발생하였고, 2025년에도 관련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동시에 관련 손실 65억원이 발생함
 - 즉,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성과는 시장금리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면예금등관리계정 손익 및 금융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이익(a)	16	131	450	290	147	△142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손실(b)	7	400	37	-	65	65
실적형 금융자산 관련 순이익(a-b)	9	△269	413	290	82	△208
당기순이익	65	5	1,001	998	813	△185
금융자산 월평균 운용잔액	-	-	-	3,503	5,513	2,010

주: 금융자산 월평균 운용잔액은 후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 운용한 실적형 금융자산에 해당

자료: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결산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실적형 금융자산 기말잔액은 2024년 3,701억원에서 2025년 8,327억원으로 4,626억원 증가함
 - 실적형 금융자산 기말잔액은 2021년 2,490억원에서 2023년 7,635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 3,701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8,327억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함. 특히 2025년 기말잔액은 전년 대비 4,626억원(125.0%) 증가함

[실적형 금융자산 기말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실적형 금융자산	2,490	6,398	7,635	3,701	8,327	4,626	125.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나. 주요 쟁점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실적형 금융자산이 2025년 말 전년 대비 125.0% 증가한 반면 관련 순이익은 208억원 감소하였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운용자산 확대에 상응하는 시장위험 및 손실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권리자 지급 예상액과 계정 간 전출 규모를 반영하여 적정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유형별 운용한도·손실한도 및 성과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운용자산의 위험·수익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금, 정부출연금 및 민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자활지원 I 계정의 자체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활지원 I 계정의 재원조성 현황을 보면,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은 2024년 6,424억원에서 2025년 3,806억원으로 2,618억원 감소한 반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액은 같은 기간 571억원에서 958억원으로 387억원 증가함
 - 이에 따라 자활지원 I 계정 전체 재원조성액에서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8.2%에서 2025년 20.0%로 상승함

[자활지원 I 계정 재원조성 현황(2021~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B-A)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전입액(A)	-	131	150	571	958	387
위수탁사업	-	-	-	-	32	32
정부출연금	-	476	7,278	5,334	3,470	△1,864
기부금 등	11	16	1,441	1,090	336	△754
합계(B)	11	623	8,870	6,996	4,796	△2,200
전입액 비중(A/B)	-	21.0	1.7	8.2	20.0	11.8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2024년 약 4,000억원 대비 증액된 2025년의 위탁운용 규모는 총 8,000억원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위탁운용 규모 증액 사유에 대해 기준금리 하락 및 추가 인하 가능성,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것을 중장기 자금 내 분산투자와 실적배당형상품 비중 확대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위탁운용 규모 및 수익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미래에셋자산운용	NH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계약기간	'24.12.~'26.12.	'24.12.~'26.12.	'25.8.~'27.8.	'25.8.~'27.8.
운용규모	2,140	1,860	2,000	2,000
2024년 수익률	4.82	4.39	-	-
2025년 수익률	2.51	1.8	△0.26	△0.2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그러나 2025년 8월부터 신규 운용을 개시한 위탁운용 2건(4,000억원)의 수익률이 각각 △0.26%, △0.25%로 나타남
 - 해당 운용계약은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단기간 수익률만으로 운용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기간 전체의 기준수익률 대비 성과, 시장금리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여유자금 운용성과가 자활지원 I 계정 전입 가능액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운용성과와 전입정책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평가손익 변동성이 커질 경우, 향후 자활지원 I 계정으로 전입 가능한 재원의 규모도 불안정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자활지원 I 계정의 휴면계정 전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원권리자 지급에 필요한 유동성을 우선 확보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과 손실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와 계정 간 전출계획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6-5. 근로자햇살론의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대상 적정성 점검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의 금융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햇살론 등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근로자햇살론은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 부분을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과 신용도를 결합하여 지원대상을 정하는 구조임
 - 다만 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자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아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요건으로 함

[근로자햇살론 공급실적 및 잔액]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
공급액	34,597	38,285	34,342	28,087	34,577	43,575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편,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의 전체 공급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신용평점별 공급구조는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햇살론의 연간 공급액은 2021년 3조 4,597억원에서 2025년 3조 4,577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유사한 수준
 - 그러나 KCB 신용평점 701점 이상 구간의 공급액은 2021년 7,060억원에서 2025년 1조 7,641억원으로 1조 581억원 증가함
 - 전체 근로자햇살론 공급액에서 701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약 20.4%에서 51.0%로 30.6%p 상승함
 - 반면 401~600점 구간의 공급액은 2021년 1조 2,247억원에서 2025년 2,922억원으로 9,325억원 감소하였고,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5.4%에서 8.5%로 감소함

[근로자햇살론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

(단위: 억원, %)

신용구간	2021 공급액	비중	2022 공급액	비중	2023 공급액	비중	2024 공급액	비중	2025 공급액	비중
701~1,000	7,060	20.4	8,258	21.6	9,540	27.8	12,689	45.2	17,641	51.0
601~700	15,254	44.1	17,503	45.7	16,984	49.5	12,540	44.6	14,014	40.5
401~600	12,247	35.4	12,482	32.6	7,804	22.7	2,857	10.2	2,922	8.5
400 이하	34	0.1	43	0.1	14	0.0	1	0.0	0	0.0
합계	34,597	100.0	38,285	100.0	34,342	100.0	28,087	100.0	34,577	100.0

주: 비중은 각 연도 근로자햇살론 전체 공급액 대비 해당 신용구간 공급액의 비율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의 전체 공급규모가 확대된 것이 아님에도 공급 금액 기준 신용구간별 구성이 최근 5년 사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평점 구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401~600점 구간 공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701점 이상 구간 공급이 유사한 규모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체 공급 확대보다는 근로자 햇살론 공급금액 기준 신용구간별 구성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점이 높은 차주에 대한 공급 증가 자체를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KCB 800점 이상이라도 소득이 매우 낮거나 재직기간이 짧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라면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반면, 일반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한 차주에게까지 보증이 제공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차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보증재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701~1,000점 구간은 2.1~7.6%, 601~700점은 12.2%인 반면, 401~600점은 18.3~21.7%, 400점 이하는 7.6~28.2%로 나타나 신용평점이 낮은 구간일수록 대체로 보증손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위 신용구간에 대한 공급 확대는 대위변제율을 낮추어 보증계정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목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부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에게 금융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대위변제율 하락을 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의 공급비중을 확대한다면 재무건전성과 정책목적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근로자햇살론의 성과를 총 공급액 및 전체 대위변제율만으로 평가할 경우 신용구간별 공급대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근로자햇살론의 건전성이 개선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공급함으로써 건전성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함
- 근로자햇살론 전체 대위변제율은 2023년 12.1%, 2024년 12.7%, 2025년 12.4%로 큰 폭의 변동 없이 관리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상품 내부에서는 2025년 대위변제율이 701~1,000점 2.1~7.6%에서 400점 이하 7.6~28.2%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대위변제율에는 신용구간별 위험수준뿐 아니라 어느 신용구간에 얼마를 공급했는지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효과도 반영됨

[근로자햇살론 신용구간별 대위변제율 현황(2021~2025회계연도)]

(단위: %)

신용구간	2021	2022	2023	2024	2025
701~1,000	1.1~7.1	1.2~6.9	1.7~7.4	2.5~7.4	2.1~7.6
601~700	9.5	9.2	10.9	12.0	12.2
401~600	13.7~18.7	13.7~19.0	16.8~21.4	18.4~22.2	18.3~21.7
400 이하	7.4~32.0	7.3~27.6	7.6~28.5	7.6~30.2	7.6~28.2
전체	10.6	10.4	12.1	12.7	12.4

주: 1. 신용구간별 수치는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100점 단위 세부 신용평점 구간의 대위변제율 중 최저값과 최고값을 표시한 것임

2. 대위변제율은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으로 산정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의 신용구간별 공급구조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접근성이 낮은 정책지원 대상에게 보증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햇살론 공급실적을 단순히 신용평점별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용평점과 소득수준을 교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¹⁾

1) 예를 들어 신용구간은 600점 이하, 601~700점, 701~800점, 801~900점, 901~1,000점으로 하고,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2천 초과~3천만원, 3천 초과~3,500만원, 3,500 초과~4,500만원으로 나누어 매년 관리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상위 신용구간 공급 증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도가 모두 높은 차주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전체 대위변제율을 평가할 때에는 전년 대비 변동분을 ① 동일 신용구간 내 대위변제율 변화와 ② 신용구간별 공급비중 변화에 따른 효과로 구분함으로써, 건전성 개선이 차주의 상환성과 개선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증 포트폴리오의 신용구성 변화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6-6. 미수보증료 증가에 따른 연도별·상품별 발생 및 회수실적 등 관리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증료를 수취하고 있음
 - 보증료의 수취방식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햇살론 등 선취·분납방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차주에게 보증료 납부 안내를 하고 차주별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수취함
 -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후취 방식의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함께 수취한 뒤 보증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송금하는 구조
- 최근 주요 보증상품에서 미수보증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음
 - 근로자햇살론의 미수보증료 기말잔액은 2021년 8억원에서 2025년 6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대한 대손충당률도 2021년 82.2%에서 2025년 기준 85.2%까지 상승함
 - 햇살론뱅크 역시 미수보증료가 2023년 15억원에서 2024년 36억원, 2025년 4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대손충당률도 73.2%에서 80.1%로 상승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미수보증료도 2022년 1,500만원에서 2025년 6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충당률은 78.8%임
 - 특히 햇살론15의 경우 2024년 말 2억원이었던 미수보증료가 2025년 말 9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충당률은 75.2%로 나타남

[주요 상품별 미수보증료 기말잔액 및 대손충당률]

(단위: 억원, %)

상품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근로자햇살론	기말잔액	8	23	45	52	62
	대손충당률	82.2	82.8	82.1	84.7	85.2
햇살론뱅크	기말잔액	-	-	15	36	46
	대손충당률	-	-	73.2	76.6	80.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기말잔액	-	0	22	50	69
	대손충당률	-	72.6	72.9	76.2	78.8
햇살론15	기말잔액	-	-	-	2	97
	대손충당률	-	-	-	84.7	75.2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미수보증료 증가에는 햇살론15의 보증주체 변경과 상품의 부실발생 주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입장임

- 2024년 하반기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햇살론15의 보증주체가 변경되었고, 대출 취급 후 약 1년 전후부터 연체 및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상품 특성에 따라 2025년 미수보증료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 2025년 말 햇살론15 미수보증료는 약 97억원으로 전체 미수보증료의 35.4%를 차지함

나. 주요 쟁점

□ 미수보증료는 단순한 금융회사와의 정산시기 차이가 아니라 차주의 연체·보증사고와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영업미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미수보증료는 대출 연체기간과 관련성이 크며, 대위변제 이후에는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미수보증료가 확정되어 대위변제금 등과 함께 구상채권으로 관리·회수되고 있음

□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미수보증료의 당기 신규발생액과 당기 회수액을 별도로 관리·제시하지 않고 있어 연도별 회수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수보증료를 차주별 누적 발생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 신규발생액과 당기 회수액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이에 따라 현재 자료만으로는 미수보증료 기말잔액이 증가한 것이 신규 연체 발생 증가 때문인지, 기존 미수보증료의 회수 저조 때문인지 또는 특정 신규상품의 편입 때문인지를 정량적으로 분해하기 어려움

□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수보증료를 단순 기말잔액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 당기 발생·회수·대손처리 실적을 구분하고 이를 상품별 기말잔액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미수보증료 증가를 ① 신규 부실발생, ② 기존 미수보증료 회수실적, ③ 신규상품 편입, ④ 구상채권 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2025년 미수보증료 증가의 상당 부분이 햇살론15 보증주체 변경에서 발생한 만큼, 일회성 구조변화 효과와 기존 상품의 회수성과 악화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6-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높은 신용손실을 고려한 금융개선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운영하였음¹⁾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운영되는 신용보증상품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햇살론15 등과 함께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되고 있음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공급규모는 제도 도입 이후 확대되었음
 - 공급실적은 2022년 1,002억원, 3만 4,208건에서 2025년 2,962억원, 8만 2,170건으로 증가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공급금액	1,002	2,924	1,935	2,962
공급건수	34,208	112,009	70,636	82,170

주: 2022년 9월 제도를 도입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한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제도 도입(2022.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800만원에서 2023년 571억원, 2024년 998억원까지 증가한 후 2025년에는 972억원으로 소폭 감소함
 - 대위변제건수도 2022년 3건에서 2023년 2만 1,904건, 2024년 4만 302건, 2025년 4만 600건으로 증가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운영은 종료(~'25.12월)되었고, 2026년부터는 햇살론15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었음

- 대위변제율은 2022년 0.01%, 2023년 14.5%, 2024년 26.8%, 2025년 28.8%로 상승함. 다만 2022년은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단순한 연도 간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22	2023	2024	2025
당해연도 순대위변제액	0.08	571	998	972
대위변제건수	3	21,904	40,302	40,600
대위변제율	0.01	14.5	26.8	28.8

주: 순대위변제액은 대위변제발생액에서 대위변제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대위변제율은 누적 순대위변제액을 누적 보증공급액으로 나누어 산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2025년 말 기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정상상환율은 58.0%로 다른 주요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25년 말 기준 정상상환율은 근로자햇살론 79.0%, 햇살론유스 79.3%, 햇살론뱅크 78.0%, 햇살론15 81.7%인 반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8.0%임

[주요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 정상상환율(2025년 말)]

(단위: %)

구분	정상상환율	완제율
근로자햇살론	79.0	54.0
햇살론유스	79.3	32.7
햇살론뱅크	78.0	42.8
햇살론15	81.7	23.9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58.0	51.1

주: 정상상환율은 $[1 - (\text{연체건수} / \text{전체공급건수})] \times 100$, 완제율은 $\text{해지건수}(\text{대위변제완제 포함}) / \text{전체공급건수}$ 임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나. 주요 쟁점

-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성과지표를 공급실적과 대위변제율 중심에서 지원 이후 신용개선 및 제도권 금융이동 성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를 일정 기간 추적하여 이용 직전과 이용 후 6개월·1년의 신용평점, 연체 여부, 보유대출 금리,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비교할 필요
 - 이를 통해 높은 대위변제율이 단순한 재원손실로 끝나는지, 아니면 일정한 손실을 감수한 결과 일부 차주가 신용을 회복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 가능함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공급실적과 정상상환율·대위변제율은 확인되나, 지원 이후 신용도 개선이나 제도권 금융 전환 등 실질적인 금융개선 성과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정상상환율 및 완제율을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율·재연체율, 제도권 금융 전환율, 정책서민금융 재이용률은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가 지원 이후 신용평점을 개선하여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이동했는지, 장기간 정책서민금융에 의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특히 2025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이 28.8%, 정상상환율이 58.0%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공급액·공급건수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 이후의 금융상태 개선 여부를 정책성과로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큼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용자 중 신용이 개선되고 성실하게 상환한 자에게 일반보증으로의 대환 기회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스스로도 단순한 특례보증 공급을 넘어 성실상환자와 신용개선자의 상위 금융상품 이동이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단순히 고위험 차주에게 반복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최저신용자를 점진적으로 보다 낮은 위험·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 신용 편중 리스크에 취약한 기본 사업구조에 대한 재무적 보완 필요

가.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본래 시중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중장기·대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설립되었음¹⁾
- 사업구조상 한국수출입은행은 타 정책금융기관 대비 소수의 차주나 특정 거대 프로젝트에 직접대출 등 여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여신(exposure)의 13.3%가 상위 5개 차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여신 합은 은행 자기자본합계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수출입은행의 상위 5개 차주 여신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대출(용자)	보증	계	전체 여신 대비 비중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 ¹⁾
한화오션	1,885	6,915	8,800	5.7	37.3
삼성중공업	1,047	3,010	4,057	2.6	17.2
HD현대중공업	-	3,650	3,650	2.3	15.5
HD현대삼호	-	2,207	2,207	1.4	9.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7	1,796	1,923	1.2	8.2
(상위 5개 합계)	3,059	17,578	20,637	13.3	87.5
(전체)	91,845	63,590	155,435	100.0	-

주: 1) 한국수출입은행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합계 23조 5,796억원에 대한 비중임

1. 2024년 말 기준(단, 2025년 말은 별도로 공개된 자료가 없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 1)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과 관련하여 일반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에 설립됨(단, 그 중 수출보험 업무는 1992년 신설 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관)

- 한편, 국가별로도 전체 여신의 17.2%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상위 5개 국가별 여신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대출(용자)	보증	계	(비중)
폴란드	3,432	4,800	8,232	5.4
아랍에미리트	4,598	1,027	5,625	3.7
인도	3,785	624	4,409	2.9
사우디아라비아	3,073	1,212	4,285	2.8
인도네시아	2,489	1,437	3,926	2.6
(상위 5개국 합계)	17,377	9,100	26,477	17.2
(전체)	91,662	62,276	153,938	100.0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 편중 현상은 조선, 방산, 해외건설 등 장기간 해외수출·투자자금이 필요한 분야에 대규모로 금융지원을 시행했기 때문임
 - 조선 분야는 대규모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과 구조조정 국면의 건조자금 대출에 집중되었으며,
 - 방산 분야는 2022년 이후 폴란드 등 대형 수주에 대응한 외국 구매자 신용(대출·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이 핵심을 이루고,
 - 해외건설 분야는 중동 등지의 대규모 플랜트·원전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대출과 이행보증 지원에 집중되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 대비 신용집중 규제의 완화·예외를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으나,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특정 차주의 부실이 은행

전체의 건전성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타 은행 대비 동일 차주 여신한도가 2배까지 완화 적용되며, 거액 차주에 대한 바젤III 한도규제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규제 집중 완화·예외조치 현황]

구분	일반 시중은행 (은행법 제35조)	한국수출입은행 (수은법시행령 제17조의5)	비교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20% 이내	자기자본의 40% 이내	2배 완화
동일계열군 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의 25% 이내	자기자본의 50% 이내	2배 완화
바젤III 기준 거액 차주 규제	기본자본(tier 1)의 25% 이내	적용 제외	예외

-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 편중은 부실 발생 시 대규모 충당금 적립과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유발하여, 자본건전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가계대출 등 일반 여신영업을 하지 않아 위험을 완충할 자산이 부재하므로, 소수의 대형 프로젝트 부실이 곧바로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타 시중은행 대비 높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였으나, 실제 운용상 정부의 실질적인 현금 납입이 수반되지 않아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2024년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개정하였음²⁾
- 그러나 법정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이루어진 정부 출자규모는 총 2.4조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법정 한도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2) 이는 폴란드 방산수출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40%) 규제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자기자본 확충방안이기도 함. 참고로 법 개정 전인 2023년 말 기준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14.8조원, 자기자본은 20.0조원 규모였음

- 특히, 2024년 출자액 2.1조원 중 2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 등을 통한 현물출자로 이루어짐
- 현물출자는 실제 현금 유입이 수반되지 않아 즉각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자본의 실질적인 질적 건전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증자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정부 출자액(유상증자)			납입자본금 (연말 기준)	법정자본금 상한선	자기자본 (연말 기준)
	현금	현물	계			
2021	-	-	-	125,233	150,000	169,727
2022	2,500	-	-	127,733	150,000	175,021
2023	20,000	-	20,000	147,733	150,000	200,102
2024	1,000	20,000 ¹⁾	21,000	168,733	250,000	235,796
2025	3,000	-	3,000	171,733	250,000	283,118
2026(예산)	100	-	100	171,833	250,000	-

주: 1) 특별계정에 대한 경유출자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직접출자분을 포함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금융지원과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 법정자본금 상향 및 비유동성 현물출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수출입은행 자체적으로 특정 차주 및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신용위험이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출채권 유동화 및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위험 분담³⁾⁴⁾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연계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여신 분담, 외국 수출신용기관(ECA)과의 위험분담 약정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함

4)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는 별도의 전락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전락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2216289), 안도걸의원 대표발의(2217336))

2-1. 외부위탁 운용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운용성과 검증 필요

가. 현 황

-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 주식·채권 및 대체자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임
 - 2025년 말 공사가 운용하는 위탁자산은 총 2,320억달러로, 전통자산 1,812억 달러와 대체자산 508억 달러로 구성됨
 - 전체 운용자산은 2024년 말 2,065억달러에서 2025년 말 2,320억달러로 255억달러(12.3%) 증가함
 - 2025년 총수익률은 13.9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으며, 전통자산 수익률은 15.10%로 운용기준을 0.24%p 상회함

[연도별 운용자산 및 총수익률]

(단위: 억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운용자산	2,050	1,693	1,894	2,065	2,320
연간 총수익률	9.13	△14.36	11.59	8.49	13.91

주: 운용자산은 각 연도 말 총자산가치이며, 운용자산의 증감에는 투자손익과 위탁원금의 변동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말 운용자산 중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이 78.1%, 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헤지펀드 등 대체자산이 21.9%를 차지하며, 전통자산에서 15.10%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운용기준을 0.24%p 상회하였고, 대체자산은 9.81%의 수익률이 발생하여 기준을 1.77%p 하회하였음

- 공사는 2025년 전통자산 및 대체자산의 수익률과 운용기준 대비 초과수익률은 제시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별 운용기준이 상이하여 전체 기준수익률 및 초과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위탁자별 운용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별 기준수익률 및 초과수익률을 각각 산출·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체 기준수익률 및 초과수익률 산출의 한계를 이유로 위탁자별 성과정보까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5년 자산유형별 운용성과]

(단위: 억달러, %, %p)

구분	운용자산	비중	2025년 수익률	기준수익률	초과수익률	최근 10년 연환산수익률
전통자산	1,812	78.1	15.1	14.86	0.24	6.83
대체자산	508	21.9	9.81	11.58	△1.77	8.48
합계	2,320	100	13.91	자료 없음		7.07

주: 초과수익률은 공사가 제시한 운용기준 대비 성과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한국투자공사의 2025년 수수료수익은 3,8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억원(11.2%) 증가한 반면, 수수료비용은 2024년 1,205억원에서 2025년 1,447억원으로 243억원(20.1%) 증가하여 수수료수익 증가율을 상회함
 - 2025년 수수료수익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취한 기본수수료 3,477억원과 성과수수료 398억원으로 구성됨
 - 2025년 수수료비용 중 외부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일임수수료는 1,423억원으로 전체 수수료비용의 98.4%를 차지함
 - 수수료수익 대비 수수료비용 비율도 2024년 34.6%에서 2025년 37.4%로 2.8%p 상승함

[수수료수익·비용 및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수수료수익(a)	4,037	2,707	3,235	3,485	3,875	389	11.2
기본수수료	자료 없음				3,477	자료 없음	
성과수수료					398		
수수료비용(b)	1,532	1,220	1,024	1,205	1,447	243	20.1
외부자산운용사 일임수수료	1,520	1,199	1,006	1,185	1,423	239	20.2
기타 지급수수료	12	21	18	20	24	4	18.9
수수료수익 대비 수수료비용(b/a)	37.9	45.1	31.7	34.6	37.4	2.8	8.2
일반관리비	771	692	1,086	998	1,179	181	18.2
영업이익	2,113	1,098	1,253	1,643	1,363	△280	△17.0
당기순이익	1,680	801	944	1,265	1,044	△221	△17.5

주: 1. 기타 지급수수료는 미들오피스·담보관리 및 사모펀드 회계·보고 관련 수수료임

2. 증감액은 원 단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결산보고서 및 결산부속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낮음에도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공사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토대로 성과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함
- 그러나 2025년 외부자산운용사 일임수수료가 1,423억원까지 증가한 반면, 운용사별 기준수익률·초과수익률 및 수수료 차감 후 성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나. 주요 쟁점

- 외부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운용자산 및 수수료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운용성과가 창출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함
 - 2025년 말 운용자산은 전년 대비 12.3%¹⁾, 수수료수익은 11.2% 증가하였으나 수수료비용은 20.1% 증가함
 - 따라서 평균 외부위탁 운용금액, 자산유형별 수수료율 및 성과보수 발생액 등을 고려한 수수료비용을 제시할 필요

- 공사의 13.91% 총수익률이 외부운용사의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총수익률에는 시장가격 상승, 환율 변동, 전략적 자산배분 및 내부운용과 외부위탁운용의 성과가 모두 포함됨
 - 또한 전통자산 전체의 초과수익률만으로는 내부운용과 외부위탁운용이 각각 얼마의 초과성과를 창출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움
 - 공사는 0.24%p의 초과수익도 대규모 운용자산에 적용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외부위탁 운용금액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에서 일임수수료와 성과보수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초과수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주식·채권·대체자산을 합한 외부위탁 운용금액²⁾은 2021년 630.3억 달러에서 2025년 773.0억 달러로 142.7억 달러(22.6%) 증가함
 - 대체자산은 전체 대체자산의 70%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어 주식 26%, 채권 22%보다 외부운용사 의존도가 훨씬 높음

1) 다만 운용자산 증가율은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수수료비용은 연간 평균 운용금액, 자산유형 및 성과보수 지급 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두 증가율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2025년 말 현재 외부위탁 비율은 약 33.3%, 자체운용 비율은 약 66.7%임

- 주식은 2021~2023년에는 매년 기준수익률에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총수익률 22.75%를 기록해 기준수익률 22.08%를 0.67%p 상회함
 - 그러나 2025년에도 주식 외부운용사 22개 중 11개가 개별 기준수익률에 미달했음
 - 그럼에도 주식 전체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상회한 것은 위탁금액이 큰 일부 운용사의 초과성도가 다른 운용사의 부진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음
- 대체자산의 70%를 174개 외부운용사에 위탁하고 2025년 6.2억달러의 일임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외부위탁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및 수수료 차감 후 초과수익률을 제출하지 않아 외부위탁의 비용 대비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움
 -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그 비용을 차감한 뒤 기준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2025년 기준수익률 미달 운용사는 주식 11개, 채권 2개, 대체자산 16개임
 - 대체자산은 기준수익률 미달 운용사가 16개인데 감액은 없고 계약해지는 1개에 불과함
 - 대체투자는 약정기간이 길고 중도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연도 성과 부진이 곧바로 감액이나 해지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미달 운용사의 부진 지속기간, 미달 폭, 투자회수 단계 및 사후 관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함

[외부위탁 운용성과 및 수수료 현황]

(단위: 억달러, 개, %, %p)

구분	자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외부위탁 운용금액	주식	264.7	152.9	185.2	218.1	249.7
	채권	122.9	92.1	113.5	126.1	168.6
	대체자산	242.7	267	286.2	314.7	354.7
해당 자산군 운용자산 대비 외부위탁 비중	주식	32	24	25	27	26
	채권	17	17	19	19	22
	대체자산	68	69	69	70	70

(단위: 억달러, 개, %, %p)

구분	자산	2021	2022	2023	2024	2025
외부운용사 수	주식	23	23	22	24	22
	채권	8	10	14	15	14
	대체자산	128	130	151	162	174
외부위탁 운용 총수익률	주식	14.78	△20.75	21.28	18.6	22.75
	채권	△4.16	△15.49	7.31	△0.73	8.55
	대체자산	자료 미제출				
외부위탁 운용 기준수익률	주식	17.18	△18.05	21.74	18.76	22.08
	채권	△5.02	△16.78	6.21	△0.15	6.91
	대체자산	자료 미제출				
수수료 차감 전 초과수익률	주식	△2.40	△2.70	△0.46	△0.16	0.67
	채권	0.86	1.29	1.1	△0.58	1.64
	대체자산	자료 미제출				
외부자산운용사 일임수수료	주식	자료 없음				
	채권	자료 없음				
	대체자산	13.3	11	8.5	5.8	6.2
수수료 차감 후 초과수익률	주식	자료 없음				
	채권	자료 없음				
	대체자산	자료 없음				
기준수익률 미달 운용사 수	주식	9	13	12	15	11
	채권	1	6	1	7	2
	대체자산	13	13	11	21	16
위탁금액 감액 운용사 수	주식	7	10	2	2	6
	채권	0	6	6	2	3
	대체자산	1	0	2	0	0
계약해지 운용사 수	주식	3	2	2	2	2
	채권	0	0	0	1	3
	대체자산	3	2	3	3	1

주: 1. 한국투자공사는 대체자산은 자산별 직/간접으로 나누어 운용기준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임

2. '자료 미제출'은 한국투자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 '자료 없음'은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자료임

자료: 한국투자공사

- 주식은 수익률이 22.24%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가장 크게 나타남. 기말 비중을 단순 적용하면 주식의 전체 수익률 기여도는 약 9.25%p³⁾로, 전체 수익률 13.91%의 약 3분의 2에 해당함
 - 따라서 2025년의 높은 운용성과는 전 자산군의 고른 성과보다는 주식시장 호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단기적으로는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전체 성과를 이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자산이 수익원 다변화와 수익률 제고에 기여함
 - 2025년에는 전통자산 수익률이 15.10%로 대체자산 9.81%보다 5.29%p 높았음. 그러나 최근 10년 연환산수익률은 반대로 대체자산이 8.48%로 전통자산 6.83%보다 1.65%p 높음
- 대체자산의 70%인 354.7억 달러가 외부에 위탁되어 있으나, 대체자산 전체의 수익률만 제시할 뿐 직접운용과 외부위탁의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움
 - 따라서 대체자산 전체가 2025년 9.81%, 최근 10년 연환산 8.4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위탁 운용의 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외부위탁 수익률과 직접운용 수익률, 기준수익률 및 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을 각각 비교하여야 함

3) 기말 비중을 적용한 단순 참고치로 실제 기여도와 다를 수 있음

[2025년 자산군별 운용현황 및 수익률]

(단위: 억달러, %)

구분	순자산가치	비중	2025년 수익률	최근 10년 연환산수익률
주식	965	41.6	22.24	12.01
채권	760	32.8	7.46	1.48
전통자산 소계	1,812	78.1	15.1	6.83
헤지펀드	60	2.6	8.16	5.47
사모주식	176	7.6	12.28	12.87
부동산	117	5	3.16	3.94
인프라	105	4.5	13.51	10.91
대체자산 소계	508	21.9	9.81	8.48
합계	2,320	100	13.91	7.07

주: 소계에는 현금, 자산배분 및 혼합형 사모채권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투자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대체자산의 외부위탁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 및 수수료 차감 후 초과 수익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체자산은 2025년 말 508억 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21.9%를 차지하므로 전체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특히 대체자산은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아 외부평가기관이나 운용사가 산정한 공정가치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투자공사는 외부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운용사·자산군별·위탁자별 기준수익률 대비 성과와 수수료 차감 후 순초과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준수익률 미달이 장기간 지속되는 외부운용사에 대해서는 위탁금액 감액이나 계약해지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고, 성과보수 계약에는 손실이 회복되기 전까지 추가 성과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약 7조원의 전략적투자 결정 이후 실제 납입 및 정책성과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투자공사는 국내기업이 첨단기술 확보와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공동투자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전략적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전략적투자는 국내기업이 해외 유망기업 인수·합병 또는 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공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공동 참여하는 방식임
 - 일반적인 위탁자산 운용이 위험과 수익을 고려한 국부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전략적투자는 투자수익과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성이 있음
-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된 약 7조원의 자금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공사는 국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개별 프로젝트 투자를 병행하여 전략적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공사는 2024년 3월 전략적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음
 - 2025년에는 전략적투자 전담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국내 대체자산 운용사 2곳을 전략적투자 운용사로 선정함
 - 직접투자 방식의 전략적투자는 2026년 3월 1건에 대한 투자결정을 완료함

[전략적투자 추진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2024	2025	2026.3.
조직·제도	전담조직 신설 및 투자 프로세스 마련	전담인력 확대	인력충원 진행 중
전담인력	3	5	5
전략적투자 국내 운용사 선정	-	2	-
직접투자 결정	-	-	1

자료: 한국투자공사

나. 주요 쟁점

- 전략적투자 전담조직과 운용체계의 구축이 실제 투자집행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
 - 공사는 2024년 전담조직과 투자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2025년에는 전담인력 확대와 국내 운용사 선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인력 확대와 운용사 선정은 전략적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그 자체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성과로 보기는 어려움
- 약 7조원의 자금 가운데 실제로 전략적투자에 배정된 금액과 집행 가능한 재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구)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내기업의 해외 M&A 등 해외진출 공동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위탁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자금은 주식·채권 등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전략적투자에 별도로 배정된 금액, 실제 투자 가능 금액과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운용 중인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전략적투자 자원 및 집행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2024	2025	2026(계획)
전략적투자 관련 위탁·배정액	전략적 투자 관련 위탁자금 총액 50억 달러		
실제 투자 가능 자원	-	-	-
신규 투자약정액	-	4	4.5
실제 납입액		0	
미집행액	-	4	-
미집행 자원의 일반 운용수익	공사 전체 운용수익률과 동일		

자료: 한국투자공사

- 전략적투자 집행실적은 운용사 선정 수, 투자검토 건수 등 절차적 지표보다 투자약정액·실제 납입액·지원 국내기업 수 등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운용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실제 투자대상이 발굴될 때마다 자금이 순차적으로 납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운용사를 선정하거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실적으로 보기 어려움

[전략적투자 단계별 추진실적]

(단위: 건, 개, 억달러)

구분	2024	2025	2026.3.
투자 제안·발굴 건수	36	44	10
예비검토 건수	36	44	10
투자심사 상정 건수	-	1	1
투자결정 건수	-	1	1
계약체결 건수	-	-	-
실제 납입 건수	-	-	-
검토 중단·부결 건수	-	-	-
지원 국내기업 수	-	-	-
투자결정 금액	-	4	1.5
실제 납입액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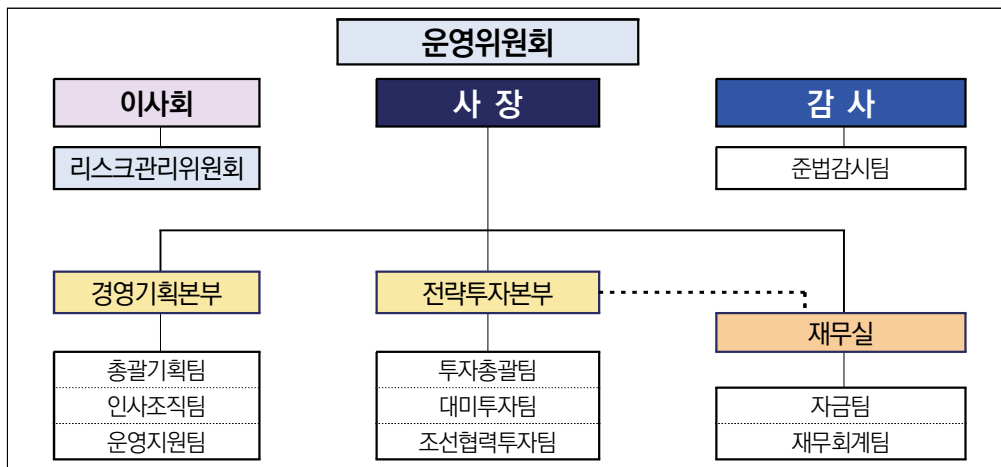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공사

- 따라서 공사는 전략적투자의 추진성과를 조직·절차 구축 중심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자금집행과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투자 재원의 위탁기관, 위탁일자, 위탁계약상 운용목적 및 별도계정 구분 여부, 전략적투자에 배정된 금액과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 2024·2025년 신규 약정액, 실제 납입액 및 미집행액 등을 관리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아울러 투자 건별로 재무적 수익률과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첨단 기술 확보, 공동투자 유발액 등 정책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투자집행 이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6년 6월 제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법”이라 함)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함) 설립을 규정함
- 전략적투자 총괄기획·심의·의결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¹⁾ 설치,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설립됨
 -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2조원이며,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26.6.18 ~ '46.6.17) 간 운영됨
 - ① 위탁자산의 관리와 운용, ②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이를 통한 전략적투자 지원, ③ 한미전략투자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④ 정부, 금융기관,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조직은 2본부 1실 9팀으로 구성되며, 정원 50명, 현원은 15명임

[한미전략투자공사 조직도]



자료: 한미전략투자공사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공사에 설치되며,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민간위원 + 공사사장 등 총 15인 이내)

- 한미전략투자법상 전략적투자는 대미투자자와 조선협력투자자로 나누어짐
 - 대미투자자는 ‘한미 전략적투자 MOU(2025.11월)2’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투자이며, U\$2,000억 규모임
 - 조선협력투자자는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투자이며, U\$1,500억 규모

[한미전략투자법상 전략적투자]

구분	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
내용	한미 전략적투자 MOU(2025.11월)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투자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투자
규모	U\$2,000억	U\$1,500억
산업 분야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조선

자료: 한미전략투자공사

- 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위탁 가능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대미투자자는 국내 후보사업 발굴 또는 미국 제안 사업 접수 →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국회 사전보고 또는 상임위원회 사전동의 → 한미 협의 → 미국의 투자대상 선정 → 국내 최종 투자결정 및 자금납입 순으로 진행됨
 - 사업관리위원회는 국내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을 발굴·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3-1.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 우리나라와 미국은 2025년 11월 14일 관세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전략적 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보증 및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됨
 - 대미투자는 조선·반도체·에너지·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이 설립하는 투자 특수목적법인에 우리나라가 출자·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조선협력투자는 국내 조선기업 등의 대미투자와 선박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함

[한미 전략적 투자 구조]

구분	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
약정 규모	2,000억달러	1,500억달러
주요 지원방식	미국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민간투자, 대출, 보증, 선박금융 등
주요 투자분야	조선·반도체·에너지·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 등	조선·해운 및 관련 공급망
사업 선정	미국 대통령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지원
우리나라 참여	사업 발굴·검토, 한미 협의 및 투자추진 여부 심의	국내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투자대상 선정기한	2029년 1월	-
연간 자금납입 한도	200억달러	-
자금납입 방식	사업 진척도에 따른 분할 납입	사업별 투자·대출·보증 등
수익 귀속	간주배분액 충족 전 한국:미국 5:5, 이후 1:9	관련 투자수익은 국내기업 등에 귀속
기금 계정	대미투자계정	조선협력투자계정
주요 재원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 등	공사 출연금 등

주: 1.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민간투자와 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므로 전액이 공사의 현금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간주배분액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임

자료: 산업통상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액, 정부·금융기관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함
 - 한미전략투자법 제42조제4항¹⁾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
-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 상업적 합리성이란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분배되는 총예상 수입으로 해당 사업의 투자원금과 이자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함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및 집행 절차]

단계	수행 주체	주요 내용	국회 통제
후보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미국 투자위원회	대미투자 후보사업 제안	
예비검토	사업관리위원회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검토	
사업 추진 의사 결정	운영위원회	기금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 심의·의결	
비상업적 사업의 예외적 추진	운영위원회·정부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을 사유로 추진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동의
한미 협의	정부·한미 협의위원회	사업구조, 한국기업 참여, 미국 정부 지원 등 협의	협의 전 사전보고 또는 동의
투자대상 선정	미국 대통령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 선정	
최종 투자결정·집행	운영위원회·공사	투자금액과 시점 결정, 자금납입	
사후관리	공사·운영위원회	투자성과·위험 및 기금 재무상황 관리	연차보고

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제42조(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편, 한미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과 한미 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택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미납액을 충족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배분될 이자를 대신 수취하거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함²⁾
 - 다만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납입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쟁점

- 상업적 합리성은 확정된 투자성고가 아니라 장기간의 예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미투자 사업의 현금흐름은 건설비, 공사기간, 생산량, 판매가격, 운영비, 미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지원, 구매계약, 금리, 환율 및 사업종료 시 잔존가치 등에 따라 달라짐
 - 특히 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 및 인공지능 인프라 등의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이며, 기술 변화와 수요 전망에 따라 사업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음
 - 사업 초기의 낙관적인 수요·가격 전망이나 과도한 잔존가치를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투자성과는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2)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제2조제1항3)에서는 우리나라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으로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주요 조건 변경 즉, 공사 지연·사업비 증가·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량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가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심사를 대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투자 특수목적법인과 개별 사업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특수목적법인에 모아 우리나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적용할 계획임⁴⁾
 - 시행령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별로 우리나라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이 해당 사업의 원리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성과 별도로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여야 함
 - 개별 사업의 예상·실제 수익률, 손상 및 미회수액을 공개하고,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된 현금흐름을 제외한 자체 회수성과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사는 사업의 최초 선정 단계뿐 아니라 자금납입 및 중대한 사업 조건 변경 시점마다 상업적 합리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투자결정 이후 건설비 증가, 준공 지연, 미국 정부 지원 축소 또는 시장여건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최초 평가결과만을 유지한다면 실제 집행 시점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음

3)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①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이란 대미투자(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별 사업별 예상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그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말한다.

4)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3-2.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 간 자금거래, 위험 이전 방지를 위한 통제 필요

가. 현 황

- 한미전략투자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위탁자산, 한미 전략투자채권 발행액, 정부·금융기관 차입금 및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함
 - 기금은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공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미투자계정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에 사용하고,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조선협력투자와 관련한 대출·보증·출자·투자 등에 사용함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 비교]

구분	대미투자	조선협력투자
투자·지원 규모	2,000억달러	1,500억달러
주요 재원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 등	공사 출연금 등
주요 운용방식	미국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국내기업 등에 대한 대출·보증·선박금융·출자 등
자금 회수	미국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현금흐름 배분	대출원리금, 보증료, 투자수익 등
수익배분	간주배분액 충족 전 한국미국 5:5, 이후 1:9	관련 투자수익은 국내기업 등에 귀속
주요 위험	장기 프로젝트 위험, 투자원금 미회수, 미국 사업·정책 변화	기업 신용위험, 보증이행 위험, 조선·해운 경기변동
주요 유동성 특성	투자기간이 길고 조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대출·보증 기간과 기업별 상환일정에 따라 변동
원금보장 의무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원금과 약정수익을 공사가 보장	-
계정 간 거래	원칙적 금지, 예수·예탁은 예외적으로 허용	원칙적 금지, 예수·예탁은 예외적으로 허용

주: 1.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민간투자와 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하므로 전액이 공사의 현금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공사 출연금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 외의 재원을 어느 계정에 귀속시켜 그 재원을 사용할지는 공사의 실제 자금조달 내역과 기금운용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재작성

- 기금의 재원 중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의 계정별 귀속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채권발행액과 차입금 등 그 밖의 재원은 계정별 귀속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액, 정부·금융기관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은 기금 전체의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공사가 실제로 채권이나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사전에 발행회차·차입 등 별도의 계정 귀속 기준이 필요함

- 한미전략투자법은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유동성 조정을 위한 예수·예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예수·예탁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계정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다른 계정에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계정이 이를 상환하는 계정 간 자금거래임
 -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정 간 예수·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유동성 조정이 필요, 계정 상호 간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예수·예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 이자율은 시장금리, 계정별 자금조달 비용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 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함
 - 대미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회수액이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원금과 약정수익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사는 한국은행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 공사의 결산순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대미투자계정의 손실이나 유동성 부족이 해당 계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사의 자체자본과 장래 정부 부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나. 주요 쟁점

-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재원·운용방식·수익배분 및 위험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계정별 손익과 위험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미투자계정은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을 바탕으로 미국의 장기 프로젝트에 출자·투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미국과 배분하는 구조임
 - 반면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정부 출자를 재원으로 한 공사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에 대출·보증·선박금융 등을 제공하는 구조임
 - 대미투자계정은 투자원금 회수와 장기 프로젝트의 사업성 위험이 핵심인 반면, 조선협력투자계정은 지원기업의 부실과 보증이행 등 신용위험이 핵심임

- 계정 간 예수·예탁은 일시적인 유동성 조정수단이지만 반복적인 연장이나 상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한 계정의 위험이 다른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음
 - 예수·예탁은 자금을 제공한 계정에는 받을 금액이, 자금을 사용한 계정에는 갚아야 할 금액이 각각 계상되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손실이 이전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자금을 사용한 계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현금회수가 지연되어 예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자금을 제공한 계정도 회수위험을 부담하게 됨

- 채권발행액과 차입금 등 공동재원의 계정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정 계정의 조달비용이나 손실이 다른 계정에 이전될 수 있음
 -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액과 정부·금융기관 차입금은 법률상 특정 계정의 재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채권발행이나 차입 목적이 대미투자인지 조선협력투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원리금과 발행비용을 어느 계정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채권과 차입금을 조달할 때 자금사용 목적과 부담계정을 사전에 지정하고, 실제 자금사용액·기간·위험을 기준으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배분하여야 함

- 따라서 공사는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자산·부채·손익 및 현금흐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조달이자·환손익·공동관리비의 배분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에 대해 별도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기금 전체 재무제표와 연결되는 조정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원금·약정수익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충당순서와 손실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공사 자체자본 및 정부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 근로감독 지적 이후 유사 사례 재발에 따른 프리랜서 인력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K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방송작가, PD, FD, 편집·촬영 인력 등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인력에 대하여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수행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1년 지상파 방송3사의 보도 및 시사·교양 분야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
 - KBS의 경우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해당 감독에서는 계약 명칭뿐 아니라 업무내용, 지휘·감독 관계 및 노무제공 방식 등 실제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였음

[2021년 고용노동부 지상파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 감독 결과,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 (주)문화방송(MBC)는 69명 중 33명, (주)에스비에스(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2021.12.30.

- KBS는 근로감독 이후 방송지원직 직렬 신설과 근로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였음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 고용노동부의 후속 발표에 따르면 KBS는 2021년 감독에서 막내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 방송지원직 직렬을 신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2025 KBS 경영평가 결과서」에 따르면 KBS는 2022년 11월 23일 「KBS 비정규직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

□ 그러나 2025년 실시된 근로감독에서도 일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다시 인정되었으며, 과거 지적된 막내작가 직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재확인되었음

-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KBS의 조사대상 프리랜서 18개 직종 212명 중 7개 직종 58명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들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지속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2021년 감독 당시 근로자성이 인정된 막내작가 직종에서 6명(동일인은 아님)을 여전히 프리랜서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음¹⁾

[프리랜서 인력운영 관련 근로감독 및 개선조치 경과]

구분	주요 지적·확인 내용	KBS의 조치
2021년 근로감독	조사 완료 방송작가 167명 중 70명의 근로자성 인정	감독 이후 방송지원직 직렬 신설 및 근로계약 체결
2022년 내부 기준 마련	비정규직 인력운영 기준 마련	2022.11.23. 「KBS 비정규직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2025년 근로감독	18개 직종 212명 중 7개 직종 58명의 근로자성 인정. 막내작가 6명의 프리랜서 채용 재확인	2026년 1월 감독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 제시(이행 실적 별도 확인 필요)
2025년 감독 후속조치	유사한 인력운영 문제의 재발 방지 필요	경영평가서에 근로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보완·개정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제시

주: 1. 2021년과 2025년은 조사대상 직종과 범위가 달라 근로자성 인정 인원을 직접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후속조치는 경영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임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2025 KBS 경영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1) 고용노동부,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26.1.20.

- KBS는 2025년 근로감독에 대한 후속조치로 근로계약 체결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경영평가단도 2021년에 이어 2025년 감독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제작 현장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있음²⁾

나. 주요 쟁점

- 과거 근로감독 이후 직렬 신설과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일 직종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개선조치의 현장 적용과 재발 방지 효과에 한계가 나타났다 할 수 있음
 - 근로자성은 직종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인별 업무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2025년 지적 인력 전체를 2021년 시정조치의 미이행 대상으로 보거나,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막내작가는 과거 감독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별도 직렬과 근로계약 체계가 마련된 분야임에도 프리랜서 채용 문제가 다시 확인되었음
 - 이는 제도의 마련 여부뿐 아니라 신규 채용과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계약 이후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근로계약 전환은 해당 인력의 고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나, 기존 인력을 전환한 이후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을 프리랜서로 활용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 따라서 KBS는 과거 지적된 직종과 유사 업무의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을 프리랜서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을 통해 제작부서에서 숙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주의사항 공지와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KBS, 「2025 KBS 경영평가 결과서」 pp. 63, 83

- 따라서 KBS는 2021년 근로감독 이후 마련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유사한 프리랜서 인력운영 문제가 재발한 원인을 점검하고, 사후 계약 전환과 함께 채용·계약·업무수행 전반의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과거 지적 직종에 대한 사전 노무검토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제작부와 인사·노무부서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여 개선조치가 실제 고용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함

1-2.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 악화에 따른 수입원별 개선방안과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KBS는 수신료¹⁾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방송광고·콘텐츠 판매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공영방송기관으로, 최근 주요 수입원 감소와 손실 누적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25년 자산총계는 1조 887억원, 자본총계는 5,564억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2,654억원(19.6%), 2,204억원(28.4%) 감소함. 자본의 감소율이 자산의 감소율을 상회함
- 매출액은 2021년 1조 4,580억원에서 2025년 1조 2,117억원으로 16.9% 감소함.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71억원에서 996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당기 순손익은 2022년 적자 전환 후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함

[한국방송공사 재무 및 손익 현황(2021~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총계	13,541	13,952	12,784	11,679	10,887	△2,654	△19.6
부채총계	5,773	6,291	5,774	5,299	5,323	△450	△7.8
자본총계	7,768	7,662	7,010	6,380	5,564	△2,204	△28.4
매출액	14,580	14,825	13,865	12,974	12,117	△2,463	△16.9
영업이익	△71	△90	△645	△881	△996	△925	-
당기순손익	393	△118	△553	△735	△818	△1,211	△308.1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부채총계는 2021~2025년 450억원 감소했음에도 자본 감소로 부채비율은 74.3%에서 95.7%로 21.4%p 상승함. 따라서 부채비율 상승은 차입 확대 여부뿐 아니라 손실 누적에 따른 자본 축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KBS는 수신료·방송광고·콘텐츠 판매 등 핵심 수입원의 동반 감소에 대응하여 수입원별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공적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수익 기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수신료·방송광고·콘텐츠 판매수입은 각각 6,196억원, 1,375억원, 3,30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9.8%를 차지함. 세 항목 모두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함
 - 2025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7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수신료 320억원, 방송광고 302억원, 콘텐츠 판매 164억원 등 핵심 수입원 감소분은 786억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약 91.7%에 해당함

[2021~202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매출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매출액(a)	14,580 (100.0)	14,825 (100.0)	13,865 (100.0)	12,974 (100.0)	12,117 (100.0)	△857 (-)
수신료수입(b)	6,863 (47.1)	6,934 (46.8)	6,851 (49.4)	6,516 (50.2)	6,196 (51.1)	△320 (0.9)
방송광고수입(c)	2,705 (18.6)	2,642 (17.8)	1,967 (14.2)	1,677 (12.9)	1,375 (11.3)	△302 (△1.6)
기타방송사업수입	4,765 (32.7)	4,934 (33.3)	4,748 (34.2)	4,514 (34.8)	4,277 (35.3)	△237 (0.5)
콘텐츠 판매수입(d)	3,777 (25.9)	3,872 (26.1)	3,780 (27.3)	3,472 (26.8)	3,308 (27.3)	△164 (0.5)
기타	988 (6.8)	1,063 (7.2)	968 (7.0)	1,042 (8.0)	969 (8.0)	△73 (0.0)
시청자사업수입	110 (0.8)	133 (0.9)	180 (1.3)	160 (1.2)	142 (1.2)	△18 (0.0)
기타수입 ¹⁾	137 (0.9)	182 (1.2)	119 (0.9)	108 (0.8)	127 (1.0)	19 (0.2)
주요수입원의 매출액 대비 비중 (b+c+d)/a	91.5	90.7	90.9	89.9	89.8	△0.1

주: 1) 기타수입은 국고금 수입과 전파료 수입으로 구성됨

1. ()안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각 수입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 및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수신료 수입은 2022년 6,934억원에서 2025년 6,196억원으로 738억원 (10.6%) 감소한 반면, 매출액 대비 비중은 46.8%에서 51.1%로 상승함. 이는 수신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원의 감소로 상대적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임
 - 수신료 징수방식 조정으로 수입이 회복되더라도 광고·콘텐츠 판매수입 감소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예상 수신료 수입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고, 수입 회복 지연 시 지출 조정방안도 마련할 필요
- 수입원별 목표는 매출액과 비중뿐 아니라 비용을 차감한 수익성과 현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요 수입원의 감소가 반복되는 경우 사업별 대응 성과를 점검하여야 함

□ KBS는 광고시장 전반의 위축과 자사 점유율 하락을 구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콘텐츠 경쟁력과 국내외 유통수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021~2025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1조 2,071억원에서 6,936억원으로 42.5% 감소한 반면, KBS 광고매출은 2,705억원에서 1,375억원으로 49.2% 감소함. 같은 기간 KBS의 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은 22.4%에서 19.8%로 2.6%p 하락함
 - 2025년 KBS 광고매출 감소율은 18.0%로 지상파 전체 감소율 17.0%를 상회함. 다만 SBS의 감소율 20.9%보다는 낮으므로, 모든 경쟁사보다 부진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점유율 하락만으로 콘텐츠 경쟁력 악화를 단정하기보다 프로그램별 시청성과, 광고단가·판매율, 편성 및 광고판매 전략 등을 분석하여 시장 요인과 기관별 요인의 기여도를 확인할 필요

[지상파 사업자별 광고매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전체	31,486	30,830	24,983	22,964	20,134	△2,830	△12.3
지상파	12,071 (100.0)	12,090 (100.0)	9,273 (100.0)	8,354 (100.0)	6,936 (100.0)	△1,418	△17.0
KBS (점유율)	2,705 (22.4)	2,642 (21.9)	1,967 (21.2)	1,676 (20.1)	1,375 (19.8)	△301	△18.0
MBC (점유율)	2,715 (22.5)	2,760 (22.8)	2,028 (21.9)	2,064 (24.7)	1,772 (25.5)	△292	△14.1
SBS (점유율)	3,536 (29.3)	3,701 (30.6)	2,900 (31.3)	2,415 (28.9)	1,910 (27.5)	△505	△20.9
기타 (점유율)	3,115 (25.8)	2,987 (24.7)	2,378 (25.6)	2,199 (26.3)	1,879 (27.1)	△320	△14.6

주: 1. 기타는 EBS 및 지역MBC, 지역민방 등이 있음

2. 점유율은 지상파 광고매출 중 각 지상파 사업자의 광고매출 비중임

3. 앞의 표 '매출 현황'과 2024년 방송광고수입의 수치 차이는 원 단위 매출(167,688,973,505원)에 대한 반올림 여부에 따른 수치 차이임

자료: 연도별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을 바탕으로 재작성

- 콘텐츠 판매수입은 2022년 3,872억원에서 2025년 3,308억원으로 14.6% 감소함. 특히 해외 판매수입은 2023년 597억원에서 2025년 313억원으로 47.6% 감소하여 판매지역·플랫폼·작품별 계약 및 회수 실적을 점검할 필요

[한국방송공사 콘텐츠 판매수입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

연도	콘텐츠 판매수입			전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매출액 대비 비중
	국내	해외	합계		
2021	3,305	472	3,777	-	25.9
2022	3,416	455	3,872	95(2.5)	26.1
2023	3,183	597	3,780	△92(△2.4)	27.3
2024	3,085	387	3,472	△309(△8.2)	26.8
2025	2,995	313	3,308	△164(△4.7)	27.3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영업손실 확대와 EBITDA²⁾ 적자 지속에 대응하여 비용구조를 점검하고, 실제 영업현금흐름과 투자·차입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업손실은 2021년 71억원에서 2025년 996억원으로 확대되었고, EBITDA는 2021년 448억원, 2022년 439억원에서 2023년 △40억원으로 전환된 후 2025년 △457억원까지 감소함
 - EBITDA의 적자 지속은 제시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영업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영업활동의 현금창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영업활동현금흐름, 콘텐츠 제작·시설투자 지출, 가용현금, 차입금 만기 및 이자 부담을 함께 분석하여 운영자금 부족 가능성과 자금조달 필요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를 본 분석에서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보조지표로 사용함. 이 지표는 운전자본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활동현금흐름과 차이가 있음

[한국방송공사 EBITDA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연도	영업이익(A)	감가상각비(B)	EBITDA(A+B)
2021	△71	519	448
2022	△90	529	439
2023	△645	605	△40
2024	△881	564	△317
2025	△996	539	△457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KBS는 핵심 수입원의 감소와 영업손실 확대에 대응하여 수입원별 개선 방안과 비용·현금흐름 관리를 연계한 중장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수입 전망을 현실화하고 광고·콘텐츠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도별 손실 축소·현금흐름 개선 목표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1-3. 시설투자 여력 약화에 따른 교체·유지보수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KBS의 2025년 설비투자¹⁾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영업현금흐름도 음수로 전환됨

- KBS는 방송장비, 송출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등에 설비투자를 수행하고 있음
 - 설비투자액은 2021년 494.2억원에서 2024년 186.1억원으로 감소함
 - 2025년에는 2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4억원(40.5%) 증가하였으나, 2021년 대비로는 232.7억원(47.1%) 감소한 수준임
- 영업현금흐름은 2021년 1,585.2억원에서 2022년 △221.5억원으로 전환된 후 2023~2024년 현금인 순유입이었으나, 2025년에는 △251.0억원으로 전환됨
 -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2025년에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순유출되어 당해 연도 영업활동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짐

[한국방송공사 설비투자 및 영업현금 흐름 추이(2021~2025회계연도)]

(단위: 억원, %)

연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설비투자			영업현금흐름
			유형자산취득액 ¹⁾	무형자산증가액	총설비투자액	
2021	5,245.0	519.5 (9.9)	491.1	3.1	494.2	1,585.2
2022	5,483.1	529.4 (9.6)	770.6	2.7	773.3	△221.5
2023	5,287.0	604.6 (11.4)	420.5	15.4	435.9	350.2
2024	4,908.8	564.2 (11.5)	184.1	2.0	186.1	385.8
2025	4,628.8	539.0 (11.6)	259.5	2.0	261.5	△251.0

주: 1) 유형자산 취득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이 포함

1. ()는 유형자산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을 의미함

2. 유형자산 항목은 누적 개념으로, 매년 신규 설비투자액과 감가상각이 반영된 결과이며, 해당 연도의 순수 신규투자 금액과는 구분됨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박소희 예산분석관 (parksh@assembly.go.kr, 6788-4683)

1) 본 분석에서는 유형자산 취득액과 무형자산 증가액의 합계를 설비투자액으로 정의함

- 설비투자가 2023년 이후 감가상각비를 하회하여 유형자산 장부금액도 감소하고 있음
 - 감가상각비는 분석기간 중 연간 519.5억~604.6억원 수준인 반면, 설비투자액은 2022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감가상각비보다 적게 나타남
 -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2022년 5,483.1억원에서 2025년 4,628.8억원으로 854.3억원(15.6%) 감소함
 - 유형자산 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규 취득과 감가상각 외에도 처분·손상 등 자산 변동 내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

- 주요 송신장비와 중계차의 장기 사용 및 재난자막 송출시스템의 예비 장비 부족으로 방송시설의 안정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²⁾
 - 2025년 기준 DTV 송신기는 202대 중 102대(50.5%), DTVR 중계기는 1,820대 중 1,132대(62.2%)가 사용연수 15년을 초과함
 - TV중계차 및 지원용 차량은 총 35대 중 30대(85.7%)가 사용기간 11년 이상이며, 이 중 16년 이상 경과한 차량도 10대임
 - 9개 총국과 울산국·강릉국의 재난자막 송출시스템은 도입 후 6~7년이 경과하였으며, 재난자막 송출용 예비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제시됨

나. 주요 쟁점

- 설비투자가 감가상각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설 상태와 교체 수요를 바탕으로 필수 투자 부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2022년 146.1%에서 2023년 72.1%, 2024년 33.0%로 하락하였으며, 2025년에는 48.5%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를 하회함
 - 2023~2025년 설비투자액 합계는 883.5억원으로,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 합계 1,707.8억원의 51.7% 수준임

2) 한국방송공사, 「2025 KBS 경영평가 결과서」, 2026.5., p.377~384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 회계상 비용이므로,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을 실제 노후설비 교체율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해당 비율의 하락을 투자 축소 여부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하되, 장비별 사용연수·고장 빈도·부품 수급 가능성·수선비 등을 함께 분석하여 필수 투자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2021~2025)]

(단위: 억원, %)

연도	설비투자액	감가상각비	설비투자/감가상각비 비율
2021	494.2	519.5	95.1
2022	773.3	529.4	146.1
2023	435.9	604.6	72.1
2024	186.1	564.2	33.0
2025	261.5	539.0	48.5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영업현금흐름의 변동성과 현금 순유출을 고려하여, 필수 설비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자금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2021년 320.8%에서 2022년 △28.6%로 하락한 후, 2023년 80.3%, 2024년 207.3%, 2025년 △96.0%로 큰 변동을 보임
 - 2025년에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전환되어 영업활동의 자금 부족과 설비투자 수요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한국방송공사의 설비투자액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2021~2025)]

(단위: 억원, %)

연도	영업현금흐름	설비투자	영업현금흐름/설비투자 비율
2021	1,585.2	494.2	320.8
2022	△221.5	773.3	△28.6
2023	350.2	435.9	80.3
2024	385.8	186.1	207.3
2025	△251.0	261.5	△96.0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난방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자막 송출시스템의 예비 장비와 장애 대응체계를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 따라서 KBS는 설비별 노후도와 위험 등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자금계획과 연계한 교체·유지보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반복적 손실이 발생하는 KBS 출자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가. 현 황

- KBS는 방송 콘텐츠 제작·유통, 광고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하여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출자하고 있음
- 주요 출자기업은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이케이비에스, KBS아트비전, 연합뉴스, wavve Americas, 콘텐츠웨이브 등임
 - 2025년 말 기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총 1,002억원이며, 장부금액은 3,349억원임
 - 이케이비에스 1,253억원, KBS미디어 1,097억원, 연합뉴스 492억원, KBS비즈니스 236억원 등 4개 기업이 전체 장부금액의 약 91.9%를 차지함
 - 콘텐츠웨이브와 wavve Americas에 대한 직접 지분율은 각각 1.88%, 15.20%이나, 감사보고서에서는 종속기업 보유지분 및 유의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 지분투자 현황(2021~2025)]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KBS비즈니스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취득원가	9	9	9	9	9
	장부금액	168	175	204	220	236
KBS미디어(주)	지분율	88.84	88.84	88.84	88.84	88.84
	취득원가	66	66	67	67	67
	장부금액	954	1,009	1,041	1,102	1,097
(주)이케이비에스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취득원가	755	755	755	755	755
	장부금액	915	1,324	1,261	1,321	1,253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주)KBS아트비전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취득원가	52	52	52	52	52
	장부금액	134	139	143	146	133
(유)케이씨에스 문전사	지분율	40	40	40	40	40
	취득원가	40	40	40	40	40
	장부금액	48	50	52	50	49
(주)케이비에스 시큐리티	지분율	100	100	100	100	100
	취득원가	15	15	15	15	15
	장부금액	60	68	71	71	80
(주)연합뉴스	지분율	27.77	27.77	27.77	27.77	27.77
	취득원가	6	6	6	6	6
	장부금액	390	401	438	448	492
wavve Americas	지분율	26.67	15.2	15.2	15.2	15.2
	취득원가	47	23	23	23	23
	장부금액	10	13	15	12	9
콘텐츠웨이브(주)	지분율	-	1.92	1.88	1.88	1.88
	취득원가	-	35	35	35	35
	장부금액	0	11	0	0	0
합계	취득원가	990	1,001	1,002	1,002	1,002
	장부금액	2,679	3,190	3,225	3,370	3,349

주: wavve Americas, (주)연합뉴스, 콘텐츠웨이브(주)는 관계기업, 나머지는 종속기업임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체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021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일부 출자기업에서는 당기순손실이 반복되고 있음

- KBS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2021년 2,679억원에서 2024년 3,370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 3,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감소함
- 이케이비에스는 2021~2025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콘텐츠웨이브도 2023~2025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됨

[주요 출자기업의 당기순손익 현황(2021~2025)]

(단위: 억원)

기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주)이케이비에스	△89.3	△139.7	△54.1	△31.8	△52.7	△367.6
콘텐츠웨이브(주)	-	-	△1,194.6	△1,497.3	△754.4	△3,446.3
wavve Americas	12.0	45.2	5.6	△35.8	△2.2	24.8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이케이비에스는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적 손실의 원인과 경영개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케이비에스의 2021~2025년 누적 당기순손실은 367.6억원이며, 2025년에는 전년보다 20.9억원 증가한 5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 KBS는 이케이비에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말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1,253억원으로 전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약 37.4%를 차지함
 - 투자 규모가 크고 손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매출·비용 구조와 영업현금흐름, 보유자산 활용도 등을 점검할 필요
- 반복적 손실과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변동을 함께 분석하고, 투자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케이비에스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2021년 915억원에서 2025년 1,25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말 현재 취득원가 755억원을 498억원 상회함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는 취득 이후 누적 손익과 기타 자본 변동 등이 반영되므로 장부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피투자회사의 반복적인 손실은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성 저하를 시사할 수 있으므로, KBS는 투자주식의 장부금액 변동과 피투자회사의 손익·재무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손상징후 발생 여부 및 투자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이케이비에스 손익과 KBS 투자주식 장부금액 추이(2021~2025)]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이케이비에스 당기순손익	△89.3	△139.7	△54.1	△31.8	△52.7
KBS 투자주식 취득원가	755	755	755	755	755
KBS 투자주식 장부금액	915	1,324	1,261	1,321	1,253
장부금액 전년 대비 증감	-	409	△63	60	△68

자료: 연도별 한국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KBS는 손실이 반복되는 출자기업의 경영개선 실적과 투자자산 평가를 점검하고, 추가 재무부담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업별 손실 원인, 현금흐름, 투자주식 장부금액 변동 및 추가 지원의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출자 목적과 재무성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 유지·개선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1-5. 정원 적정성 점검 및 인력운영 개선 필요

가. 현 황

- KBS는 수입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인건비 절감과 채용 축소를 추진해 왔으며,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정원은 2000년 5,576명에서 2025년 5,29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현원은 5,168명에서 3,745명으로 감소함
 -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00년 92.7%에서 2025년 70.8%로 21.9%p 하락하였으며,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408명에서 1,547명으로 확대됨
 - 특히 2020~2025년 정원은 268명(4.8%) 감소한 반면, 현원은 805명(17.7%) 감소하여 현원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남

[KBS 정/현원 현황(2000~2025)]

(단위: 명, %)

연도	정원 (A)	현원 (B)	정/현원차이 (A-B)	정원 대비 현원 (B/A)
2000	5,576	5,168	408	92.7
2010	5,560	4,973	587	89.4
2020	5,560	4,550	1,010	81.8
2025	5,292	3,745	1,547	70.8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일반직 현원은 정원의 70.0%이며, 촉탁직과 방송음악직도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수준임
 - 일반직은 2020년 정원 5,462명, 현원 4,489명에서 2025년 정원 5,194명, 현원 3,638명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82.2%에서 70.0%로 하락함
 - 촉탁직은 정원 32명 중 현원 3명, 방송음악직은 정원 54명 중 현원 27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각각 9.4%, 50.0%임

[KBS 정/현원 세부 현황(2000~2025)]

(단위: 명)

직급	2000		2010		2020		2025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집행기관	12	10	12	9	12	9	12	7
일반직	4,522	4,214	5,516	4,883	5,462	4,489	5,194	3,638
촉탁직	32	31	32	20	32	14	32	3
기능직	410	287	-	-	-	-	-	-
업무직	272	271	-	-	-	-	-	-
청경직	328	212	-	-	-	-	-	-
방송음악직	-	-	-	-	54	38	54	27
예비사원	-	143	-	61	-	-	-	70
합계	5,576	5,168	5,560	4,973	5,560	4,550	5,292	3,745

주: 기능직, 업무직, 청경직은 과거 인력 분류체계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2004년 이후 직능 폐지 및 일반직으로 전환됨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0년 이후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합계가 매년 퇴직자 수보다 낮게 나타남
 - 공개채용 인원은 2019년 219명에서 2024년 1명으로 감소한 후, 2025년 73명으로 증가함
 - 퇴직자는 2019~2024년 연간 243~267명 수준이었으며, 2025년에는 142명으로 감소함

[KBS 연차별 채용 및 퇴직 현황(2019~2025)]

(단위: 명, %)

연도	공개채용(a)	특별채용(b)	퇴직자(c)	충원율(a+b)/c
2019	219	227 ¹⁾	258	172.9
2020	48	37 ²⁾	260	32.7
2021	83	0	253	32.8
2022	14	25 ³⁾	267	14.6
2023	132	0	243	54.3
2024	1	15 ⁴⁾	261	6.1
2025	73	19 ⁵⁾	142	64.8

주 1) 2019년 비일반직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등

2) 2020년 무기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등

3) 2022년 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4) 2024년 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5) 2025년 연봉직 사원의 일반직 전환 특별채용 등

1. 공개채용은 임용일 기준, 특별채용은 일반직 전환일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정원과 현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직 기능과 업무량에 근거하여 정원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1,547명으로 정원의 29.2%에 해당하며, 제시된 비교연도 중 가장 큰 수준임
 - 업무 축소·자동화·외주화 등에 따라 필요 인력이 감소한 것인지, 재정적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원 조정은 현원 수준에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 공영방송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직무별 인력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인력 재배치·필수 인력 충원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절감과 공적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 규모를 설정하고, 업무 공백과 비용 변화 등을 통해 인력운영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1-6. 장애인의무고용률 지속적인 미달에 따른 개선 필요

가. 현 황

- KBS에 적용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1%이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임
 - KBS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분석 기간인 2021~2025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3.1%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음
- KBS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2025년 모든 연도에서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시근로자 수는 2021년 4,764명에서 2025년 4,314명으로 450명(9.4%) 감소하였으며,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은 147명에서 133명으로 14명 감소함
 - 같은 기간 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후 고용 인정인원은 106명에서 87명으로 19명(17.9%)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보다 큰 감소율을 보임
 -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23%에서 2025년 2.02%로 0.21%p 하락하였으며, 의무고용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41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함

[KBS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인원 현황(2021~2025)]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A)	3.1	3.1	3.1	3.1	3.1
상시근로자수(B)	4,764	4,583	4,532	4,274	4,314
장애인의무고용인원(C=A×B)	147	142	140	132	133
장애인 근로자수(D)	106	98	90	88	87
장애인고용비율(E=D/B)	2.23	2.14	1.99	2.06	2.02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F=C-D)	41	44	50	44	46

주: 장애인근로자수 및 장애인고용률 중증 2배수 적용

자료: KBS가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KBS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라 2021~2025년 총 32억 9,618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

- 연간 납부액은 2021년 5억 5,568만원에서 2024년 7억 2,879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6억 7,261만원을 기록함

[KBS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21~2025)]

(단위: %, 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	3.1	3.1	3.1	3.1	3.1	-
장애인 고용률	2.23	2.14	1.99	2.06	2.02	-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액	55,568	61,433	72,477	72,879	67,261	329,618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KBS가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전체 인력 감소보다 장애인 고용인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애인 채용과 고용 유지의 제약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 2021~2025년 상시근로자 수는 9.4% 감소한 반면, 장애인 고용인원은 17.9% 감소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짐
 - 특히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40명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1명 감소하여, 의무고용률과의 격차가 확대됨
- 공영방송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실적과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81%에서 2025년 4.16%로 상승한 반면, KBS는 같은 기간 2.23%에서 2.02%로 하락함
 - 적용 의무고용률과 직무구성 등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며, KBS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필요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2021~2025)]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3.6	3.6	3.8	3.8
의무고용인원	15,325	16,353	16,100	16,055	16,288
고용인원	17,369	17,802	17,752	17,332	18,020
고용률	3.81	3.88	3.93	4.06	4.16

주: 1. 각 연도말 기준

2.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률은 중증2배수제 적용

3. 장애인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을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KBS는 장애인 고용률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직무 개발과 채용·근무 지원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법정 의무고용률 충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주택융자금 저리 대출 등 과도한 전세지원금 혜택 지양 필요

가. 현 황

- KBS는 「전세자금 운영지침」에 따라 비연고지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전세 지원금을 대여하고 있음
- 인사발령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대출금리는 연 2.0%이며 지원 한도는 전출 지역과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8,000만원~1억 5,000만원임
 - 상환기한은 전세지원금 지원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임
 - 2025년 지원금액은 15.8억원이며, 2025년 말 대출 잔액은 81.4억원임

[주택융자금 대여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24	39	52	30	22
지원금액	1,540	2,865	4,268	2,252	1,580
1인당 지원 한도	○ 단신 이주 - 지역→본사 : 10,000만원 - 본사→지역 : 8,000만원 - 지역→지역 : 8,000만원		○ 가족 동반 이주 - 지역→본사 : 15,000만원 - 본사→지역 : 10,000만원 - 지역→지역 : 10,000만원		
관련 내부 규정	「전세자금 운영지침」				
지원 요건	비연고지 전출 직원				
상환 조건	전세지원금 지원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 각 연도 말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공기관의 주택용자금 운영기준과 비교하면, KBS는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 한도가 높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주택용자금 금리의 하한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로, 대출 한도의 상한을 7,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KBS의 대출금리는 비교 시점 모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으며, 내부 규정상 지원 한도도 모든 유형에서 7,000만원을 초과함
 - 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과의 차이를 곧바로 지침 위반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대여조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비교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21.1.	2022.1.	2023.1.	2024.1.	2025.1.	2026.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2.64	3.46	5.34	5.04	4.55	4.2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00	2.00	2.00	2.00	2.00	2.00

주: 가계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나. 주요 쟁점

- 비연고지 전보에 따른 주거지원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출금리와 지원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전세지원금이 전체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이 아니라, 사택이 없는 비연고지로 전보된 직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임
 -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발생하는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지원 목적만으로 현행 금리와 한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연 2.0%의 고정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자금운용 여건과 주거지원 목적을 반영한 금리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 대출금리는 제시된 2021~2026년 비교 시점에서 모두 연 2.0%로 유지되었으며,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차이는 0.64~3.34%p로 나타남
 - 저리 대여에 따른 직원의 금융 혜택과 KBS의 자금운용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출 한도와 지원기간을 실제 주거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지원 사유 소멸 시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원 한도는 8,000만원~1억 5,000만원으로 차등 설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임차료와 실제 소요자금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KBS는 실제 주거 수요와 기관의 자금조달·운용 비용을 고려하여 금리·한도·지원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에 대한 과도한 저리대출 및 지원 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전세지원금 제도는 직무수행 지원 성격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규율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성 주택융자와는 그 취지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입장이나, 동 지침 제46조제5항은 7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대상을 단순히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용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일반적인 복리후생 목적의 용자 또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원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거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주택임차자금 지원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 KBS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공공부문에서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 또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인사 전보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함
 - 2025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차자금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대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융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KBS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장이며, 이는 공공성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음

1-8.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제도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KBS는 「직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운영지침」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공사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음
- 국내대학은 별도 대여 한도가 없으며, 국외대학은 연간 미화 6,000달러를 한도로 학기별 대여함
 - 상환은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기간을 거쳐 짝수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당 상환액은 100만원 한도임
 - 퇴직 시에는 대여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학자금 대여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581	563	499	431	336
지원금액	3,943	4,034	3,575	3,047	2,366
1인당 지원 한도	국외대학 연간 대여한도액 미화 6천달러 국내대학 한도 없음				
관련 내부 규정	「직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운영지침」				
지원 요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사 집행기관 및 직원 학기별 무이자 대여				
상환 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후 짝수월 급여상환(1회 100만원 한도), 퇴직 시 전액상환				

주: 각 연도 말 학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5년 학자금 대여액은 23.7억원이며, 연말 대출 잔액은 245.9억원임
- 연간 대여액은 2021년 39.4억원에서 2025년 23.7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지원 인원은 같은 기간 581명에서 336명으로 감소함

[학자금 대출 1인당 대출금액(추정)]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A)	581	563	499	431	336
대출금액(B)	3,943	4,034	3,575	3,047	2,366
연도별 1인당 대출금액(B/A)	6.8	7.2	7.2	7.1	7.0

자료: 한국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학자금 대여는 원금 회수를 전제로 하지만, 무이자 지원에 따른 경제적 혜택과 기관의 자금운용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BS는 과거 무상 지원제도를 노사 합의를 통해 대여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제도라는 입장임
 - 무상 지원을 대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나, 원금 회수 여부와 무이자 조건의 적정성은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
 - 직원은 대여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반면, KBS는 해당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운용할 기회를 제한받음
- 경영수지 악화와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무이자 대여조건과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여에 배분되는 자금 규모와 회수 일정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
- 다른 기관의 제도 운영 여부만으로 현행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KBS의 재정 여건과 지원 효과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는 사내 학자금 대여제도가 공공부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다른 기관의 운영 사실만으로 무이자 조건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¹⁾

- 상당수 공공기관이 학자금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24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5년에 각각 학자금 대여 제도를 폐지하였음
 -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5년 말 현재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을 연 3.5%의 금리로 대여하고 있음

□ 따라서 KBS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제도의 지원 효과와 자금 운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여조건과 제도 유지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은 금리 부과, 대여 한도 설정, 거치·상환기간 조정 등 대안별로 직원의 교육비 부담과 기관의 재정 영향을 비교할 필요

1) KBS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여금과 운영경비를 별도의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대여하는 법정 후생복지제도임. 반면 KBS의 학자금 대여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법적 근거 및 재원·비용부담 구조가 상이하므로, 공무원에게도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KBS의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1.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입구조 다변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의 2025년도 당기순이익은 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원 증가하였으며, 매출총이익은 49.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익성 증가가 아니라 원가 절감에 따른 것임

[2024~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증감	증감률
매출액	305,680	300,832	△4,848	△1.6
매출원가	273,496	263,720	△9,776	△3.6
매출총이익	32,184	37,111	4,927	15.3
당기순이익	1,584	4,774	3,190	201.4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EBS의 매출은 방송사업수입과 부대사업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전년 대비 각각 36.2억원(2.6%) 및 12.2억원(0.7%) 감소함
 - 방송사업수입의 경우 분리징수 영향에 따라 2025년 수신료수입이 전년 대비 15.6억원 감소함
 - 부대사업수입을 구성하는 수탁사업수입 및 협찬용역사업수입 등의 경우 2025년도에 수탁사업 일부 종료 및 협찬용역사업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9.7억원 감소함

[2024~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매출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증감	증감률
1. 방송사업수익		141,884	138,258	△3,626	△2.6
	수신료수익	17,738	16,176	△1,561	△8.8
	방송발전기금수익	34,154	31,420	△2,734	△8.0
	국고보조금수익	61,478	64,298	2,820	4.6
	방송광고수익	20,012	19,234	△778	△3.9
	방송사업기타수익	8,503	7,130	△1,373	△16.1
2. 부대사업수익		163,796	162,574	△1,222	△0.7
	출판사업수익	93,262	98,136	4,874	5.2
	문화콘텐츠부대사업수익	11,128	9,135	△1,993	△17.9
	콘텐츠사업수익	26,448	30,315	3,867	14.6
	부대사업 기타수익	32,958	24,987	△7,970	△24.2
수익 합계		305,680	300,832	△4,848	△3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총 수입 대비 자체재원 비중은 2021년 58.4%에서 2022년 67.6%로 상승한 이후 2024~2025년 62%대로 점진적으로 감소함

- 규모가 큰 출판사업의 비중이 2021년 26.4%에서 2025년 32.3%로 확대되고, 광고사업(2021년 7.5% → 2025년 6.3%), 협찬용역사업(2021년 4.5% → 2025년 3.7%), 온라인사업(2021년 4.1% → 2025년 2.9%)은 감소함

[EBS 총 수익 비중(2021~2025)]

(단위: %, %p)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 공적재원		40.7	31.2	31.7	36.8	36.9	△3.8
·	○ 수신료	5.5	6.8	6.8	5.8	5.3	△0.2
	○ 보조금	35.2	24.3	24.9	31.0	31.5	△3.6
	· 방송통신발전기금	9.5	11.2	12.1	11.1	10.4	0.9
	· 교육부	25.7	13.1	12.8	19.9	21.2	△4.5
□ 자체사업		58.4	67.6	67.3	62.4	62.3	3.8
·	○ 출판사업	26.4	30.2	30.6	30.2	32.3	5.9
	○ 콘텐츠사업	4.4	5.7	6.1	5.9	7.0	2.6
	○ 광고사업	7.5	9.0	7.9	6.5	6.3	△1.2
	○ 수탁사업	5.0	5.6	6.3	4.3	3.6	△1.4
	○ 협찬용역사업	4.5	4.6	5.3	5.5	3.7	△0.8
	○ 문화콘텐츠부대사업	3.4	4.1	3.6	3.6	3.0	△0.4
	○ 온라인사업	4.1	4.5	3.5	2.7	2.9	△1.1
	○ 채널공급	1.5	1.9	2.0	1.8	1.8	0.3
	○ 자회사분배금	0.7	0.9	0.8	0.9	0.9	0.3
	○ 협찬사업	0.9	1.0	1.2	0.9	0.2	△0.8
	○ 공동제작수입	0.0	0.0	0.0	0.0	0.4	0.4
	□ 사업외수입	0.9	1.2	1.0	0.9	0.9	△0.0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수입구조 측면에서 자체재원이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적 규모가 감소(2021년 2,030억원→2025년 1,889억원)하고 있고, 공적재원의 비중은 2022년 31.2%에서 2025년 36.9%로 상승함
- 최근 총수입 회복은 자체 수익사업 확대보다는 교육보조금 등 공적재원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자체재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공적재원 의존도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향후 자체재원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적재원 확대를 통해 수입 감소를 보완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 EBS의 재정운영은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정책사업 추진 방향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음

[EBS 수입규모 추이(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총수입(A)	347,547	283,476	280,310	308,415	303,491	△44,057
공적재원(B)	141,395	88,405	88,985	113,369	111,894	△29,501
자체재원	203,005	191,666	188,646	192,311	188,938	△14,067
사업외수입	3,148	3,405	2,679	2,735	2,659	△489
공적재원 비중 (B/A)	40.7	31.2	31.7	36.8	36.9	△3.8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공적재원 내부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적재원 증가가 수신료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같은 전통적인 재원보다는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교육보조금 확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교육보조금이 공적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된 반면(2023년 40.4%→2025년 57.5%), 수신료 비중은 하락함(21.5%→14.5%)
- 이에 따라 EBS의 공적재원 구조는 안정적 재원인 수신료 및 기금 수입보다 교육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

[EBS 세부 공적재원수입 추이(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a)	2022	2023(b)	2024	2025(c)	증감(c-a)	증감(c-b)
공적재원 수입(A)	141,395	88,405	88,985	113,369	111,894	△29,501	22,909
수신료(B)	19,206	19,405	19,174	17,738	16,176	△3,030	△2,998
(비중)(B/A)	(13.6)	(22.0)	(21.5)	(15.6)	(14.5)	-	-
보조금	122,189	69,000	69,810	95,631	95,718	△26,471	25,908
- 방통보조금(C)	32,857	31,740	33,825	34,154	31,420	△1,437	△2,405
(비중)(C/A)	(23.2)	(35.9)	(38.0)	(30.1)	(28.1)	-	-
- 교육보조금(D)	89,332	37,260	35,985	61,478	64,298	△25,034	28,313
(비중)(D/A)	(63.2)	(42.1)	(40.4)	(54.2)	(57.5)	-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EBS의 자체사업은 출판사업과 콘텐츠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광고·협찬용역 등 전통적 수익원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어 수입 기반이 특정 사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
 - 출판사업이 전체 자체재원 수입의 51.9%, 이익의 47.4%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및 이익도 증가추세를 보임
- EBS의 자체수익은 출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수험서·교재 판매 등 학령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수입 기반의 안정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EBS 주요 자체사업 수익성 분석(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중
자체 수입	수익	203,005	191,666	188,646	192,311	188,938	100.0
	이익률	56.2	49.9	47.6	53.5	55.1	-
출판사업	수익	91,806	85,596	85,701	93,262	98,136	51.9
	이익률	56.3	42.7	42.9	48.9	50.3	-
콘텐츠 사업	수익	15,443	16,257	17,094	18,101	21,392	11.3
	이익률	89.6	88.7	84.0	86.8	86.9	-
광고 사업	수익	26,061	25,621	22,194	20,012	19,234	10.2
	이익률	81.5	81.5	82.1	81.6	80.3	-
수탁 사업	수익	17,453	15,827	17,637	13,380	10,986	5.8
	이익률	7.5	4.6	△1.9	△0.0	△0.3	-
협찬 용역사업	수익	15,567	13,045	14,886	16,933	11,120	5.9
	이익률	47.6	31.7	16.0	26.1	20.9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1~2025년 제품 손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출판 사업 중심의 수익구조가 향후 재고 판매 부진과 수익성 저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

- 제품평가충당금은 판매 부진,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는 재고자산에 대해 설정하는 금액으로, 충당금 비율 상승은 재고자산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함
- 제품재고는 출판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학령인구 규모의 감소에 따라 출판물 수요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있음

[EBS 재고자산 및 평가충당금 추이(2021~2025)]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제품(A)	6,030.9	8,434.1	8,601.2	8,236.1	8,144.4	2,113.5
제품평가충당금(B)	738.5	837.4	954.5	1,280.8	1,683.7	945.2
평가충당금률 (B/A)	12.2	9.9	11.1	15.6	20.7	8.4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EBS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출판시장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여 신규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온라인사업 등 디지털 기반 사업의 수익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 제작설비 투자 위축

가. 현 황

- 2025년 말 기준 EBS의 유형자산은 1,355억원으로 전년(1,379억원) 대비 24억원 감소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비중은 2024년 62.2%에서 2025년 61.2%로 소폭 하락함

[EBS 유형자산 장부가액(2024~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증감액	증감률
유형자산				
토지	186	186	0	0
건물및건축물	1,162	1,138	△24	△2
방송장비	25	26	1	4
기계장치	0	0	△0	△57
기타	5	4	△1	△12
합계	1,379	1,355	△24	△2
총 자산 대비 비중	62.2	61.2	-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EBS 1TV 전체 방송시간 중 신규 제작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기존 콘텐츠 활용 비중(재방송 등)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신규제작 본방송 비율은 2021년 58.7%에서 2026년 39.8%로 하락하였으며, 순환편성 비율은 41.3%에서 60.2%로 상승함

[EBS 1TV 신규제작 본방송 및 순환 비율(2021~2026)]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	2026(B)	증감률(B-A)
신규 제작 본방송 비율	58.70%	53.30%	52.70%	47.50%	41.50%	39.80%	△18.90%p
순환 비율 (재방송+재활용)	41.30%	46.70%	47.30%	52.50%	58.50%	60.20%	18.90%p

주: 연간 전체 방송 시간 기준이며, 2026년은 1월~5월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전체 비용예산의 축소에 따라 프로그램제작비용 등 제작비 감축이 지속되고 있어 신규 콘텐츠 제작 비중은 감소하고 기존 콘텐츠 활용 비중은 확대되는 등 EBS의 편성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작비용 추세(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 (C=B-A)	증감률 (C/A)
총 비용(a)	353,838	309,062	298,618	306,831	298,717	△55,121	△15.6
프로그램제작비(b)	54,621	50,388	50,425	45,482	47,909	△6,712	△12.3
비중(b/a)	15.4%	16.3%	16.9%	14.8%	16.0%	-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EBS 유형자산 중 방송장비는 교육콘텐츠 제작에 직접 활용되는 핵심 자산임에도 EBS의 노후 자산의 82.3%가 방송장비에 집중되어 있음
- 2025년 말 유형자산 중 방송장비, 공기구 비품, 기계장치, 구축물의 80% 이상이 내용연수 경과 자산이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총액 1,098억원 중 방송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3%에 달함

[2025년 EBS 유형자산 명세서(취득가액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상각중 자산	내용연수 경과 자산(a)	합계(b)	상각완료 자산 비중(a/b)
건물	138,393	0	138,393	(0.0)
공기구비품	773	10,783	11,556	(93.3)
구축물	426	1,817	2,243	(81.0)
기계장치	52	6,633	6,685	(99.2)
방송장비	15,826	90,362	106,187	(85.1)
소프트웨어	7,914	0	7,914	-
차량운반구	233	202	436	(46.4)
토지	18,597	0	18,597	-
총합계	182,214	109,797	292,011	(37.6)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방송산업은 기술 진화와 시청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분야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설비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 규모는 최근 5년간 감가상각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감가상각을 통해 감소하는 자산 규모를 신규 투자로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현금흐름은 2023년 마이너스에서 2024년 178억원, 2025년 236억원으로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는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EBS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대비 설비투자 비율 및 영업현금흐름(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설비투자액	감가상각비	설비투자/감가상각비 비율	영업현금흐름
2021	59	105	56.3	44
2022	59	103	57.1	19
2023	34	94	36.7	△393
2024	25	59	42.1	178
2025	37	58	63.6	236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EBS는 최근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 외주제작 등 제작방식 변화와 함께 콘텐츠 제작 인프라 투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3. 한국교육방송공사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문제

가. 현 황

- 2025년 EBS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21년 이후 등락을 보였으나 2025년 말 기준 548억원으로 2021년 484억원 대비 63억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같은 기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 인원은 606명에서 58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32,215원에서 293,171원으로 증가함

[EBS 퇴직급여 충당부채(2021~2025)]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퇴직급여충당부채	48,420	50,488	47,882	54,208	54,811
대상 인원	606	635	629	584	588
1일 평균임금 ¹⁾	232,215원	244,821원	251,929원	292,709원	293,171원

주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25년 퇴직급여 지급액은 2021년 대비 약 2.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와 함께 향후 퇴직급여 관련 현금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EBS의 퇴직급여 지급액은 2021년 34.2억원에서 2025년 75.2억원으로 41.0억원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2년에는 명예퇴직 등의 영향으로 지급액이 68.4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오지은 예산분석관 (jieun.oh@assembly.go.kr, 6788-4684)

[EBS 퇴직급여 지급액(2021~2025)]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액 (B-A)
퇴직급여 지급액	3,418	6,837	5,702	6,613	7,522	4,104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EBS가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자산(단기금융자산)은 2021년 108.1억원, 2025년 115.0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20% 상당이며, 다만 EBS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 EBS의 현금성자산은 대부분은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가용자산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음

[EBS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단기투자자산(A)	10,814	24,209	10,917	11,200	11,500
퇴직급여충당부채(B)	48,420	50,488	47,882	54,208	54,811
적립율(A/B)	22.3	21.6	22.8	20.7	21.0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EBS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6호의 퇴직금제도를 선택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서는 일정 금액을 사 혹은 사외에 적립하는 사용자의 책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 이외 제도의 경우,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사외에 적립 혹은 납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구분	세부내용
제2조(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의7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에 납입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EBS는 향후 퇴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성자산 및 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할 의무가 없어 재무상태와 현금 유동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재원 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EBS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실제 퇴직급여 지급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별도 적립재원은 확인되지 않아 퇴직급여 지급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운영 현황 및 재정적 쟁점 분석

가. 현 황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이하 “GKL”이라 함)는 2005년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취득한 후 100% 자회사로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븐럭’ 브랜드의 3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설립 목적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외화 획득 및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공성을 갖춘 투명한 카지노 운영이며, 2006년 서울 2개소·부산 1개소가 순차 개장하였음
 - 기타공공기관이던 GKL은 2017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규율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상장 및 2010년 장내 매도를 거쳐 관광공사 보유지분이 100%에서 51%로 축소되었고, GKL은 상장회사의 규율과 공기업의 통제를 동시에 받는 혼합적 지위에 있음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지분 매각 연혁]

(단위: 주, %)

일자	구분	발행주식 총수	매각주식 수	관광공사 보유(비율)
상장 전	-	60,000,000	-	60,000,000 (100.0)
2009.11.16.	유가증권시장 상장	61,855,670	1,855,670	60,000,000 (97.0)
2009.11.16.	구주 매출	61,855,670	16,701,031	43,298,969 (70.0)
2010.12.10.	장내 매도	61,855,670	11,752,577	31,546,392 (51.0)

주: 신주 공모에 따른 희석효과 3.0%와 구주 매각분 46.0%를 합한 49.0%만큼 보유지분이 축소되었음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GKL의 재무실적은 코로나19 국면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나 2023년 흑자 전환한 이후 개선세를 이어가, 2025년 영업이익률 12.5%와 ROE 10.7%로 흑자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매출액은 2023년 회복 이후 3년간 연평균 3.2% 증가에 그쳐 정체 구간에 진입하였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도 투자로 환류되지 않고 유동자산에 적립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23~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4.2% 증가한 반면 투자활동 현금유출은 62.2% 축소되었고, 그 결과 유동자산 합계는 4,282억원까지 확대되었음
 - 유형·무형자산 합계(718억원)가 유동자산의 16.8%에 그치는 자산구조는 GKL이 자체 시설 없이 3개 영업장을 모두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에 기인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재무실적(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5,087	262,110	396,694	396,390	422,947
영업이익	△147,004	△14,795	50,931	38,323	52,685
당기순이익	△114,207	△23,539	43,634	32,824	46,983
자본총계	381,480	379,923	409,286	411,051	438,507
영업이익률	△172.8	△5.6	12.8	9.7	12.5
부채비율	37.9	58.8	54.8	48.4	47.0
ROE	△29.9	△6.2	10.7	8.0	10.7
영업활동 현금흐름	△131,495	45,856	84,257	71,189	104,729
투자활동 현금흐름	147,939	48,664	△49,110	△40,181	△18,548

주: 1.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2. 2025년 유동비율 243.6%, 이자보상배율 20.77배임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주요 쟁점

- 임차료는 매출 감소 시에도 축소되지 않거나 비례 축소에 그치는 상향 경직적 구조로 대안적인 임대차 방식의 고려가 필요함
 - 매출이 896억원까지 축소된 2021년에도 임차료 220.5억원이 지출되어 매출액의 24.6%를 점하였으며, 2021~2025년 매출이 4.7배 변동하는 동안 임차료는 단조 증가하였음
 - 3개 영업장의 임차료 조정방식은 협상·고정률·물가연동으로 상이하나 모두 인상만 가능한 일방향 구조임
 - 카지노업은 호텔 등의 '부대시설'로 입점하여야 하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시설자금 용자 대상에서 제외됨

[임차료 부담 추세(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카지노 매출액(A)	896	1,463	3,974	3,937	4,253
임차료(B)	220.5	233.7	238.5	246.2	248.6
임차료 부담률(B/A)	24.6	16.0	6.0	6.3	5.8

주: 2022년 기금 납부액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납부유예분의 소급납부가 포함됨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영업장별 임차료 및 조정방식(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 (A)	2022	2023	2024	2025 (B)	증감률 (B-A)	조정방식
강남코엑스점	147.2	148.6	154.3	160.3	161.2	9.5	매년 10월 협상 조정 ¹⁾
서울 드래곤시티점	52.5	64.2	62.6 ²⁾	63.6	64.5	22.9	매년 8.15.에 1.5% 고정 인상
부산롯데점	20.8	20.9	21.6	22.3	22.8	9.9	직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
총합	220.5	233.7	238.5	246.2	248.6	12.7	

주: 1) 강남코엑스점은 2025.10.4. 계약 만료 후 2026.8.21. 제3차 계약이 체결되어 2025.10.5. 이후 월임차료는 2026년 8월 소급 정산될 예정임

2) 2021.~2022. 서울드래곤시티점은 힐튼점 및 부속건물(메트로타워) 임차분을 포함하며, 2022.8.15. 신규 계약 체결로 연도 간 단순비교에 한계가 있음

1. 2026년 1~7월 매출은 강남코엑스점 1,365억원, 서울드래곤시티점 933억원, 부산롯데점 458억원임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비용의 하방 경직성¹⁾으로 영업이익은 매출 변동에 대해 약 7.3배의 민감도를 나타내므로, 계약 및 제도 차원의 하방 완충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홀드율이 2024년 수준으로 회귀하여 매출이 6.0% 감소할 경우 영업이익은 44.0% 감소하며, 홀드율이 1.0%p 추가 하락하면 영업이익은 6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²⁾
- 현행 임대차는 인상 일방향의 고정·물가연동 방식이지만, 국내외에서는 수요·매출에 연동하여 임대료가 양방향으로 조정되는 계약 방식이 이미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 시 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2년 12월 면세점 입찰공고에서 고정 최소보장액을 폐지하고 '여객당 임대료'(여객 수 × 사업자 제안 단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사례가 있음

1) 조업도가 감소할 때 비용이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는 현상으로, 매출 감소 국면에서 이익 감소를 증폭시키는 현상을 의미함

2) 드롭액(drop)은 고객이 게임 참가를 위하여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칩으로 교환한 금액의 합계이고, 홀드율(hold percentage)은 드롭액 가운데 카지노가 게임수입으로 확보한 금액의 비율을 뜻함. 게임수입 즉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드롭액에 홀드율을 곱한 값임

- 해외 카지노 임대차에서는 기본임차료에 매출 연동 변동임차료를 결합하고 물가연동 시에도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VICI-시저스 라스베이거스 마스터리스(Caesars Las Vegas Master Lease)와 VICI-시저스 리저널 마스터리스(Caesars Regional Master Lease) 사례가 대표적임
- 홀드율 하락 시나리오를 반영한 손익분기 드롭액 및 최소 확보 이용객 수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해야 할 것임

[홀드율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민감도(2025년 드롭액 고정, 추정)]

(단위: 억원, %)

시나리오	홀드율	카지노 매출	매출 증감률	영업 이익	영업이익 증감률
2025년 실적	11.49	4,253	-	526	-
5년 평균 회복	11.80	4,370	2.7	631	19.9
2024년 수준 회귀	10.79	3,996	△6.0	295	△44.0
1.0%p 추가 하락	10.49	3,883	△8.7	193	△63.4

주: 1. 드롭액을 불변으로 가정할 때 홀드율 1단위 변동이 유발하는 매출 변동이 임차료 등 고정비의 비탄력성을 매개로 영업이익에 증폭되어 전달되는 정도를 의미함

2. 드롭액(drop)은 고객이 게임 참가를 위하여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칩스로 교환한 금액의 합계이고, 홀드율(hold percentage)은 드롭액 가운데 카지노가 게임수입으로 확보한 금액의 비율을 뜻함. 게임 수입 즉 카지노의 총매출액은 드롭액에 홀드율을 곱한 값임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GKL이 제시한 중장기 목표는 2026년도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및 사행산업 규제 기조와의 정합성 검토가 요구됨

- GKL은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2030년 카지노 매출액 5,038억원(2025년 대비 18.5% 증가) 달성과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목표 40%를 상회하는 수준의 유지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함
 - 2030년 목표를 카지노 매출 단일지표가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도, 외화 획득액, 고객 국적 다변화 지수, 임차료·기금 합산 부담률 등 설립목적 및 비용구조와 직결되는 지표로 병기할 필요가 있음

- 재정경제부는 GKL을 포함한 7개 상장공기업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한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³⁾하여 2027년 상반기 2026년도 실적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배당 성향 유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자본배분에 관한 합리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함
- 2026년 5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에 따른 제도 개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행성 매출의 성장 목표와 사행산업 건전발전 규제 기조의 공존 간 균형 있는 기관 운영이 요구됨

3) 7개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함. 특히 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하여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함

※ 7개 상장공기업: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1-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의 공적 운영방식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분 51.0%를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3개 영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보유분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분은 2025년 말 기준 59.1%임
 - 설립 목적은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이라는 정책기능의 수행이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수익성 요구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음
 -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은 파라다이스·롯데관광개발 등 상장 민간사업자와 외국계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를 포함하여 복수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이 아니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아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주 구성(2021~2025)]

(단위: %, 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부문 비율	58.1	60.3	62.3	58.2	59.1
한국관광공사	51.0	51.0	51.0	51.0	51.0
국민연금공단	7.1	9.3	11.3	7.2	8.1
민간부문 비율	41.9	39.7	37.7	41.8	40.9
공공부문 보유주식 수	32,269,498	38,552,388	35,986,382	36,574,123	36,574,123
한국관광공사	31,546,392	31,546,392	31,546,392	31,546,392	31,546,392

주: 총 발행주식 수는 61,855,670주로 전 기간 동일함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 5월 22일 발표된 국가정상화계획 1차 과제에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가 포함되어, ‘1994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도에 대하여 허가 갱신 필요성 검토, 양도·양수 시 관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사회적 기여 확대’가 과제로 제시되었음

나. 주요 쟁점

- GKL의 설립 목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기능을 민간사업자가 이미 더 큰 규모로 수행하고 있어, 해당 기능만으로는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세브력의 매출액 점유율은 2024년 21.2%에서 2026년 18.9%로 하락하여 신규 복합리조트 2사(37.2%)의 절반 수준이며, 2024년 12.9%p였던 입장객 점유율 격차도 2026년 0.3%p로 축소됨
 - 상대 객단가지수는 세브력이 0.65로 시장평균의 65% 수준인 반면 민간 3사는 모두 1.0을 상회하여, 유치한 고객을 매출로 전환하는 수익 전환력에서도 열위에 있음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자별 점유율 현황(2024~2026)]

(단위: %)

구분	매출액 점유율			입장객 점유율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세브력 소계	21.2	18.8	18.9	35.5	32.1	29.3
강남	9.7	9.1	9.3	11.7	10.4	10.3
드래곤시티	8.3	6.7	6.5	18.0	16.4	13.6
롯데	3.2	3.0	3.1	5.8	5.3	5.4
파라다이스 소계	44.6	40.2	38.8	32.5	31.9	31.7
파라다이스시티	22.7	21.4	19.8	12.4	12.5	12.7
워커힐	17.6	15.1	14.0	14.9	13.6	12.4
부산	3.4	2.6	4.4	2.8	2.9	3.4
제주	0.9	1.1	0.6	2.4	2.9	3.2
신규 복합리조트 소계	26.5	35.6	37.2	22.6	27.7	29.0
드림타워	17.2	23.0	23.0	13.0	16.9	18.2
인스파이어	9.3	12.6	14.2	9.6	10.8	10.8
기타	7.7	5.4	5.1	9.4	8.3	10.0

주: 1. 기타는 인터볼고·세븐스타·랜딩(레스에이)·알펜시아·GONGZI·오리엔탈·제주션·골드마운틴을 포함함

2. 2026년은 연간 확정치가 아닌 누적 기준임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사업자군별 상대 객단가지수(2024~2026)]

(단위: 배)

구분	2024(A)	2025	2026(B)	증감(B-A)
세븐리 소계	0.60	0.59	0.65	0.05
파라다이스 계열 소계	1.37	1.26	1.22	△0.15
드림타워	1.32	1.36	1.26	△0.06
인스파이어	0.97	1.17	1.31	0.34

주: 상대 객단가지수 = 매출액 점유율/입장객 점유율 (1.0 미만은 입장객 1인당 매출이 시장평균 미달)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민간경쟁사는 호텔·복합리조트를 직접 보유하여 카지노 고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부대매출을 창출하는 반면, GKL은 3개 영업장 모두 호텔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에 한계가 있음
- 2025년 세븐리 3개 영업장의 매출 합계는 4,253억원으로 단일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의 매출 4,766억원에 미달하며, 서울드래곤시티점은 매출이 감소로 전환된 상황에서 임차 계약상 매년 1.5%의 고정 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음
 - 재무실적은 2023년 흑자 전환 이후 개선되어 2025년 영업이익률 12.5%, ROE 10.7%를 시현하였으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연평균 3.2% 증가에 그치고 투자활동 현금유출은 축소되고 있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재무실적(2021~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85,087	262,110	396,694	396,390	422,947
영업이익	△147,004	△14,795	50,931	38,323	52,685
영업이익률	△172.8	△5.6	12.8	9.7	12.5
ROE	△29.9	△6.2	10.7	8.0	10.7
투자활동 현금흐름	147,939	48,664	△49,110	△40,181	△18,548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영업장별 카지노 매출 및 비용 부담]

(단위: 억원, %)

구분	2024 매출	2025 매출	매출 증감률	2025 임차료	임차료 부담률
강남코엑스	1,802	2,056	14.1	161.2	7.8
서울드래곤시티	1,545	1,507	△2.5	64.5	4.3
부산롯데	590	691	17.1	22.8	3.3
총합	3,937	4,253	8.0	248.6	5.8
(드림타워)	-	4,766	-	-	-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해당 사업체 경영공시

□ 정부가 사행산업의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구조는 ‘국가정상화계획’의 공익성 강화 과제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재정경제부가 GKL을 포함한 7개 상장공기업에 대하여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주요 사업 지표의 30% 이상을 글로벌·민간기업 비교 지표로 설계한 것은 동 사업이 민간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역임을 시사함
 - 이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구별되는 어떠한 공적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공기업이 직접 수행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과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도, 외화 획득액, 고객 국적 다변화 정도 등 설립목적과 직결되는 지표를 설정하여 민간사업자와 차별화된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중독예방·치유 기여, 건전 영업 준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등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을 별도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상화계획의 공익성 강화 과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자체 이행계획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서울드래곤시티점의 임차 계약조건 재협상 등 구조적 열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여 기업가치가 추가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1. 농지연금의 가입 대기 관리 필요

가. 현 황

- 농지연금사업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¹⁾
- 농지연금 누적 가입 건수는 2021년 19,178건에서 2026년 8월 말 현재 31,020건으로 약 61.7% 증가함

[연도별 농지연금 가입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신규 가입 건수	2,080	2,530	2,882	3,115	2,015	1,300
누적 가입 건수	19,178	21,708	24,590	27,705	29,720	31,02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지연금사업의 예산액 역시 2021년 1,848억 1,500만원에서 2026년 2,766억 2,900만원으로 약 49.7% 증가하는 등 누적 가입자 증가와 함께 사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연도별 농지연금 예산액]

(단위: 백만원, %)

연도	2021(A)	2022	2023	2024	2025	2026(B)	증감률 (B-A)/A
예산액	184,815	240,751	263,060	262,561	274,547	276,629	49.7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광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

- 농지연금사업은 2023년까지는 가입 대기 없이 당해연도 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이후 대기자가 발생하기 시작함
 - 2024년에는 1,996건, 2025년에는 1,892건, 2026년 8월 말 현재에는 3,688건의 대기가 발생함

[농지연금의 연도별 대기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신청 건수	2,080	2,530	2,882	5,111	3,907	4,988
가입 건수	2,080	2,530	2,882	3,115	2,015	1,300
대기 건수	-	-	-	1,996	1,892	3,688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는 2024년 이후 가입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누적 가입자 증가에 따른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 소요 확대에 의해 신규 가입에 활용되는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농지연금사업의 예산액은 2021년 1,848억 1,500만원에서 2025년 2,745억 4,700만원으로 약 48.6%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기존가입자 지급액은 약 95.7% 증가하여 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음
 - 이에 따라 실집행액에서 기존가입자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4.4%에서 2025년 92.9%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신규가입자 지급액 비중은 11.1%에서 6.8%로 감소하였음
 - 이처럼 예산의 확대에도 신규 가입에 활용되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가입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가입 대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농지연금의 연도별 예산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률 (B-A)/A
예산액	184,815	240,751	263,060	262,561	274,547	48.6
실집행액	184,814 (100.0)	240,751 (100.0)	263,058 (100.0)	262,552 (100.0)	274,033 (100.0)	48.3 (-)
기존 가입자	130,086 (70.4)	144,112 (59.9)	169,445 (64.4)	206,723 (78.7)	254,607 (92.9)	95.7 (-)
신규 가입자	16,407 (8.9)	20,927 (8.7)	29,231 (11.1)	34,308 (13.1)	18,694 (6.8)	13.9 (-)
수시 인출액	38,321 (20.7)	75,712 (31.4)	64,382 (24.5)	21,521 (8.2)	732 (0.3)	△98.1 (-)

주: 수시인출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과 달리 수시인출형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으로 2023년 11월부터 신규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농지연금 가입 대기는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청 지역에 따라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026년 8월 말 현재 전체 농지연금 가입 대기자는 3,688명으로, 경북 930명, 경남 868명, 경기 829명인 반면, 제주는 41명, 전북은 61명에 불과하여 지역별 대기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농지연금의 지역별 대기현황]

(단위: 건)

지역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기 건수	3,688	829	449	221	169	61	120	930	868	41

주: 2026. 8월 말 기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별 신청 대비 가입률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2026년 8월 말 기준 전북은 신청자의 62.3%가 가입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신청 대비 가입률은 12.1%, 경남은 17.3%에 그치고 있음

[지역별 농지연금 신청 대비 가입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4			2025			2026.8.		
	신청 (A)	가입 (B)	B/A	신청 (A)	가입 (B)	B/A	신청 (A)	가입 (B)	B/A
경기	652	580	89.0	1,009	368	36.5	1,140	311	27.3
강원	511	167	32.7	290	126	43.4	511	62	12.1
충북	249	183	73.5	180	110	61.1	296	75	25.3
충남	509	397	78.0	367	302	82.3	358	189	52.8
전북	317	305	96.2	146	125	85.6	162	101	62.3
전남	415	352	84.8	226	179	79.2	258	138	53.5
경북	1,437	637	44.3	901	394	43.7	1,136	206	18.1
경남	908	401	44.2	701	354	50.5	1,049	181	17.3
제주	113	93	82.3	87	57	65.5	78	37	47.4
계	5,111	3,115	60.9	3,907	2,015	51.6	4,988	1,300	26.1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따라 동일한 시기에 농지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지역에 따라 실제 가입 가능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농지연금 이용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현행 농지연금의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이 최근의 가입수요와 대기자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농지연금사업은 매년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배분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농지연금의 지역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경기	65,349	80,082	82,767	82,394	83,236	82,163
강원	12,578	15,723	17,409	17,315	18,204	18,493
충북	9,621	11,837	12,530	14,457	14,765	14,638
충남	25,653	29,914	33,041	32,881	35,646	36,026
전북	10,183	13,726	16,603	15,038	16,399	16,161
전남	10,954	16,699	18,641	17,960	19,123	19,482
경북	21,559	32,594	37,939	40,926	42,686	43,123
경남	24,527	33,135	36,296	34,328	35,856	36,841
제주	4,391	7,041	7,832	7,253	8,118	8,209
(본사)	-	-	-	-	-	1,493
계	184,815	240,751	263,058	262,552	274,033	276,629

주: 1. 2021~2025년은 사업비 집행액을 가입자 관할 지역본부별로 분류한 수치(집행액)이며 2026년은 지역본부별 사업목표액(배분액)임

2. 본사 항목은 고액 수시인출형 가입자(기존)의 수시인출금 지급을 위한 본사 유보분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현행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은 전년도 가입실적을 60%, 지역별 사업환경을 40%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의 지역별 가입수요나 실제 대기자 규모는 배분 기준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가입수요와 대기자 현황이 지역별 예산 배분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지역별 대기 규모와 신청 대비 가입률의 편차가 지속될 수 있음

[농지연금 예산의 지역별 배정 기준]

(단위: %)

항목	내용	비중
과거 실적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가입실적	60
지역별 사업환경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수 및 소유농지면적 × 지역별 평균 농지가격	40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가입 대기 장기화로 연금 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시기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신규 가입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지역 간 가입 대기기간의 편차를 완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²⁾

2)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연금 가입대기 및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기 현황에 따라 지역 본부에 추가 예산을 배정할 계획임

1-2.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적격성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는 농림수산 분야의 정책자금이 관련 법령·훈령·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자금에 대해서는 시정·회수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하고 있음¹⁾
 -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는 당초 정책자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23년부터는 검사 대상이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정책자금까지 확대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농지관리기금에 대해서도 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의 주요 지적 유형은 취급 부적정, 부정수급, 중도회수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구분됨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의 주요 지적 사유]

지적유형	내용
취급부적정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자격, 지원대상 사업·농지, 지원한도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책자금을 지원한 경우
부정수급	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허위·위조 자료 제출, 사실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중도회수	정책자금 지원 이후 사망, 폐업·휴업, 사업포기 등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간 이전에 정책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
사후관리 부적정	정책자금 지원 이후 취급기관이 사업의 계속 여부,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담보·채권관리 등 필요한 사후관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나. 주요 쟁점

-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지관리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자금검사 결과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및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 취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
 - 2023~2025년 검사 결과, 총 69건, 160억 1,620만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68건이 취급 부적정, 1건이 사후관리 부적정에 해당함
 - 특히 취급 부적정 사례의 경우, 2024년에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에서만 40건, 121억 6,600만원 규모가 확인되는 등 지적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자금검사 지적 사항]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적유형	해당 사례	
			건수	금액
2023	경영회생 지원사업	취급 부적정	10	2,141
	농지연금사업	취급 부적정	4	126
2024	경영회생 지원사업	취급 부적정	40	12,166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취급 부적정	9	1,104
		사후관리 부적정	1	0.2
2025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취급 부적정	4	208
	경영회생 지원사업	취급 부적정	1	271
합계			69	16,016.2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구체적인 지적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대상 농지의 사업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사업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영회생 지원사업에서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거나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농지를 매입한 사례, 사업대상자의 부채 및 자산규모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적격성 확인 미흡 사례는 경영회생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적 사항의 발생 원인을 대부분 담당 직원의 착오로 설명하고 있으나, 여러 사업과 지역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보다는 내부 관리·검증체계의 미흡으로 볼 여지가 있음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책자금검사 주요 지적 사유]

연도	사업명	구체적 지적 사유	지역
2023	경영회생 지원사업	◦ 매입 가능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 ◦ 사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입	충북, 경북, 전남
	농지연금사업	◦ 농지연금 대상자의 영농경력 확인 부적정	전남
2024	경영회생 지원사업	◦ 매입 가능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 ◦ 사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입 ◦ 사업대상자의 부채 및 자산규모 미확인	경기, 충북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매입 가능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 ◦ 사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 ◦ 사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입 ◦ 사업자의 임대료 초과 수령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남
2025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매입 가능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 ◦ 사업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농지를 매입	전북, 경북
	경영회생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의 농지를 매입	충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정책자금 지원 결정과 관련된 사업별 자격요건의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적정 취급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원대상의 적격성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분양 실적 제고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지역에 미래전략산업 등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동북아 산업생산의 경쟁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사업면 적은 약 1,846ha, 총사업비는 2조 6,202억 6,400만원임

[새만금산업단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전북 군산시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사업기간	2008년 ~ 2030년 (23개년)				
사업면적	총 면적	산업물류	상업업무	주택건설	공공시설
	1,846ha	1,072ha	110ha	80ha	584ha
총사업비	2조 6,202억 6,400만원(국비 613억원)				
사업내용	산업·물류, 상업·업무, 주거 및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025년도 말 정산서」, 2025.12.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총 9개 공구로 구분하여 매립·조성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말 현재 1,189ha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이 중 887ha가 분양 가능한 면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나. 주요 쟁점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매립·조성사업의 진척에 따라 분양 가능한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분양실적은 이러한 공급 확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26년 6월 말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누적 분양면적은 532ha로, 전체 유상공급 대상면적 1,326ha의 40.1%, 현재 분양가능 면적 887ha의 60.0% 수준임
 - 특히 분양가능 면적은 2024년 633ha에서 2025년 887ha로 254ha 확대된 반면, 분양면적은 2023년 129ha에서 2024년 43ha, 2025년 58ha로 감소하여 분양실적이 공급 확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분양가능 면적 대비 누적 분양률은 2024년 74.2%에서 2025년 59.5%로 낮아졌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60.0% 수준임

[새만금산업단지 분양 현황]

(단위: ha, %)

연도	유상공급면적 (A)	분양가능면적 (B)	분양면적	누적 분양 면적 (C)	유상공급면적 대비 누적분양률 (C/A)	분양가능면적 대비 누적분양률 (C/B)
2021	1,326	633	30	236	17.8	37.3
2022	1,326	633	62	298	22.5	47.1
2023	1,326	633	129	427	32.2	67.5
2024	1,326	633	43	470	35.4	74.2
2025	1,326	887	58	528	39.8	59.5
2026.6.	1,326	887	4	532	40.1	60.0

주: 유상공급 면적은 전체 사업면적 중 산업·상업·주거용지 등 분양을 통해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면적이며, 분양가능 면적은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유상공급 대상면적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분양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사채 상환 및 이자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6월 말까지 총 8,740억원의 공사채를 누적 발행하였으며, 공사채의 미상환액은 2021년 2,370억원에서 2025년 4,4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6월 말에도 4,400억원 수준임
 - 공사채 이자 지급액도 2021년 50억원에서 2025년 108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도 6월까지 53억원의 이자가 지급됨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신규 발행액	3,640	-	700	-	2,900	1,500	-
미상환액(기말)	2,370	2,370	2,500	2,500	4,000	4,400	4,400
이자 지급액	186	50	51	65	64	108	53

주: 2020년까지의 신규 발행액 및 이자 지급액은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

-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의 분양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분양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회수 지연으로 인한 공사채 상환 및 이자 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1. 자회사 위·수탁계약금액 산정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식회사(이하 “자회사”라 함)를 설립하였음
 - 마사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 및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기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0호)에 근거하여 자회사와 수의계약 형태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위·수탁 범위는 경마공원·장외발매소·목장의 미화·경비 업무 및 건물·시설물·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일체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임
 - 2026년 계약은 위·수탁 대상 경마공원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됨
 - 계약금액은 매년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인 매출원가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20. 3.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평가 편람」(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모회사는 자회사의 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토록 하여 자회사의 인건비 증가는 원가항목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가산항목을 통해 모회사 부담으로 확대되는 구조임
- 마사회의 판매관리비 중 용역비는 2020년 711억원에서 2025년 900억원으로 26.6% 증가하였으며, 증가액 189억원의 93.8%인 177억원이 자회사용역비 증가분으로 자회사 위·수탁계약금액의 증가에 기인함

한주희 예산분석관 (hnjuhi@assembly.go.kr, 6788-4685)

- 자회사용역비는 설립 첫해인 2020년 577억원에서 2025년 755억원으로 30.8% 증가하였으며, 전체 용역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81.2%에서 83.9%로 2.7%p 상승함

[한국마사회 판매관리비 중 용역비 계정 추세(2021~2025)]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2025 (B)	증감률 (B-A)
자회사용역비(A)	57,708	59,247	61,705	67,191	71,878	75,454	30.8
전산운영	4,416	4,096	4,246	4,897	5,098	5,269	19.3
복지시설운영	2,252	2,279	2,408	2,588	2,723	2,856	26.8
발매운영	1,878	744	543	2,189	2,231	2,363	25.8
승마용역비	1,978	1,136	915	1,132	1,466	1,686	△14.8
기타용역비	2,823	1,767	2,008	2,279	2,637	2,340	△17.1
총합(B)	71,055	69,269	71,825	80,276	86,033	89,968	26.6
자회사용역비 비율(A/B)	81.2	85.5	85.9	83.7	83.5	83.9	2.7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자회사 「인사규정」이 근속만으로 보수가 상승하는 구조를 규정상 확정하고 있고, 이러한 자동 상승분이 원가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인사규정」 제22조는 현장직군의 직능단계 상승을 G1~G20단계 1년, G20~G30단계 2년마다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현장직 보수규정」 [별표 1]은 직능단계별 직능급을 정액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인사규정」 제29조는 미화·보안 직무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부직(2024.9.15.)은 정년 도달자를 G1 직능단계 계약직으로 1년간 채용하고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력의 자연감소 효과도 제한됨

- 2026년 1인당 「호봉상승」 항목은 282,681원으로 전년(61,396만원) 대비 360.4% 증가하였으며, 1인당 「직무가산급」은 2025년 1,267,124원에서 2026년 1,640,007원으로 29.4% 증가함
-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1인당 보전·조정수당은 2025년 243,021원에서 2026년 202,680원으로 16.6%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직무가산급 증가분(6억 2,073만원)이 감소분(4,549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총액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기본급 구성항목별 계상액 추세(2023~2026)]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A)	2024	2025	2026 (B)	증감률 (B-A)
직무급	33,701	35,538	36,823	38,266	13.5
호봉상승	12	89	87	416	-
정년퇴직 조정	-	-	△75	△64	-
직무가산급(고정)	1,095	1,548	1,792	2,412	120.3
보전·조정수당(정액)	1,076	639	344	298	△72.3
직책·자격·법정선임·직무수당	433	453	577	583	34.8
기본급 소계	36,316	38,266	39,547	41,912	21.1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초과근로수당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적이 증가하면 익년도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수탁자에게 초과근로를 억제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음

- 2023년 이후 원가계산서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75%, 100%, 30%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연장근로수당은 2022년 22억 2,200만원에서 2026년 31억 5,300만원으로 41.9%, 휴일근로수당은 9,6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129.2% 증가함

- 복리후생 항목의 1인당 단가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에는 건강검진비(1,471명 × 7만원, 1억 297만원)가 신설됨
 - 식대는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상여금은 연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복지포인트는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
- 퇴직급여충당금¹⁾은 2026년부터 산정기준이 ‘복지포인트 제외’에서 ‘복지포인트 포함’으로 변경되어, 산정방식의 변경만으로 계상액이 35.2억원에서 45.6억원으로 29.6%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²⁾
 - 모회사인 한국마사회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음

[복리후생 1인당 지급단가 추세(2022~2026)]

(단위: 만원, %)

구분	2022 (A)	2023	2024	2025	2026 (B)	증감률 (B-A)
식대(월)	13	15	15	15	15	15.4
명절상여금(연)	80	90	100	100	110	37.5
복지포인트(연)	40	40	40	50	50	25.0
서비스장려금(연)	100	100	100	100	100	-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결과적으로 자회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분이 자동 반영되는 구조로 인하여 마사회의 자회사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위·수탁계약금액 산정구조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퇴직급여충당금은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로 인식한 금액으로, 근로제공 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그 지급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임

2) 모회사에 따르면 원가검증 관련 회계법인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함

2-2. 종축개발사업의 발굴 성과 확산 및 정책효과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한국마사회는 국내 경주마의 유전능력 개량 및 농가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종축개발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1세마 조기 발굴·검증체계(K-Nicks)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은 매입 시점부터 국내 교배까지 최소 8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구조임

[종축개발사업 단계별 추진 구조]

단계	사업 내용	대상 마령	수익원
1단계 해외경주 출전	미국 현지 1~2세마 매입 후 현지 경주 출주	매입 1~2세, 출주 2~4세	경주상금
2단계 해외종마 검정	미국 현지 씨수말 데뷔 및 교배 실적 추적	5~8세	교배료
3단계 국내교배 지원	국내 도입 후 국산마 생산 지원	9세 이후	국산마 생산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은 말 구매(자본예산)와 보유마 운영(비용예산)으로 구분되고, 수익은 경주상금과 교배료로 구성되며 매각·기증 등 처분에 따른 손익은 별도 계상되지 않음
- 공단은 K-Nicks를 활용하여 취득원가 1억 100만원의 개체(닉스고)로부터 162억 6,1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6년 7월까지 12개 연도 누적 수지도 25.2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흑자는 2019년·2021년·2023년 3개 연도에 한정되고 12개 연도 중 9개 연도에서 수익이 집행액에 미달하였으며, 2024년 이후(2026년 7월 기준)는 3년 연속 적자로 수지구조가 특정 연도에 의존하고 있음

[종축개발사업 예산·집행 및 수지 현황(2015~2025)]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수익 (C)	수지 (C-B)
2015	623	362	58.1	-	△362
2016	1,373	1,355	98.7	-	△1,355
2017	1,268	1,479	116.6	-	△1,479
2018	1,427	1,268	88.9	511	△757
2019	1,960	1,010	51.5	1,112	102
2020	1,008	846	83.9	718	△128
2021	653	3,064	469.2	8,687	5,623
2022	2,125	1,195	56.2	803	△392
2023	2,643	1,133	42.9	4,393	3,260
2024	1,479	1,485	100.4	990	△495
2025	1,899	1,368	72.0	315	△1,053
총합	16,458	14,565	88.5	17,529	2,964

주: 1. 2026년 7월까지 포함한 누적 기준으로는 예산 180.5억원, 집행 152.4억원(집행률 84.4%), 수익 177.5억원, 누적 수지 25.2억원임

2. 2021년 집행 30억 6,400만원은 경주상금 연동비용(출전비용, 미국세금 등) 증가분이 포함됨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12년간 누적 수익이 닉스고 1두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의 실적만으로는 K-Nicks 선발기술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닉스고를 제외한 30두는 취득원가 대비 회수율이 45.1%로 최근 5년 보유마 운영비 34.6억원을 반영하면 회수율은 20.2%로 하락함
- 닉스고 수익이 집중된 2021년(56.2억원)과 2023년(32.6억원)을 제외하면 누적 수지는 △63.6억원 적자임
- 발굴마 31두 중 1승 이상 기록마는 12두(38.7%)이며 출전 무승 10두(32.3%), 출전 이력 전무 9두(29.0%)로 검증 단계 통과율이 저조함
- 정책목적인 우수 유전자의 국내 환류 측면에서도 국내 씨수말로 전환된 4두는 모두 2015~2017년 매입마이며, 2019년 이후 매입한 11두 중 국내 종축자원으로 전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2022년 이후 매입 5두는 검증 중)

[닉스고(Knicks Go) 및 기타 발굴마의 성과 비교(2015~2025)]

(단위: 두, 백만원, %)

구분	두수	취득원가 (A)	수익 (B)	회수율 (B/A)	수익비중
닉스고	1	101	16,261	16,100.9	92.8
닉스고 외 발굴마	30	2,811	1,268	45.1	7.2
총합	31	2,911	17,529	602.2	100.0

주: 취득원가 기준이며 보유마 운영비 및 구매 부대비용은 미반영됨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매입 두수 및 마필별 매입가·경주성적·처분 결과]

매입연도	매입두수	마명	매입가	경주성적 ¹⁾	처분결과
2015	3두	제이에스초이스	87,548,778원	17(1/2/1)	국 씨수말
		Return in Glory	70,038,295원	10(0/1/2)	Ⓜ ²⁾ 기증
		빅스	58,379,033원	3(0/2/0)	국 씨수말
2016	6두	K Wave	98,383,857원	5(1/2/0)	폐사
		미스터크로우	184,469,733원	16(4/3/1)	국 씨수말
		Mireuon	56,048,931원	10(0/0/0)	Ⓜ 기증
		K Star	168,146,793원	1(0/0/0)	Ⓜ 기증
		Vitsal	70,784,400원	13(1/3/2)	Ⓜ 기증
		Awesome Blue	106,176,600원	-	Ⓜ 기증
2017	6두	K Choice	156,416,297원	10(4/1/0)	Ⓜ 매각
		닉스고	100,680,616원	25(10/4/1)	국 씨수말
		Giant K	86,793,635원	5(0/0/1)	Ⓜ 기증
		Poutycat 자마	31,245,708원	-	Ⓜ 매각
		Flashy Four 자마	46,289,939원	-	Ⓜ 매각
		Bless 자마	30,088,460원	-	Ⓜ 매각
2019	2두	K Rules	59,998,984원	17(0/1/3)	Ⓜ 기증
		Good First	77,998,680원	10(1/2/0)	Ⓜ 매각
2020	1두	Knicks Front	232,921,000원	7(1/0/0)	Ⓜ 매각
2021	1두	Knicks Story	113,957,250원	10(3/3/0)	Ⓜ 매각

매입연도	매입두수	마명	매입가	경주성적 ¹⁾	처분결과
2022	5두	Knicks Gate	129,321,000원	12(1/2/1)	보유(훈련)
		Knicks Hero	64,660,500원	1(0/0/0)	㉠ 기준
		Knicks Code	71,845,000원	1(0/0/0)	㉠ 기준
		Knicks Storm	50,291,500원	7(1/1/1)	㉠ 기준
		Acquainted 자마	57,476,000원	-	폐사
2023	3두	Knicks Glory	148,436,200원	12(3/1/1)	보유(훈련)
		Knicks Star	53,976,800원	-	㉠ 매각
		Knicks Nova	47,229,700원	-	㉠ 기준
2024	2두	Essence of Knicks	201,529,360원	1(0/0/0)	보유(휴양)
		Seoul Tariff	94,047,035원	-	㉠ 매각
2025	2두	Knicks Blitz	71,035,663원	-	보유(훈련)
		Knicks Warrior	85,240,263원	1(0/0/0)	보유(훈련)

주: 1) '출전경기 수(1등 입상/2등 입상/3등 입상)'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제이엑스초이스는 17번의 경기에 출전하여 1등 1번, 2등 2번, 3등 1번의 입상을 하였음

2) 미국을 지칭함

자료: 한국마사회

□ 말 구매 자본예산은 집행률이 하락하고 보유마 운영비는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 발굴사업에서 관리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최근 5년 말 구매 집행률은 71.8%로 5개 연도 모두 90%에 미달하고 2025년에는 51.8%까지 하락함
- 발굴체계의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조기 발굴을 통한 예산절감'이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말 구매 두수, 예산 편성·집행 및 구성비(2015~2025)]

(단위: 백만원, %)

연도	편성(A)	집행(B)	잔액(A-B)	집행률(B/A)	집행구성비
2021	200	126	74	63.2	24.4
2022	597	455	142	76.2	47.5
2023	400	302	98	75.5	28.3
2024	400	339	61	84.6	27.4
2025	380	197	183	51.8	17.9
총합	1,977	1,419	559	71.8	29.1

자료: 한국마사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사업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해 온 닉스고의 교배가 2026년 국내 전환하였으나, 후속 씨수말 승계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우수 유전자의 국내 환류를 통한 국산 경주마 개량 및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있음
 - 국내 도입 종마가 생산한 자마의 경주성적, 경매가격, 생산농가의 소득 변화 등 정책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무성과 외의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선발기술의 유효성과 정책효과를 각각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K-Nicks로 선발한 마필과 비교집단(동일 시기·유사 가격대의 비선발마 등) 간 경주성적·수익 실현률을 대비하는 성과분석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선발기술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매입 코호트별 적중률을 산출해야 할 것임
 - 종축개발사업 자마의 경주성적과 경매가격, 생산농가 소득 변화 등 정책목적 관련 지표는 조사되고 있으나 동 지표에 대한 목표수준과 달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축적되는 지표가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나 종마 도입 규모의 조정 판단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3-1. 인수 비축기지의 지속적 적자 개선 노력 필요

가. 현 황¹⁾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함)는 정부의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에 따라 기존 정부 소유의 비축기지 6개소를 인수하여 정부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은 정부 비축기지의 시설 노후화 및 전국 분산으로 인한 물류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의 비축기지를 통·폐합하여 4개의 거점지역에 신축 비축기지를 조성한 사업임
- aT는 2019년 청주·회덕·전주·광주·학장·노포의 노후 비축기지 6개소를 인수하였음
 - 인수한 비축기지의 총 대지면적은 7만 8,238㎡, 보관 가능 면적은 1만 4,863㎡, 보관능력은 1만 7,870톤으로 인수 이후에도 밀, 콩, 콩나물콩, 참깨, 맷쌀, 고추 등 정부 비축농산물의 보관에 활용되고 있음

광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1) 현재 정부 비축기지는 총 14개소로, 이하에서는 정부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에 따라 aT가 인수한 비축기지 6개와 신축 비축기지 4개를 분석대상으로 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한 정부 비축기지 현황]

(단위: ㎡, 톤)

기지명	취득 연도	대지 면적	보관가능 면적	보관 능력	주요 비축 품목
청주	1973	10,488	2,330	3,064	밀, 밀가루, 참깨, 콩, 메밀 등
회덕	1973	18,811	3,623	4,417	고추, 멥쌀, 밀, 배추, 참깨, 콩, 콩나물콩 등
전주	1986	9,836	2,029	2,487	멥쌀, 밀, 참깨, 콩, 콩나물콩, 메밀, 배추 등
광주	1973	16,678	2,607	2,994	무, 고추, 마늘, 멥쌀, 밀, 양파, 참깨, 콩, 콩나물콩 등
학장	1974	11,207	2,162	2,482	멥쌀, 콩, 콩나물콩, 고추 등
노포	1974	11,218	2,112	2,426	고추, 마늘, 멥쌀, 참깨, 콩, 콩나물콩 등
합계		78,238	14,863	17,870	-

주: 인수 비축기지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 전산화 이전 건축된 건물로 건축준공연도 등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 취득연도로 작성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정부 비축기지의 취득에 따른 투자 비용과 용자금 상환 등으로 aT의 재무 부담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aT가 정부로부터 기존 비축기지 6개소를 인수하는 데 소요된 금액은 토지·건물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총 788억 1,600만원임

[비축기지 인수 소요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청주	회덕	전주	광주	학장	노포
토지	70,389	4,814	7,795	3,403	17,522	28,466	8,389
건물	6,189	708	879	979	856	1,385	1,382
공작물	140	13	9	60	-	29	29
유형자산	337	56	49	58	97	49	28
취득세 등	1,761	127	199	101	423	686	225
합계	78,816	5,718	8,931	4,601	18,898	30,615	10,053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 가운데 자체재원은 44억 8,500만원이고, 나머지 743억 3,100만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함) 용자를 통해 조달함

[비축기지 인수 자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비고
자체조달	4,485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자	74,331	대출금리 연 1.25%, 10년 거치 10년 상환
합계	78,816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용자금 상환을 위해 aT는 2019년부터 2026년 7월 말까지 65억 1,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향후 잔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822억 2,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비축기지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예정임

[비축기지 인수 용자금의 기간별 상환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기납부금액	향후 납부 예정 금액		합계
	2019~2026	2027~2029	2030~2039	
원금	-	-	74,331	74,331
이자	6,512	1,343	6,549	14,404
합계	6,512	1,343	80,880	88,73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인수 비축기지의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18억~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운영수익만으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인수 비축기지의 손익 현황(2020~2025)]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익 (A)	금액	1,707	1,794	1,594	1,781	2,205	2,227
비용 (B)	용역비 (냉동, 경비, 미화)	1,883	1,730	1,757	1,766	1,921	1,994
	시설유지	134	220	215	226	234	228
	전력수도	277	244	229	259	285	284
	세금과공과	143	182	120	109	108	108
	보험료	90	212	223	211	222	83
	차입금 이자	929	929	929	929	929	929
	감가상각비	326	329	376	398	389	389
	합계	3,782	3,846	3,849	3,898	4,088	4,015
손익(A-B)		△2,075	△2,052	△2,255	△2,117	△1,883	△1,788

주: 6개(청주, 학장, 광주, 전주, 노포, 회덕) 비축시설의 합계액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aT는 인수 비축기지의 시설별 손익과 적자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손실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2. 위탁 비축기지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정부의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에 따른 신축 비축기지는 청원, 안심, 장성, 부산 4개 권역에 조성되었으며, aT가 위탁관리하고 있음
 - 신축 비축기지의 총 대지면적은 13만 7,939㎡, 보관 가능 면적은 2만 1,537㎡, 보관능력은 2만 4,734톤이며, 각 비축기지에는 콩나물콩, 콩, 참깨, 밀, 멥쌀 등 정부 비축 주요 품목이 보관되고 있음

[신축 비축기지 현황]

(단위: ㎡, 톤)

기지명	준공 연도	대지 면적	보관가능 면적	보관 능력	주요 비축 품목
청원	2016	27,660	4,898	5,625	콩나물콩, 콩, 참깨, 밀, 멥쌀 등
안심	2016	33,126	5,732	6,583	멥쌀, 참깨, 콩나물콩, 콩, 밀 등
장성	2017	45,567	5,181	5,950	밀, 멥쌀, 참깨, 콩나물콩, 콩(정선), 무 등
부산	2018	31,586	5,726	6,576	멥쌀, 콩나물콩, 밀, 참깨, 콩 등
합계		137,939	21,537	24,734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나. 주요 쟁점

- 신축 비축기지의 활용률은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aT가 인수한 기존 비축기지의 활용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비축기지의 활용률을 살펴보면, 신축 비축기지는 2019년 평균 87.4%에서 2025년 평균 60.5%로 26.9%p 하락하였으며, 기존 비축기지는 동일 기간 평균 77.8%에서 113.3%로 35.5%p 증가하였음

- 특히 2023년부터는 기존 비축기지의 활용률이 신축 비축기지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비축기지의 현대화·광역화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신축 시설보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에 비축물량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019~2025 비축기지별 활용률 현황]

(단위: 톤, %)

구분	기지명	보관능력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축	청원	5,625	45	69	92	94	87	85	67
	안심	6,583	82	55	86	101	71	52	53
	장성	5,950	123	91	94	85	60	48	63
	부산	6,576	97	121	99	60	69	53	60
	평균		87.4	84.4	92.7	84.7	71.5	58.8	60.5
기존	청주	3,064	65	90	63	31	29	22	36
	회덕	4,417	63	82	99	100	80	100	97
	전주	2,487	91	127	89	47	106	96	110
	광주	2,994	89	86	94	87	98	140	158
	학장	2,482	105	85	123	136	126	124	153
	노포	2,426	66	54	63	41	152	161	148
	평균		77.8	86.9	89.0	75.6	94.1	104.4	113.3

주: 1. 활용률은 기지별 보관능력 대비 연평균 재고량 기준임

2. 보관능력은 저온은 마늘(3.79톤/3.3㎡(1평)), 방열은 참깨(4.34톤/3.3㎡(1평)) 적재 기준이며 실제 보관 품목의 적재 기준에 따라 보관 가능 물량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 평균 활용률은 각 기지의 보관능력을 가중치로 산정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이 신축 비축기지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노후화된 기존 비축기지의 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신축 비축기지의 조성 및 운용 필요성을 저해하고 비축기지 운용 전반의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aT는 비축품목별 보관기간과 입·출고 특성, 비축기지의 위치 및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비축기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3-3.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aT는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활성화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011년 10월 중국 칭다오에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를 설립하였음
 - 동 법인은 aT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 냉장·냉동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농수산물식품 공동물류, 콜드체인 운송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설립자금은 총 205억 7,000만원으로, 이 중 200억원은 농안기금의 융자, 5억 7,000만원은 국고보조를 통해 조달함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설립 자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비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	20,000	무이자, 1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국고보조	570	-
합계	20,570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물류센터의 총 면적은 1만 3,669㎡이고, 창고시설은 저온창고 5,643㎡와 상온창고 5,971㎡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보관능력은 4,880PLT임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시설 현황]

구분	합계	창고동 (3,519평)		사무동	기타 (변전실 등)
		A동(저온)	B동(상온)		
면적	13,669㎡ (4,142평)	5,643㎡ (1,710평)	5,971㎡ (1,809평)	1,831㎡ (555평)	224㎡ (68평)
보관능력	4,880PLT	1,840PLT	3,040PLT	-	-

주: PLT(Pallet)란 여러 상품을 일정 단위로 모아 보관·운송하기 위한 받침(적재 단위)을 말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칭다오 aT물류센터의 활용률이 50~70%대에 머무르고 있어, 물류센터의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연도별 물류센터의 전체 활용률은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5년 평균 약 67.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상온 창고의 평균 활용률은 약 85.2%인데 반해 동일 기간 저온 창고의 활용률은 약 37.0%에 불과함
 - aT는 2020~2022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과 수입 냉장·냉동식품에 대한 방역·통관 강화, 2024년 이후의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현지 바이어의 재고 축소 등을 활용률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최근 5년간 활용률]

(단위: PLT,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합계 (①+②)	보관능력	4,880	4,880	4,880	4,880	4,880	4,880
	이용량	3,498	2,784	3,598	3,308	3,242	3,286
	활용률	71.7	57.0	73.7	67.8	66.4	67.3
저온 (냉동, 냉장) (①)	보관능력	1,840	1,840	1,840	1,840	1,437	1,759
	이용량	685	546	505	661	786	637
	활용률	37.2	29.7	27.4	35.9	54.7	37.0
상온 (②)	보관능력	3,040	3,040	3,040	3,040	3,443	3,121
	이용량	2,813	2,238	3,093	2,647	2,456	2,649
	활용률	92.5	73.6	101.7	87.1	71.3	85.2

주: 1. 활용률은 전체 보관능력 대비 실제로 사용된 보관실적의 비율을 말함

2. 2025년의 경우 일부 저온시설을 상온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보관능력이 변경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물류센터의 낮은 활용률은 투자된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aT는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물류 수요를 발굴하는 등 물류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다오 aT물류유한공사는 최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함

- 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2025년 매출액은 182억 5,3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81.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9.3% 감소하였음
 - 이에 대해 aT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수출지원 위탁사업과 온라인 한국식품관의 매출 비중 확대 및 물류센터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함

[청다오 aT물류유한공사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률 (B-A)/A
매출액	10,074	11,480	11,624	14,703	18,253	81.2
영업이익	254	229	96	198	293	15.4
당기순이익	428	429	265	371	260	△39.3
자산	22,043	21,879	22,234	23,868	24,292	10.2
부채	2,238	2,213	2,385	1,331	1,095	△51.1
자본	19,805	19,666	19,850	22,537	23,198	17.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청다오 aT물류유한공사는 기존 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함께 제고하는 한편, 대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필요가 있음

4-1.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의 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라 함)는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여 조성한 모태펀드로, 모태펀드 출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사업임
- 2010년 출범 이후 현재(2026년 7월 말)까지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에 총 8,167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총 159개, 2조 6,759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이 결성됨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계
농어촌구조개선평의회계	507	-	-	-	-	-	-	-	-	-	-	-	-	-	-	550	500	1,55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500	500	500	600	-	-	-	-	-	-	-	-	-	-	-	-	2,100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	-	-	-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	-	3,400
수산물발전기금	-	-	-	-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70	-	1,1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3	-	-	-	-	-	-	-	-	-	-	-	-	-	-	-	-	0.3
계	507.3	500	500	500	700	600	400	300	200	270	420	470	470	470	740	620	500	8,167.3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농식품 모태펀드의 운용계획 수립, 출자사업 공고 및 투자조합 심사·선정, 농식품 투자조합의 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함¹⁾

곽보영 예산분석관 (bykkwak@assembly.go.kr, 6788-4681)

□ 투자조합은 존속기간²⁾이 만료된 경우 해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산 후 보유 투자자산을 회수하고, 회수 재원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등 청산 절차를 거쳐 펀드 운용을 종료함

- 2025년 말 기준 총 31개 투자조합이 청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총 결성금액은 4,935억원으로 이에 따른 전체 투자조합의 내부수익률(IRR)은 5.59%임
 - 개별 투자조합별로는 내부수익률의 편차가 크고 일부 투자조합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분야별로는 농식품 일반펀드 14개, 수산 일반펀드 4개, 특수목적펀드 13개(8대 프로젝트 2개, 소규모 경영체 5개, 수출 3개, 6차 산업화 2개, 스마트팜 1개)가 청산되었음³⁾

1)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펀드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8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규약으로 정함

3)

구분		투자 분야
농식품 일반펀드		농식품산업 분야 전반
수산 일반펀드		수산업·수산식품 분야 전반
특수목적펀드	8대 프로젝트	대규모농어업, 첨단온실, R&D, 식품클러스터, 원양어선신조, 종자(묘)업, 염산업, 한식세계화
	소규모경영체	영세·소규모 농식품 경영체
	수출	농식품 수출·해외진출 기업
	6차 산업화	생산·가공·유통·서비스 융복합 기업
	스마트팜	ICT·자동화 등을 접목한 농업 및 관련 기업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청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명	존속기간	결성 금액	내부 수익률
일반 펀드 (18)	농식품 일반 (14)	그린농림수산물투자조합	`11.04.07.~`18.05.31.	200	9.69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11.11.25.~`18.07.17.	170	16.99
		AJU-Agrigento1호투자조합	`11.03.17.~`18.11.30.	200	31.49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11.06.08.~`19.01.14.	200	19.98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11.07.12.~`19.08.30.	200	5.61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1.07.12.~`19.10.25.	200	0.02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12.07.10.~`19.12.19.	160	7.71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13.08.29.~`21.08.31.	150	4.85
		나우농식품 투자펀드2호	`12.07.11.~`22.07.27.	160	4.63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	`12.09.14.~`22.12.21.	160	22.85
		동양 농식품 2호 투자펀드	`13.09.02.~`23.05.24.	135	11.61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11.04.08.~`23.12.29.	250	△7.93
		이앤 에이비에프 투자조합	`15.01.02.~`24.01.19.	290	1.09
		세종 농식품바이오 투자조합 1호	`13.09.25.~`25.11.10.	115	△1.67
	수산 일반 (4)	IDV-IP수산전문투자조합	`13.07.09.~`21.11.24.	150	8.35
		캐피탈원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11.07.26.~`25.04.04.	200	△5.6
		캐피탈원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2호	`14.07.29.~`25.12.26.	150	△6.19
		캐피탈원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3호	`15.07.21.~`25.12.26.	150	△7.34
특수 펀드 (13)	8대 프로젝트 (2)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11.04.04.~`18.06.28.	320	4.15
		미래에셋 애그로 프로젝트 투자조합	`11.07.12.~`22.12.21.	200	11.96
	소규모 경영체 (5)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2.07.10.~`20.07.17.	100	△1.62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14.10.27.~`21.03.31.	100	1.63
		유큐이피농림수산물투자조합 제1호	`12.07.11.~`21.12.24.	100	0.29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3.07.04.~`23.06.30.	100	△6.14
		SB프로젝트 투자조합	`15.08.17.~`24.09.13.	100	△2.57
	수출 (3)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15.07.17.~`23.09.25.	100	0.14
		포스코농식품수출투자조합	`16.07.26.~`24.12.23.	100	12.78
		AJ-세종 농식품수출육성펀드	`14.11.27.~`24.12.31.	130	△0.82
	6차 산업화 (2)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16.07.19.~`24.07.16.	95	△9.45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14.12.30.~`25.11.20.	100	△7.97
	스마트팜 (1)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	`16.07.19.~`25.12.05.	150	22.39
합계(31)				4,935	5.59

주 1. 2025. 12. 31. 기준으로 청산된 펀드임

2.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의 경우, 추가출자금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결성 후 1년 이내 해산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상향 검토 필요⁴⁾

- 농식품 모태펀드의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무투자비율은 투자조합이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하는 최소 비율임
 - 이는 농식품 분야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액의 60% 이상을 해당 투자 분야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함⁵⁾⁶⁾⁷⁾
 - 청산된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은 총 3,016억원을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여 4,008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회수율은 132.9%임

4) 이하에서는 청산된 투자조합 중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농식품계정)의 투자성과를 중심으로 의무투자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함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업무의 집행 등)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6) 의무투자비율은 자펀드별 정책 목적에 따라 별도의 투자대상 및 투자 비율이 설정될 수 있음

7) 농식품 모태펀드는 소규모경영체 등을 투자분야로 하는 일부 특수목적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투자분야의 의무투자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농식품 투자를 촉진하였음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농식품 경영체 투자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명	납입 금액	농식품 경영체 투자 ¹⁾			
				의무투자 비율	금액 (A)	회수금액 (B)	회수율 (B/A)
일 반 펀 드	농식품 일반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200	60	130	221	170.0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170	60	108	160	148.1
		AJU-Agrigento1호투자조합	200	60	120	338	281.7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200	60	121	108	89.3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188	60	120	183	152.5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64	60	151	167	110.6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160	60	102	170	166.7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150	60	102	101	99.0
		나우농식품 투자펀드2호	160	60	101	145	143.6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	128	60	102	128	125.5
		동양 농식품 2호 투자펀드	135	60	82	115	140.2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200	60	179	88	49.2
		이앤 에이비에프 투자조합	290	60	174	147	84.5
		세종 농식품바이오 투자조합 1호	115	60	70	84	120.0
	소계		2,460	-	1,662	2,155	129.7
특 수 목 적 펀 드	8대 프로 젝트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266	100	250	327	130.8
		미래에셋 애그로 프로젝트 투자조합	160	100	160	320	200.0
	소규모 경영체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00	100	97	99	102.1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90	100	82	98	119.5
		유류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제1호	100	100	86	94	109.3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00	100	81	54	66.7
		SB프로젝트 투자조합	100	100	80	50	62.5
	수출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80	100	80	100	125.0
		포스코농식품수출투자조합	100	100	95	172	181.1
		AJ-세종 농식품수출육성펀드	104	100	104	114	109.6
	6차 산업화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83	100	35	9	25.7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100	100	84	39	46.4
	스마트팜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	150	100	120	377	314.2
	소계		1,533	-	1,354	1,853	136.9
	합계			3,993	-	3,016	4,008

주: 1) 규약에 따른 주목적 투자 기준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개별 투자조합별로도 전체 27개 중 19개(70.4%)가 투자금액 이상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7개(25.9%)는 회수율이 150% 이상으로 나타남

[농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회수율 구간별 현황]

(단위: 개, %)

회수율	100%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합계
투자조합 수	8	12	4	3	27
비중	29.6	44.4	14.8	11.1	100.0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이러한 회수실적을 고려할 때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반드시 투자조합의 회수성과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민간의 자본 유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식품 경영체로의 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정책목적과 청산된 투자조합의 성과, 투자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식품 경영체의 의무투자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비목적 투자의 효율적 활용 필요

- 일반펀드의 비목적 투자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반펀드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의무를 충족한 범위 내에서, 운용의 자율성과 위험 분산 등을 위해 농식품 경영체 외의 투자처에 대한 비목적 투자가 가능함
 - 청산된 일반펀드 18개의 비목적 투자실적을 보면, 총 672억원을 투자하여 1,614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회수율은 240.2%임
 -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과 솔리더스 글로벌농식품바이오 투자펀드 1호의 비목적 투자 회수율은 각각 592.9%, 580.0%였으며,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농림축산투자조합도 451.9%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함

- 그러나 일부 펀드는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한 이후에도 비목적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적 투자성도가 저조한 펀드의 경우, 비목적 투자를 통해 전체적인 회수성도를 보완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 미시간글로벌 식품산업 투자조합과 캐피탈원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은 주목적 투자 회수율이 각각 49.2%, 66.9%에 그쳤음에도 비목적 투자를 실시하지 않음

[농식품·수산 분야 일반펀드의 비목적 투자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명	납입 금액	주목적 투자			비목적 투자		
			금액 (A)	회수금액 (B)	회수율 (B/A)	금액 (C)	회수금액 (D)	회수율 (D/C)
농 식 품 일 반	그린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200	130	221	170.0	45	57	126.7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170	108	160	148.1	35	203	580.0
	AJU-Agrigentol1호투자조합	200	120	338	281.7	58	172	296.6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200	121	108	89.3	52	235	451.9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188	120	183	152.5	56	70	125.0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64	151	167	110.6	12	18	150.0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160	102	170	166.7	35	39	111.4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150	102	101	99.0	40	91	227.5
	나우농식품 투자펀드2호	160	101	145	143.6	41	60	146.3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	128	102	128	125.5	28	166	592.9
	동양 농식품 2호 투자펀드	135	82	115	140.2	50	150	300.0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200	179	88	49.2	-	-	-
	이앤 에이비에프 투자조합	290	174	147	84.5	97	168	173.2
	세종 농식품바이오 투자조합 1호	115	70	84	120.0	35	26	74.3
	소계	2,460	1,662	2,155	129.7	584	1,455	249.1
수 산 일 반	IDV-IP수산물전문투자조합	135	90	103	114.4	33	95	287.9
	캐피탈원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200	160	107	66.9	-	-	-
	캐피탈원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2호	150	139	93	66.9	25	28	112.0
	캐피탈원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3호	126	91	42	46.2	30	36	120.0
	소계	611	480	345	71.9	88	159	180.7
합계		3,071	2,142	2,500	116.7	672	1,614	240.2

주: 비목적 투자는 주목적 의무투자 비율인 60%를 충족하고 남은 범위 내에서 가능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주목적 투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비목적 투자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조합의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청산된 일부 투자조합에서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가 투자로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투자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미투자금액은 투자조합에 실제 납입된 출자금 중 청산 시까지 주목적 또는 비목적 투자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⁸⁾
 - 청산된 투자조합의 미투자금액은 452억원으로 전체 납입금액 4,604억원의 9.8%이며 일부 투자조합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미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캐피탈원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SB프로젝트 투자조합 및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은 각각 20.0%의 미투자비율을 보였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투자조합이 전체 평균을 상회함
 - 투자조합 운용에 따른 관리보수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투자금 회수 등을 감안할 때 투자 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농식품 모태펀드는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납입자금이 청산 시까지 투자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의 투자 효과와 자금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농식품 자펀드의 미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펀드명	납입금액 (A)	미투자 금액 (B)	미투자 비율 (B/A)
일반펀드	농식품 일반	그린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200	25	12.5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170	27	15.9
		AJU-Agrigento1호투자조합	200	22	11.0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200	27	13.5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188	12	6.4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64	1	0.6

8)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미투자금액에는 주목적·비목적 투자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 외에 조합의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단위: 억원, %)

구분		펀드명	납입금액 (A)	미투자 금액 (B)	미투자 비율 (B/A)
일반펀드	농식품 일반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160	23	14.4
		메가농식품투자조합 1호	150	8	5.3
		나우농식품 투자펀드2호	160	18	11.3
		노루-미래에셋 애그로스타프로젝트 투자조합	128	-	-
		동양 농식품 2호 투자펀드	135	3	2.2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200	21	10.5
		이앤 에이비에프 투자조합	290	19	6.6
		세종 농식품바이오 투자조합 1호	115	10	8.7
	수산 일반	IDV-IP수산전문투자조합	135	12	8.9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200	40	20.0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2호	150	-	-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3호	126	5	4.0
특수목적펀드	8대 프로젝트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266	16	6.2
		미래에셋 애그로 프로젝트 투자조합	160	-	-
	소규모 경영체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00	3	3.0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90	8	8.9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제1호	100	14	14.0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100	19	19.0
		SB프로젝트 투자조합	100	20	20.0
	수출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80	-	-
		포스코농식품수출투자조합	100	5	5.0
		AJ-세종 농식품수출육성펀드	104	-	-
	6차 산업화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83	48	57.8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100	16	16.0
	스마트팜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	150	30	20.0
	합계		4,604	452	9.8

주: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는 추가출자금 미납 등으로 결성 후 1년 이내 해산된 예외적인 사례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조합의 자금이 청산 시까지 미투자 상태로 남지 않도록 투자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1. 중장기 재무관리 및 사업부문별 실적 공시 필요

가. 현 황

-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개 공사가 설립되어 있음¹⁾
 -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등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항만시설은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투자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로, 투자 후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특성이 있음
- 4개 항만공사는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재원을 사채 발행과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진해신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 7,183억원)과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1조 3,410억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6,115억원)과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2,602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3-2단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6,902억원)과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6,532억원), 울산항만공사는 그린수소·해상풍력 지원부두 등 신규 항만개발사업(3,746억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말 기준 4개 항만공사의 금융부채는 6조 2,132억원이며, 기관별로 부산항만공사 4조 2,407억원, 인천항만공사 1조 2,725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6,300억원, 울산항만공사 700억원임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정부는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여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4개 기관 모두 부채총계의 대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부채총계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부산항만공사 96.2%, 인천항만공사 95.9%, 여수광양항만공사 82.7%, 울산항만공사 71.8% 수준임

[4개 항만공사 재무 현황(2025년)]

(단위: 억원, %)

구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자산총계	84,464	36,873	26,384	8,557
부채총계	44,063	13,273	7,618	975
(금융부채)	42,407	12,725	6,300	700
부채비율	109.1	56.2	40.6	12.9
차입금의존도	50.2	34.5	23.9	8.2

주: 별도 기준임

자료: 연도별 각 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1) 자산규모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관 유형 변경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4개 항만공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하면서 금융부채가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총계는 2021년 3조 840억원에서 2025년 4조 4,063억 원으로 42.9% 증가하였고 부채비율도 78.1%에서 109.1%로 상승하였으며, 자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29년 부채비율은 17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3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승계로 부채총계가 3,457억원에서 7,95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부선투자금 3,658억원을 2034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 손실이 전망되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이후 부채가 감소하여 2025년 부채비율이 56.2%이나 부지 매각 등의 요인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62.8% 수준이며, 울산항만공사는 부채비율이 12.9%로 가장 낮으나 신규 항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3,028억원의 외부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4개 항만공사 부채 현황 추이]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
부산항만 공사	부채총계	30,840	35,035	38,551	40,130	44,063	13,223 (42.9)
	금융부채	25,901	30,575	35,712	38,920	42,407	16,506 (63.7)
	부채비율	78.1	88.2	96.5	99.4	109.1	31.0
인천항만 공사	부채총계	11,338	13,081	14,570	14,130	13,273	1,935 (17.1)
	금융부채	10,825	12,275	13,725	12,775	12,725	1,900 (17.6)
	부채비율	51.3	58.9	66.8	62.1	56.2	4.9
여수광양 항만공사	부채총계	3,460	3,457	7,951	7,716	7,618	4,158 (120.2)
	금융부채	3,180	3,100	6,458	6,458	6,300	3,120 (98.1)
	부채비율	24	23.6	42.1	41.2	40.6	16.6
울산항만 공사	부채총계	1,615	1,591	1,572	1,402	975	△640 (△39.6)
	금융부채	1,250	1,250	1,250	1,100	700	△550 (△44.0)
	부채비율	23	22.1	21.2	18.6	12.9	△10.1

주: 1. 별도 기준이며, () 안은 증감률(%p)

2. 금융부채는 감사보고서상 유동금융부채와 비유동금융부채의 합계이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무이자 채무인 정부선투자금(장기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연도별 각 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라는 수립 요건을 충족함에도, 2023년 기관 유형 변경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정부는 동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2023년 1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직원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됨에 따라, 4개 항만공사는 정원 기준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산규모가 2조원을 상회하는 부산항만공사(8조 4,464억원), 인천항만공사(3조 6,873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조 6,384억원)도 기관 유형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²⁾

□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3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있으나, 동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재무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울산항만공사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3개 기관이 수립한 계획도 국회에는 제출되지 않아, 국회가 항만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과 투자계획, 부채 상환계획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음

2)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2년 말 자산규모가 1조 8,103억원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요건인 자산규모 2조원에 미달하여 유형 변경 이전에도 수립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3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승계로 자산규모가 2조 6,832억원이 되어 자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4개 항만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현황]

기관명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여부	국회 제출
부산항만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 10.31.까지 제출	미제출
인천항만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 10.31.까지 제출	미제출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 10.31.까지 제출	미제출
울산항만공사	-	-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구분회계 공시의무에서도 함께 제외되어 사업부문별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구분회계 적용범위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을 준용하고 있어, 기관 유형 변경으로 구분회계 공시의무에서도 함께 벗어나게 되었음
 -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은 하나의 기관이 성격이 다른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부문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사 손익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문별 수익성과 부문 간 교차보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그런데 동 지침 제3조는 적용범위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항만공사는 구분회계 공시의무에서도 제외되었음³⁾
 -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현재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3)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3조는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과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7조는 대상기관이 매년 4월 말까지 구분회계 재무제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결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 부문의 재무성과를 부문 단위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국가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정보도 확보되지 않고 있음

- 항만공사의 상환 재원은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 등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어느 사업 부문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어느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여야 상환 능력을 점검할 수 있음
 -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건설, 항만운영, 항만물류 및 해외개발, 항만재개발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 재무상태 및 손익이 공시되고 있지 않음
 - 인천항만공사도 항만인프라 건설,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보안·안전·친환경 등 사업 부문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 재무상태 및 손익이 공시되고 있지 않음
- 이는 부문별 손익이 구분되면 특정 부문의 손실이 기관 전체의 상환 재원을 얼마나 상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부문을 구분하지 않은 손익계산서만으로는 이러한 구조가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항만공사는 자체 수립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사업 부문별 손익을 산출하여 관리·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부처는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및 구분회계 적용 대상 선정기준을 기관 유형뿐 아니라 자산·부채 규모와 사업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1. 대규모 투자에 따른 부채증가와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가. 현 황

-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4년 1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¹⁾
 - 공사는 국유재산인 부산항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납입 자본금은 3조 2,975억원으로 재정경제부(87.3%)와 한국해양진흥공사(12.7%)가 지분 전액을 보유하고 있음
- 공사는 위 사업을 예산상 항만건설, 항만운영, 항만물류 및 해외개발, 항만재개발 등 4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4개 사업 전체 규모는 2024년 4,925억원에서 2026년 1조 7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며, 항만물류 및 해외개발사업이 2024년 702억원에서 2026년 2,417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는 반면, 항만재개발사업은 북항 1단계 마무리 국면에서 2024년 803억원으로 축소됨
 - 사업별 예산규모를 보면, 항만건설사업이 2025년 결산 기준 3,654억원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는 최대 사업이며, 2026년 예산은 5,145억원으로 확대되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임을 보여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 항만재개발사업, 물류시설의 운영,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부산항만공사 사업별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결산					예산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항만건설	2,861	2,754	2,595	2,367	3,654	5,145
항만운영	1,442	1,115	1,238	1,052	831	1,445
항만물류 ·해외개발	1,169	658	703	702	871	2,417
항만재개발	2,282	1,671	1,971	803	462	1,070
합계	7,753	6,197	6,507	4,925	5,818	10,077

주: 1. 사업별 금액은 예산서상 세출기준임

2. 2021~2025년은 결산, 2026년은 예산 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025년 100%를 상회함

- 자산총계는 2021년 7조 329억원에서 2025년 8조 4,464억원으로 20.1% 증가한 반면, 부채총계는 3조 840억원에서 4조 4,063억원으로 42.9% 증가함
- 부채 증가는 대부분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2조 5,901억원에서 4조 2,407억원으로 63.7% 증가하여 자산 증가율의 3배를 상회함
- 반면 자본총계는 3조 9,489억원에서 4조 401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쳐, 부채비율은 78.1%에서 109.1%로 상승하였고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인 차입금의존도도 36.8%에서 50.2%로 13.4%p 상승함

[부산항만공사 재무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B-A)
자산총계	70,329	74,755	78,489	80,519	84,464	14,135 (20.1)
부채총계	30,840	35,035	38,551	40,130	44,063	13,223 (42.9)
- 금융부채	25,901	30,575	35,712	38,920	42,407	16,506 (63.7)
자본총계	39,489	39,721	39,938	40,389	40,401	912 (2.3)
부채비율	78.1	88.2	96.5	99.4	109.1	31
차입금의존도	36.8	40.9	45.5	48.3	50.2	13.4

주: 별도 기준이며, () 안은 증감률(%p)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부채 증가는 대규모 항만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데 기인하며, 투자가 집중되는 향후에 부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투자비는 2021년 6,211억원에서 2025년 5,047억원으로 매년 5,000억원 내외가 투입되고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 재원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여, 순차입액이 2021년 4,800억원에서 2025년 1조 3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부산항만공사 투자비 및 순차입액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투자비	6,211	5,221	6,073	4,948	5,047
순차입액	4,800	5,760	8,800	7,300	10,300
부채비율	78.1	88.2	96.5	99.4	109.1

주: 별도 기준

자료: 2025회계연도 부산항만공사 결산서

- 공사의 주요 투자사업 총사업비는 7조 2,829억원이나 2024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조 2,064억원(30.3%)에 그치고, 2026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가 4조 4,499억원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함
- 특히 진해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 7,183억원)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1조 3,410억원)은 2024년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각각 62억원, 14억원에 그쳐 사업비의 대부분이 향후에 투입될 예정임

[부산항만공사 주요 투자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4년까지 사업비	'25년 사업비	'26년 이후 사업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08~'27	15,494	12,531	1,275	1,688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23~'30	13,410	14	42	13,354
진해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22~'30	17,183	62	914	16,207
부산항 신항 서'컨' 2-6단계	'13~'27	6,248	2,672	1,044	2,532
부산항 신항 서'컨' 북측피더부두	'13~'26	978	741	48	189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15~'25	2,885	2,466	414	5
부산항 신항 북'컨' 2단계항만배후단지	'22~'34	7,211	1,232	521	5,458
기타 주요 투자사업	-	9,421	2,347	2,008	5,066
총계	-	72,829	22,064	6,266	44,499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금융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동비율은 2021년 115.3%에서 2025년 7.8%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유동자산이 4,422억원에서 633억원으로 85.7% 감소한 반면 유동부채는 3,834억원에서 8,068억원으로 110.4%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유동부채의 대부분이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상환할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상환 재원을 외부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실제로 2025년 순차입액은 1조 300억원으로 같은 해 투자비 5,047억원의 2배 수준에 이르는바, 신규 투자재원 조달 외에 기존 차입금의 상환 부담도 금융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산항만공사 유동성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B-A)
유동자산(a)	4,422	4,429	5,333	897	633	△3,789
유동부채(b)	3,834	6,962	7,549	8,750	8,068	4,234
유동비율(a/b)	115.3	63.6	70.6	10.3	7.8	△107.5

주: 별도 기준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은 개선되었으나 이자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
- 영업이익은 2021년 1,032억원에서 2025년 1,440억원으로 39.5% 증가함
 - 그러나 이자비용이 543억원에서 887억원으로 63.4% 증가하여 영업이익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1.90배에서 1.62배로 하락하였음
 - 아울러 매출액은 2021년의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3,400~3,9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차입 확대에 상응하는 수익기반 확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부산항만공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B-A)
매출액	5,617	3,357	3,461	3,700	3,932	△1,685 (△30.0)
영업이익	1,032	1,066	1,335	1,295	1,440	408 (39.5)
이자비용	543	558	770	621	887	344 (63.4)
이자보상배율	1.9	1.91	1.73	2.09	1.62	△0.28
당기순이익	427	404	348	661	312	△115 (△26.9)

주: 1. 별도 기준이며, () 안은 증감률(%p)

2. 2021년 매출액에는 분양수입 등 일시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연도별 부산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작성성

□ 한편, 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29년 17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재무구조 악화 추세가 향후 5년간 지속 될 전망이다

-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2025년 4조 5,743 억원에서 2029년 7조 4,455억원으로 62.8% 증가하는 반면, 자본은 4조 639억원에서 4조 1,547억원으로 2.2% 증가에 그쳐 부채비율이 2025년 112.6%에서 2029년 179.2%로 66.6%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조 6,016억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공사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본격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며 재무지표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부산항만공사 중장기 재무전망]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부채	45,743	52,954	61,449	68,052	74,455
금융부채	44,450	50,790	58,150	63,540	70,830
비금융부채	1,293	2,164	3,299	4,512	3,625
부채비율	112.56	129.58	149.34	164.86	179.21
이자보상배율	1.36	1.38	1.35	1.33	1.33

주: 1. 별도 기준

2. 2025년은 계획수립 당시 전망치로 실적(부채비율 109.1%, 이자보상배율 1.62배)과 차이가 있음

자료: 「부산항만공사 2025~2029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따라서 공사는 유동성 관리와 자금조달 계획수립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부문별 재무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2.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랜드마크 부지의 매각 지연 및 직접 개발에 따른 재무부담 우려

가. 현 황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1~4부두, 중앙 부두) 일원을 국제관문 및 해양관광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고 있음
 - 총사업비는 2조 9,928억원으로 부산항만공사가 2조 3,216억원(77.5%), 정부 3,595억원(12.0%), 부산시 3,117억원(10.5%)을 각각 분담하는 구조이며, 공사의 부담 비중이 가장 큼
 - 전체 사업면적은 1,552,830㎡이며, 상업업무지구·IT영상전시지구·해양문화지구·복합도심지구·복합항만지구의 5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현황]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08~2027
총사업비	2조 9,928억원
	부산항만공사 23,216억원(77.5%), 정부 3,595억원(12.0%), 부산시 3,117억원(10.5%)
전체면적	1,552,830㎡

주: 총사업비는 사업계획(13차 변경) 고시 기준이며, 공사의 2026년 예산서상 사업비는 2조 2,110억원 (VAT 제외)으로 이 중 토지·건축물 보상비 5,091억원을 제외한 1조 7,019억원이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음

자료: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13회 변경) 고시(‘25.7.29.)」를 바탕으로 재작성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토지 이용계획도]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

나. 주요 쟁점

-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서 예정가격이 가장 큰 랜드마크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공사의 투자비 회수 시기도 늦어지고 있음
 - 랜드마크 부지인 해양문화지구 Z-1-2는 면적 11만 3,285.6㎡, 공모 예정가격 약 6,083억원으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부지임
 - 공사는 랜드마크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2023년 3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1차 공모는 1개 사업자만 참여하였고 2차 공모는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음
 - 동 부지는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상징성을 갖는 해양문화지구로서 지역 활성화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취득 예정 토지가액의 32.5%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잔여 부지임

[랜드마크 부지 매각 공모 현황]

구분		공급면적	예정가격 ¹⁾	입찰결과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지구)	Z-1-2	113,285.60㎡	6,083억원	1차(2023.03.15.) 유찰(1개사 참여)
				2차(2024.03.28.) 유찰(무응찰)

주: 1) 2023년 3월 기준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사의 토지 매각 로드맵상 랜드마크 부지는 2029년 취득·2030년 공급으로 계획되어 있어 다른 잔여부지보다 2~3년 늦게 설정되어 있으며, 매매각 상태인 동 부지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청소경비용역(5.6 억원)을 시행하는 등 유지관리비용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랜드마크 부지의 매각 여부와 개발방식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투입된 공사 자금의 회수시기와 향후 현금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공사는 반복된 매각 유찰에 대응하여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으나, 매각과 직접개발 중 향후 추진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공사는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방식으로 ① 전체부지 민간개발, ② 공공시설 정부개발·수익시설 민간개발, ③ 공공시설 공사 직접개발·수익시설 민간 또는 공사 개발의 세 가지 방안을 비교하였으며, 이 중 ③안을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토지 매각 로드맵에는 동 부지를 2030년 공급하는 것으로 반영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직접개발을 검토하고 있어, 토지매각·직접개발·민관 공동개발 중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¹⁾
- 아울러 공사는 2026년 하반기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북항 1단계 토지매각방안 수립 및 컨설팅 용역(가칭)」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 용역을 통해 최종적인 개발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나,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이 2027년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방안 확정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1) 공사도 직접개발 여부와 범위가 정부 및 부산시와의 협의, 사업·실시계획 변경,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사업성 검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랜드마크 개발방식 비교]

구분	①안 전체부지 민간개발	②안 공공시설 정부개발	③안 공공시설 BPA개발
구조	전체시설 패키지 개발	공공시설 재정투입 / 수익시설 민간매각	수익시설 패키지 개발 / 공공시설 BPA 개발
상부시설	별도법인	[공공] 정부 / [수익] 민간	[공공] 민간 또는 BPA
토지소유권	별도법인	[공공] 정부 / [수익] 민간	BPA
사업성	공공시설 포함으로 수익시설 공간 제한, 사업성 확보 어려움	호텔·레저·오피스 등 수익기능 집중 배치 가능으로 PF 적합	단계별 개발로 공공시설 先개발 후 수익시설 분양·임대 가능
공사 평가	공공성·수익성 균형이 리스크	재원마련 불확실성 높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합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

주: 정부협약, 법개정 절차 진행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법 개정으로 공사의 상부시설 직접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나, 직접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와 재원 조달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음

- 종전에는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26년 6월 18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상부시설의 개발과 분양·임대가 포함되었음
- 이어 2026년 9월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에 건축물·공작물 등이 명확히 포함되고, 사업·실시계획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가 마련되었음
- 다만, 법적 권한의 확대가 랜드마크 부지의 직접개발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개발을 추진할 경우 토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은 지연되는 반면 토지 취득비 외에 건축물·공공시설 등의 조성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직접개발의 대상 시설과 범위, 총사업비, 단계별 투자계획, 재원 조달방안 및 분양·임대수입 전망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북항 1단계 분양예정 용지의 회계상 분류가 변경된 가운데, 자산 회수 지연이 공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공사는 2023년 말까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던 북항 1단계 분양예정 용지 4,413억원을 2024년 중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음
-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인 반면,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자본이득 등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회계상 성격이 다름²⁾
- 다만 분양을 통한 일시적인 현금 회수 대신 장기 보유·임대 또는 직접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 말 기준 공사의 1년 이내 만기도래 단기성 차입금은 약 6,604억원인 반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515억원 수준이며 북항 재개발과 신항 개발 등 대규모 투자도 예정되어 있는바, 4,413억원 규모 자산의 회수 방식 전환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상환재원 확보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만기도래 차입금은 통상 차환을 통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차환 가능성과 금융비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착수 예정인 용역을 통해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직접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방안 및 투자비 회수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러한 대체는 해당 용지의 보유 목적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자산가치나 수익성이 하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당자산의 보유 목적이 매각·분양을 통한 단기 회수에서 장기 보유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 회수 시점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음

7-1. 일시적 요인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와 수익 기반 약화 문제

가. 현 황

-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5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¹⁾
 - 공사는 국유재산인 인천항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으며, 2025년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조 676억원으로 재정경제부(59.5%)와 해양수산부(21.2%)가 80.7%를 한국해양진흥공사(12.7%)·산업은행(3.3%)·한국수출입은행(3.3%)이 나머지 19.3%를 보유하고 있음
 - 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 공사는 항만인프라 건설,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보안·안전·친환경 등 주요사업의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 주요사업 결산액은 2021년 2,009억원에서 2024년 1,988억원까지 2,000억원 내외로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1,4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억원(27.4%) 감소하였음
 - 이는 항만인프라 건설 분야가 2024년 1,184억원에서 2025년 684억원으로 500억원(42.2%)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하며, 동 분야는 2021년 1,370억원에서 5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026년 주요사업 예산은 1,91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항만인프라 건설이 959억원으로 50.0%를 차지함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

[인천항만공사 사업별 재정 투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결산					예산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항만인프라 건설	1,370	1,276	1,334	1,184	684	959
항만시설 유지보수	104	106	151	177	147	188
항만보안· 안전·친환경	161	161	164	193	180	199
기타 주요사업 ¹⁾	250	307	266	319	288	430
기타분야 ²⁾	124	126	117	115	145	142
합계	2,009	1,976	2,032	1,988	1,444	1,918

주: 1) 기타 주요사업은 항만부두 운영사업,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운영사업, 갑문운영·관리, 항만배후 단지·부지운영사업, 비핵심자산 매각사업 등으로 구성됨

2) 기타 분야는 항만마케팅 및 홍보, 정보화 사업, 기술·연구용역(R&D 포함), 일자리창출 및 사회 적가치 실현으로 구성됨

1. 사업별 금액은 예산서상 세출기준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자료(주요사업)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공사의 2021~2025년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주요 재무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부지매각과 세금 환급 등 일시적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당기순이익은 2021년 △246억원, 2023년 △3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 963억원, 2025년 1,187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부채비율도 2023년 66.8%에서 2025년 56.2%로 하락하였음

[인천항만공사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B-A)
부채비율	51.3	58.9	66.8	62.1	56.2	4.9
영업이익	18	109	226	227	181	163
당기순이익	△246	96	△395	963	1,187	1,433 (흑자전환)

주: 별도 기준이며, () 안은 증감률(%p)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2025년 영업이익은 181억원인 반면, 당기순이익은 1,187억원으로 1,006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773억원, 세무조사 추정금 환급 507억원, 위약금·지체상금 등 105억원 등이 영업 외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이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54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해당 요인이 없었다면 2025년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 당기순이익 963억원 중 골든하버 부지 (Cs8·Cs9)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1,802억원이었음

[인천항만공사 영업외손익 주요 항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처분손익	-	-	47	1,801	773
기타 영업외이익	44	78	16	25	625

주: 1. 별도 기준

2. 자산처분손익은 유형자산·투자부동산·무형자산의 처분이익에서 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며, 2024년은 골든하버 부지(Cs8·Cs9) 매각에 따른 것임

3. 기타영업외이익은 영업외수익 중 자산처분이익과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2025년 625억원은 세금감면·환급 507억원과 위약금·지체상금 등 105억원 등으로 구성됨

4. 2023년 세무조사에 따른 추정금 493억원이 조세심판 결과 환급되어 2025년 세금감면·환급 507억원에 반영됨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부지 매각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공급이라는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본래 사업과 무관한 것은 아니나, 조성된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반복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대료·사용료 등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는 성격이 다름

□ 반면, 항만인프라 건설사업은 총사업비의 절반가량이 향후 투입될 예정으로, 투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항만인프라건설 분야에서 추진 중인 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1,698억원이며, 2025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6,699억원(57.2%)으로 잔여 사업비는 5,366억원임
- 이 중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6,11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2025년까지 3,901억원이 집행되어 잔여 사업비는 2,214억원임
-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872억원 중 2025년까지 집행액이 37억원에 그쳐 사업비의 대부분이 향후에 투입될 예정임

[인천항만공사 항만인프라건설 분야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24년 이전 집행	2025		2026
			편성	집행	편성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	6,115	3,678	456	201	779
상부공	1,798	16	258	41	284
하부공	4,318	3,663	199	160	495
신항배후단지 조성사업	955	813	117	74	29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2,602	1,573	597	270	60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1,872	19	76	22	44
인천항 재난·안전 취약시설 정비사업	92	9	9	-	4
기타사업	61	-	30	-	43
합계	11,697	6,092	1,285	567	959

주: 1. 별도 기준

2. 총사업비는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이며, 2024년 이전은 2024년까지의 집행액임

3.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총사업비 356억원) 및 신규 항만시설 소유권 확보(328억원)는 2025년 종료되어 표에서 제외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2026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성

□ 그러나 물동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임대료 중심으로 이동한 가운데, 2025년에는 배후부지 임대료도 감소함

- 인천항의 총물동량은 2021년 1억 5,769만 톤에서 2025년 1억 4,380만 톤으로 8.9% 감소하였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2024년 355만 TEU에서 2025년 344만 TEU로 3.2% 감소하여 202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됨

[인천항 물동량 현황]

(단위: 만TON, 만TEU, 만RT,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B-A)
총물동량	15,769	14,986	14,686	14,782	14,380	△1,389 (△8.8)
컨테이너	335	319	346	356	344	9 (2.7)
벌크	10,563	9,955	9,351	9,324	9,019	1,544 (△14.6)

주: 총물동량은 중량톤 기준이며, 컨테이너는 TEU 기준임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임대료 수입은 758억원에서 1,034억원으로 36.4% 증가한 반면, 선박료·화물료 등 사용료 수입은 576억원에서 642억원으로 11.4% 증가에 그쳐,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2.4%에서 57.9%로 상승하였음
- 그런데 2025년에는 임대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후부지임대료가 577억원에서 567억원으로 10억원(1.8%)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처음 나타난 감소임
- 이는 배후단지 미임대 면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7-3에서 상술), 사용료 수입도 함께 감소하여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도 227억원에서 181억원으로 20.3% 감소하였음

[인천항만공사 매출 구성(2021~2025)]

(단위: 억원, %)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 (B-A)
임대료	758	903	957	1,026	1,034	276
배후부지임대료	351	491	515	577	567	216
부두임대료	392	396	421	428	438	46
기타임대료	15	16	21	21	29	14
사용료	576	607	646	652	642	66
감문수탁수입	76	82	95	90	101	25
기타	36	29	30	11	9	△27
합계	1,445	1,622	1,729	1,780	1,786	341

주: 1. 별도 기준

2. 기타는 정부보조금수익 및 기타매출의 합계임

자료: 연도별 인천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공사는 부지 매각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정상적 수익을 기준으로 재무 상황을 관리하고, 잔여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7-2. 골든하버 부지 매각에 상당 부분 의존한 부채감축 계획의 실행 가능성

가. 현 황

- 골든하버사업은 2001년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이후 25년째 추진 중인 공사의 대규모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5억원임
 - 사업부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서측 해상에 위치한 2종 항만배후단지¹⁾로, 총 면적 42만 7,657㎡(약 13만평), 11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문화관광시설,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립공사 및 상부 기반시설 건설을 거쳐 2020년부터 투자회수 단계가 지속되고 있음
 - 총 11개 필지 중 2개 필지(Cs8·Cs9)는 2023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매각되었으나 잔여 9개 필지는 미매각 상태이며,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9만 9,042㎡로 전체 사업면적의 23.2%임

[골든하버사업 사업 현황]

골든하버 현황도		구분	매각 여부	면적 (m ²)
골든하버 현황도 30,828.9m² 25m 70% 200% 48,502.2m² 80m 70% 350% 44,748.8m² 250m 70% 500% 41,183.3m² 80m 20% 250% 9,945.8m² 40m 70% 300% 16,888.2m² 150m 70% 350% 12,862.7m² 150m 70% 350% 41,689.3m² 40m 70% 350% 82,151.5m² 60m 70% 300% 16,532.8m² 60m 70% 300% 35,823.1m² 25m 70% 200% 44,747.7m² 80m 70% 350% 61,183.3m² 80m 20% 250% 68,503.3m² 80m 20% 250% 9,942.2m² 40m 70% 300% 17,863.3m² 40m 70% 300% 18,686.3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151.5m² 40m 70% 300% 16,532.8m² 40m 70% 300% 30,539.3m² 40m 70% 300% 41,689.3m² 40m 70% 300% 82,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 1)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법」에 따라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 중 하나로, 항만과 연계된 물류기능 외에 상업·업무·관광·레저 등 복합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

나. 주요 쟁점

- 골든하버사업은 2001년 착수 이후 25년이 경과하였고 2020년부터 투자 회수 단계에 있음에도, 11개 필지 중 2개 필지만 매각되어 투자비 회수가 부진한 상태임
 - 총사업비 6,705억원 중 2025년 말까지 매각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Cs8 1,880억원과 Cs9 808억원을 합한 2,688억원(40.1%)이며, 매각이 완료된 면적도 전체 사업면적의 23.2%에 그침
 - 미매각 9개 필지의 2025년 말 기준 장부가액은 376억원이나 공사는 필지별 탁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상매각가액을 9,4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향후 회수 규모는 예상매각가액의 실현 여부에 크게 좌우됨

[골든하버 투자유치 추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액	비고
총사업비		6,705	
	기투자액	6,705	
	잔여투자액	-	
회수액		2,688	Cs8 1,880억원, Cs9 808억원
미매각 필지 장부가액		376	9개 필지
미매각 필지 예상매각가액		9,466	필지별 탁상 감정평가액 기준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 매각은 실적이 없으며, 투자유치 시도도 반복적으로 무산되어 왔음
 - 2019년 스웨덴 SF MARINA와 50억 달러 규모의 마리나·리조트·호텔 등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용도변경 요구로 철회되었고, 2020년 미국 Campfire Capital과의 협의도 「항만법」 규제를 이유로 철회되었음

-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Cs8·Cs9를 매각한 것은 공공부문 간 거래로, 민간을 대상으로 한 매각은 2024년 Cs1 부지 공모가 유일하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골든하버 투자유치 추진 현황]

연도	협약기관	국적	대상부지	결과
2019	SF MARINA	스웨덴	전체	협약 체결 후 철회 (용도변경 요구)
2020	Campfire Capital	미국	전체	철회(「항만법」 규제)
20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국내	Cs8·Cs9	매각 성공
2024	Cs1 공모설명회	국내	Cs1	유찰(무응찰)
2025 이후	국내외 호텔업계	국내외	Cs5~Cs7	추진 중

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설치한 행정기관임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공사는 매각을 추진할 실행수단을 갖추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 매각 일정이 변경될 예정임
 - 공사는 「골든하버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 재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부지 공급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투자자 대상 마케팅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는 중임
 - 동 용역은 2026년 8월 착수되어 2027년 4월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매각 일정도 변경될 예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은 골든하버 부지 매각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재무지표가 크게 악화될 수 있음
 - 공사는 향후 부채감축 방안으로 골든하버 잔여부지 자산매각과 함께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신규 임대(2026년),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2028년) 등을 통한 매출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 매각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골든하버 부지가 전체 매각되는 경우 부채비율은 2031년 68.2%로 관리되나, 기 매각부지와 연계되는 Cs6·Cs7 부지만 우선 매각되고 잔여 부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2031년 81.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골든하버 잔여부지가 계획대로 매각되는지 여부에 따라 2031년 부채비율이 13.5%p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의 부채감축 계획이 골든하버 매각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골든하버 부지 매각 시나리오별 재무전망]

(단위: %, 배)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본(안)	부채비율	60	69.1	74.7	69.5	68	72.8	68.2
	이자보상배율	0.5	0.2	0.3	0.4	0.6	0.6	0.7
부분매각(안)	부채비율	60	69.1	76.6	70.8	69.4	76.7	81.7
	이자보상배율	0.5	0.2	0.3	0.4	0.6	0.6	0.6

주: 1. 기본(안)은 골든하버 부지 전체 매각을 가정한 것임

2. 부분매각(안)은 기 매각부지(Cs8·Cs9)와 연계되는 Cs6·Cs7 부지를 2027~2029년 매각하고 잔여 부지 매각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임

3. 2025년 수치는 계획 수립 당시 전망치로 결산상 부채비율(56.2%)과 차이가 있음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아울러 예상매각가액이 큰 필지일수록 매각 시기가 늦게 계획되어 있어, 2026~2027년 매각 예정인 Cs5의 예상매각가액은 279억원으로 전체 예상매각가액의 2.9%에 불과한 반면, 가장 큰 Cs2-1(2,309억원)과 Cs2-2·Cs2-3(2,150억원)은 2030년 이후에 매각이 계획되어 있어, 계획대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단기간 내 부채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사는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매각 전략을 구체화하여 계획된 매각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매각이 지연되거나 일부 매각에 그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적인 부채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3. 항만배후단지 미임대 장기화 문제

가. 현 황

- 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제조기업에 임대하고 있으며, 2006년 아암물류1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24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였음
- 조성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6,828억원이며, 이 중 공사가 4,960억원(72.6%), 정부가 1,868억원(27.4%)을 각각 부담하여 공사의 재원 부담 비중이 높음
 - 가장 최근 조성된 아암물류2단지 2단계는 2025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 4,019억원 중 공사 부담액은 2,673억원임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 현황(2025년 말 기준)]

(단위: 만㎡, 억원)

구분	조성연도(입주연도)	조성면적	총사업비
아암물류 1단지 ¹⁾	2006년 ('05~'11년)	97	407
북항배후단지(남측)	2012년 ('13~'19년)	56	461
북항배후단지(북측)	2020년 ('22년)	17	158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2020년 ('21년 이후)	64	1,071
아암물류 2단지 ²⁾ (골든하버)	2020년 ('20년 이후)	43	712
아암물류2단지 ³⁾ (1-1단계, 2단계)	~2025년	255	4,019
합계	-	524	6,828

주: 1) 아암물류 1단지 1단계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출자하여 기반공사를 실시 한 후 인천항만공사가 인수함

2) 아암물류 2단지(골든하버)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임

3) 아암물류 2단지 2단계는 2025년 10월 준공확인되었음

1. 민간개발 배후단지는 제외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나. 주요 쟁점

- 기존 배후단지 중 아암물류2단지 1-1구역과 신항배후단지에서 26만㎡의 미임대 면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해소도 어려운 상황임
 - 2025년 기준 조성완료 단지의 입주가능 면적 177만㎡ 중 151만㎡가 입주하여 입주율은 85.3%이나, 아암물류2단지 1-1단계(66.7%)와 신항배후단지(67.4%)의 입주율이 낮아 26만㎡가 미임대 상태임
 - 신항배후단지의 미임대 면적 15만㎡는 선행시설 착공 지연과 입주계약 해지 부지의 양수도 평가결과 ‘부적격’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 중으로 전년과 동일한 상태이며, 공사도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단기 입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암물류2단지 1-1단계의 미임대 면적 11만㎡는 2025년 2~4월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었으며, 건축비 상승 및 부동산 PF시장 경색 등에 따른 투자수요 부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 배후단지 조성에는 공사 부담분 4,960억원이 투입되었으므로, 미임대가 지속되면 임대료 수입을 통한 투자비 회수도 지연되며 실제로 2025년 배후부지임대료는 577억원에서 56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하였음

[인천항만공사 미임대 발생 배후단지 현황(2025년 말 기준)]

(단위: 만㎡, %)

구분	용도	조성 면적	입주가능 면적 (A)	입주 면적 (B)	입주율 (B/A)	미임대 면적 (A-B)
아암물류2단지 (1-1구역)	복합물류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67	33	22	66.7	11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콜드체인 특화구역	64	46	31	67.4	15
전체 배후단지	-	301	177	151	85.3	26

주: 아암물류2단지 2단계는 2025년 10월 준공되어 입주기업 모집 중이므로 제외함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이러한 가운데 2025년 10월 준공된 아암물류2단지 2단계의 첫 입주기업 모집에서도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유찰되었음
 - 2026년 2월 실시한 A구역 7개 부지(24만㎡) 모집공고 결과 1개 부지(2.4만㎡)만 경쟁입찰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6개 부지(22만㎡)는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었음
 - 2026년 6~8월 유찰부지 6개에 대해 재공고한 결과 2개 부지(2.2만㎡)만 경쟁입찰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4개 중·대형 부지(20만㎡)는 무응찰로 유찰되었음
 - 공사는 유찰 사유로 건축비 상승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기업의 신규 물류시설 투자 심리 위축을 제시함
 - 두 차례 공고에서 중·대형 부지가 모두 유찰됨에 따라 공사는 부지 규모를 조정하여 재공고할 계획으로, 현 시점에서 대형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기존 공급부지의 미임대가 해소되지 않고 신규 공급부지에서도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진행될 경우,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 및 임대료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미임대 면적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아암물류2단지 2단계는 B구역 중 수요가 많은 소형 규모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8개 부지 17만㎡의 모집공고가 2026년 11~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잔여부지 14만㎡와 A구역 유찰부지 20만㎡는 부지 규모를 조정하여 2027년 공고할 예정임
 - 여기에 기존 미임대 26만㎡를 더하면 2026년 중 17만㎡, 2027년 중 60만㎡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이는 현재 조성완료 단지의 입주면적 151만㎡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임

- 따라서 공사는 유찰 원인을 반영하여 입주조건을 재검토하는 한편, 향후 공급물량 및 공급시기를 시장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7-4.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에 따른 사업방식 및 재정부담 검토 필요

가. 현 황

-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거점 항만으로, 2025년 기준 62만 대를 수출하여 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은 리비아·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 등이며, 공사는 중고차를 인천항의 특화화물로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집적되어 있으나, 인천시가 2024년 12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동 지역을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상황임
 - 송도유원지는 2026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완료 후 2028년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목표 시기는 2028년 말 또는 2029년 초로 설정되어 있음
- 공사는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2025년 9월 사업추진계약이 해지되었음
 - 동 사업은 인천 남항 인근 역무선 배후부지 39만 8,155㎡에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인 (주)카마존이 총사업비 4,37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이었음¹⁾
 - (주)카마존은 부지를 30년간 임대받아 연간 임대료 12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중고차 수출 관련 전시장·경매장·검사장·부품판매 등을 포함한 종합 중고차 수출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2027년 1단계 완공을 계획하였음
 - 2023년 5월 사업추진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12월 1단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2025년 2월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25년 9월 사업추진계약 및 전용사용계약이 해지되었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주)카마존은 5개사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임

- 공사는 계약 해지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음
 - 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202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TF를 주관하고 공사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운영방안 마련을 담당하고 있음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22.10.~2023.1.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선정 재공모 실시
2023.5.12.	사업추진계약 체결((주)카마존)
2023.12.12.	1단계 임대차계약 체결
2025.2.11.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실시계획 승인
2025.9.4.	사업추진계약 및 전용사용계약 해지
2025.9.8.	운영사업자,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25.11.27.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관계기관 TF 착수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해소되지 않아 2025년 9월 사업추진계약이 해지되었음
 - 공사는 (주)카마존의 자기자본 미증자, 전용사용료 미납입, 착공신고 미이행을 근거로 사업추진계약 및 전용사용계약을 2025년 9월 4일자로 해지하였음
 - 계약 해지 시점의 미이행 내역을 보면 자기자본 증자액은 총 496억원 중 446억원(89.9%)이 미증자 상태였고,²⁾ 전용사용료 28.8억원이 미납되었음³⁾

2)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는 요건임.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370억원 중 496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사업자가 446억원을 증자하지 못하여 사업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공사는 당초 2024년 12월까지였던 증자 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3) 운영사업자가 공사 소유 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당 부지의 전용사용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것은 아님. 2025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미

- 공사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승인 기한 9개월, 자기자본 증자 기한 6개월을 각각 연장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였으나, 금융·부동산시장 여건과 운영사업자의 자금 확보 역량 부족으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음
- 자금조달(자기자본 증자), 대금지급(전용사용료 납입), 공사착수(착공신고)의 세 가지 계약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운영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계약 해지에 대해 운영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 대상 부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주)카마존은 계약 해지 4일 후인 2025년 9월 8일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6년 8월까지 4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5차 변론기일이 2026년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1년 넘게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⁴⁾
- 이에 따라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대상 부지인 역무선 부지 등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활용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부지 관리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재추진을 위한 대체 부지는 선정되었으나, 해당 부지는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공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공동으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202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4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신항배후단지 I-1단계 2구역(일부 부지)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음
 - 당초 사업 부지인 역무선 부지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별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송도 LNG 야구장은 기존 입주사와의 협의

납되어 계약 해지 시점까지 28.8억원이 미납되었음

4) 공사는 패소 시 운영사업자의 사업자 지위가 회복되어 사업이 재추진되며, 운영사업자가 자금조달 지연손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

및 진입도로 제약, 신항도로부지는 기존 입주업체 영업 중 및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각각 제외되었음

- 다만, 선정된 신항배후단지 I-1단계 2구역은 예상 사용료(임대료)가 높은 편으로, 향후 운영사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사업 운영방식과 공사의 사업비 부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공공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당초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4,370억원을 전액 투자하고 공사는 부지를 제공하여 임대료를 수취하는 구조였음
- 그러나 재추진 과정에서 공사는 공공직영, 민간주도, 하이브리드(공공+민간) 등 운영주체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추진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비 조달과 시설 조성·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
- 운영주체별 분담비율은 추진방식 선정 이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공공직영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채택될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공사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 사업방식과 운영방안은 2026년 4월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인 용역을 통해 마련될 계획으로, 사업비 부담 규모는 2026년 말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일정]

시기	내용
2026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준공)
2027	중고차 수출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28	조성공사 착공(6월), 송도유원지 등 수출단지 이전 시작(연말)
2030	조성공사 준공(4월), 이전 마무리

자료: 인천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종전 민간투자 방식이 해지된 이후 사업방식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는 사업방식 결정 시 공사의 부담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8-1. 여수세계박람회장 인수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여수항과 광양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임¹⁾
 - 2025년 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1조 5,523억원으로 재정경제부(38.56%)와 해양수산부(32.64%)가 71.2%를, 한국해양진흥공사(12.70%)·산업은행(8.05%)·한국수출입은행(8.05%)이 나머지 28.8%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운영, 물류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
- 공사는 2023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이하 “박람회장”이라 함)을 인수하였음
 - 이는 정부의 박람회장 개발정책이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공사의 사업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었음
 - 공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엑스포사후활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람회장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2023년 4월 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하여 100% 출자하였음

장희란 예산분석관 (darkips@assembly.go.kr, 6788-4682)

1)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운영, 물류시설 운영사업 등을 수행함

- 박람회장의 주요 시설은 국제관 A~D동 434개소(5만 2,923㎡)의 임대시설과 엑스포홀(978석)·컨퍼런스홀·그랜드홀 등의 대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는 임대·대관을 통한 수익 창출과 국제크루즈 유치에 병행하고 있음

□ 박람회장 인수에 따라 공사는 자산 8,729억원을 승계하는 한편, 3,658억원의 정부선투자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정부선투자금은 박람회장 조성에 정부가 선투자한 재원으로, 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하면서 상환의무를 함께 승계한 것임
- 당초 관련 고시에 따라 2025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하였으나, 2025년 7월 재정경제부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25년에는 958억원을 3회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상환할 예정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정부선투자금 상환 일정]

(단위: 억원)

구분	납부시기	납부액	누계액	상환잔액
	-	-	-	3,658
1회차	2025년 7월	300	300	3,358
2회차	2025년 8월	200	500	3,158
3회차	2025년 10월	458	958	2,700
4~12회차	2026~2034년	300(매년)	3,658	-

주: 1. 상환방식은 2025년 전액 일시상환에서 10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됨(재정경제부 및 해양수산부 협의 완료, 2025년 7월)

2. 무이자 상환으로 상환기간에 따른 부가비용은 없음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박람회장 인수에 따른 정부선투자금 상환의무는 공사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었으며, 무이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이자 부담이 있는 채무로 전환되고 있음
- 자산총계는 2021년 1조 7,874억원에서 2025년 2조 6,384억원으로 47.6%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3년 박람회장 자산 인수로 자산이 1조 8,103억원에서 2조 6,832억원으로 8,729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3,460억원에서 7,618억원으로 120.2% 증가하였고, 금융부채도 3,18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98.1%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24.0%에서 40.6%로 상승함
 - 영업이익은 2022년 221억원에서 2023년 47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 △88억원, 2025년 △8억원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1(A)	2022	2023	2024	2025(B)	증감액(B-A)
자산총계	17,874	18,103	26,832	26,464	26,384	8,510 (47.6)
부채총계	3,460	3,457	7,951	7,716	7,618	4,158 (120.2)
- 금융부채	3,180	3,100	6,458	6,458	6,300	3,120 (98.1)
자본총계	14,414	14,646	18,881	18,747	18,766	4,351 (30.2)
부채비율	24	23.6	42.1	41.2	40.6	16.6
매출액	1,360	1,398	1,358	1,455	1,467	107 (7.9)
영업이익	177	221	47	△88	△8	△185
당기순이익	146	219	216	△123	20	△126 (△86.0)

주: 1. 별도 기준이며, () 안은 증감률(%p)

2. 금융부채는 사채와 정부선투자금(장기차입금)의 합계이며, 2025년 말 기준 사채 3,600억원과 정부선투자금 2,700억원으로 구성됨

자료: 연도별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보고서(별도) 바탕으로 재작성

- 공사는 2025년 정부선투자금 상환액 958억원과 채권 원리금 600억원 상환 등을 위하여 사채 1,400억원을 신규 발행하고 600억원을 상환하여, 사채 잔액이 2,7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조달금리는 3.0%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없는 정부선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를 발행한 것이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2024년 61억원에서 2025년 95억원으로 55.8% 증가하였음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채발행 및 상환내역(2025)]

(단위: 억원)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규 차입	1,400	500	-	-	900
상환	600	600	-	-	-
순차입	800	△100	-	-	900
잔액	-	2,700	2,700	2,700	3,600

주: 1. 조달금리는 1분기 3.001%, 4분기 3.044%임

2. 2025년 사채 발행액 1,400억원은 박람회장 정부선투자금 상환액 958억원 및 2025년도 채권 원리금 600억원 상환 등을 위한 것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박람회 부문은 매출액의 4배에 이르는 매출원가가 발생하여, 항만 부문의 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음

- 박람회 부문은 2023년 인수 이후 매년 매출총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매출액 53억원에 매출원가 214억원이 발생하여 16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 이는 같은 해 항만 부문 매출총이익 343억원의 46.9%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결과 공사 전체 매출총이익은 인수 전인 2022년 422억원에서 2025년 182억원으로 56.9% 감소하였음

[여수광양항만공사 부문별 수익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A)	2023	2024	2025(B)	증감(B-A)
여수광양항만공사 전체					
매출액	1,428	1,388	1,485	1,467	39
매출원가	1,006	1,113	1,270	1,285	279
매출총이익	422	275	215	182	△240
여수광양항 부문					
매출액	1,428	1,364	1,437	1,414	△14
매출원가	1,006	1,003	1,042	1,071	65
매출총이익	422	343	395	343	△79
여수세계박람회 부문					
매출액	-	42	48	53	53
매출원가	-	110	228	214	214
매출총이익(손실)	-	△68	△180	△161	△161

주: 1.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2023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인수됨

2. 2023년은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인수 후 7개월 운영한 결과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손실을 흡수하여 온 항만 부문의 수익성도 저하되고 있어, 부문 간 상쇄 여력이 축소되고 있음

- 항만 부문 매출총이익은 2024년 395억원에서 2025년 343억원으로 13.2% 감소하였으며, 공사 전체 영업이익도 2022년 221억원에서 2024년 △88억원, 2025년 △8억원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음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으로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며, 이자비용은 2024년 61억원에서 2029년 277억원으로 354.1% 증가하고 이자보상배율도 2029년 0.36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정부선투자금 상환재원 마련과 함께 광양항 3-2단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비 조달이 함께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공사채는 2024년 2,800억원에서 2029년 7,400억원으로 4,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장기 재무전망(2025~2029)]

(단위: 억원, %)

구분	결산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자산	26,464	26,348	27,002	27,701	29,393	28,275
부채	7,716	7,279	8,135	9,035	10,969	9,975
· 금융부채	6,458	5,936	6,706	7,369	9,025	8,774
· 공사채	2,800	3,600	4,600	5,500	7,400	7,400
· 선투자금	3,658	2,336	2,106	1,869	1,625	1,374
부채비율	41.2	38.2	43.1	48.4	59.5	54.5
매출액	1,455	1,495	1,495	1,507	1,532	3,523
영업이익	△88	△17	△48	△30	△30	101
이자비용	61	113	208	227	270	277
당기순이익	△123	22	△202	△201	△244	△125
이자보상배율	△1.44	△0.15	△0.23	△0.13	△0.11	0.36

주: 1. 2029년 매출액에는 올촌 용복합 물류단지 분양수의 1,919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2025년 당기순이익은 금융부채조정이익 인식에 따른 것으로, 계획 수립 당시 추정치(397억원)를 반영한 금액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2025~2029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더불어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착수 2년이 경과하도록 완료되지 않아, 손실 개선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임

- 공사는 전남도(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와 공동으로 총 20억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24년 6월 착수하였으나, 2025년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
- 동 용역은 박람회장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하반기에 사후활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여수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나 용역 완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후속 절차의 착수도 지연될 수 있음

□ 박람회 부문의 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터플랜 용역도 중단된 상태인바, 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와 협의하여 용역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2.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연

가. 현 황

-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 부지에 신소재, 복합 물류·제조 산업 등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전남 여수시 울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 332만㎡를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부지조성(연약지반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총사업비는 6,532억원으로 이 중 공사가 5,617억원(86.0%), 국비가 915억원(14.0%)을 각각 부담하고 있음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대지위치	전남 여수시 울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
부지면적	332만㎡
사업기간	2019.7. ~ 2030.12.
건립내용	부지조성(연약지반개량 등) 1식
총사업비	6,532억원(공사 5,617억원, 정부 915억원)
조감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의 공사 부담액은 5,617억원으로, 공사의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 1조 4,296억원의 39.3%에 해당함
 - 공사의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 1조 4,296억원 중 동 사업이 6,532억원으로 45.7%를 차지하며, 공사 부담액 5,617억원은 항만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임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 투자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공사부담액	공사부담비율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2019~2030	6,532	5,617	86.0

주: 2026년 5월 기준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2019년 착공 이후 7년이 경과하였으나 집행률은 13.8%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되었음
 - 2026년 5월 기준 집행액은 745억원으로, 공사 부담액 중 건설이자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5,393억원 대비 13.8% 수준임
 - 공사는 사업 지연 사유로 재료원(토사, 석탄회 등) 수급 지연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월 2회 재료원 확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은 당초 2029년 12월에서 2030년 12월로 12개월 연장되었음
 - 아울러 연도별 집행액도 2024년 489억원에서 2025년 174억원, 2026년 5월까지 8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연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결과 잔여 사업비 4,648억원이 남은 4년간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연간 집행 규모가 그간의 실적을 크게 상회함
 - 2027년 이후 4년간 매년 1,000억원 내외가 집행될 계획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집행액(248억원)의 4배를 상회하는 규모임

- 동 기간 광양항 3-2단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5,53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두 사업의 집행 시기가 중첩될 예정으로 자금소요 집중에 따른 차입 및 금융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사업비 집행(예정)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기집행액	489	174	82	-	-	-	-	745
집행예정액	-	-	185	991	1,101	1,211	1,160	4,648

주: 2026년 5월 기준이며, 공사 부담액 5,617억원 중 건설이자 146억원과 재개발담당자 인건비 77억원을 제외한 5,393억원 기준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총사업비는 2020년 12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863억원 증가하였으나 국비 증가는 40억원에 그쳐 증가분의 95.4%인 823억원을 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공사 부담비율도 84.6%에서 86.0%로 상승하였음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억원)

구분	시기	공사 부담	국비	합계	증감	조정내용
예비타당성 조사	'20.8.	5,187	875	6,061	-	정부 예타 실시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사업계획	'20.12.	4,794	875	5,669	△393	예타 대비 공사비(산정단가 등) 감소
사업계획 변경	'23.5.	5,634	878	6,512	843	사업구역 변경 및 주요 자재 단가 변경
재정경제부 협의 반영	'24.8.	5,617	913	6,529	17	정부지원시설 설계비·감리비 등 변경
현재	'26.5.	5,617	915	6,532	3	국비 자율조정 등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공사의 중장기 매출 전망이 동 사업의 분양수익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사업 지연은 재무전망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5~2029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029년 매출액은 3,523억원으로 2028년 1,532억원 대비 1,99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 1,919억원이 동 사업 분양수익으로 계획되어 있어 매출 증가액의 96.4%를 차지함
 - 그런데 사업 완공 시점이 2030년 12월인 반면 분양수익은 2029년에 1,919억원이 계획되어 있어, 이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상당 규모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장기 재무전망(2025~2029)]

(단위: 억원)

구분	결산	전망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매출액	1,455	1,495	1,495	1,507	1,532	3,523

주: 2029년 매출액에는 올촌 용복합 물류단지 분양수익 1,919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2025~2029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앞서 본 바와 같이 2026년 5월 기준 집행률이 13.8%에 그치고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시점에 분양수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공사는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및 자원조달 계획을 관리하는 한편 2029년 분양수익의 실현 가능성을 부지별 분양계획과 연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9-1. 법령상 징수하는 방제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

가. 현 황

-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²⁾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함)을 징수하고 있음
 -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사고 발생과 관계 없이 방제선 및 방제장비 등 국가 방제능력을 상시 확보·유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임³⁾
 - 방제분담금의 징수 규모는 2026년 공단 예산 기준 연간 271억원 수준임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예산)
유조선	3,875	3,712	3,449	3,251	3,205
기타 선박	8,396	7,998	8,217	7,866	7,479
저장시설	16,405	16,651	15,583	15,135	15,134
방제분담금 계	28,676	28,361	27,249	26,252	27,140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성찬 예산분석관 (csc@assembly.go.kr, 6788-3745)

1)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들은 동시에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을 배치 또는 방제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법률상 ‘배치의무자’에 해당)

3) 기획예산처,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6.5.

□ 방제분담금의 부과 대상은 법령⁴⁾에 따라 방제선을 배치하거나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함)임

- 이들 배치의무자는 아직 실제 해양오염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는 아니나, 잠재적인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선박·유조선·기름저장시설 등의 소유자임. 따라서 방제분담금 역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의 성격을 가짐⁵⁾⁶⁾

[방제분담금 징수대상 및 징수율(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제1항)]

구분(소유자)		부과기준	부과단가
유조선	내항선	매 1회 입항시마다, 선박총톤수 기준 1톤당	2.74원
	외항선		14.76원
유조선 외 선박	내항선		1.41원
	외항선		7.60원
기름저장시설	경유	유류수령량 100리터마다	2.48원
	경유 이외		8.84원

4)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기획예산처,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6.5.

- 6) 한편, 방제분담금은 실제 사고시 소요되는 방제비용을 징수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실제 사고 발생시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별도의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방제분담금 외에 별도의 방제조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자료: 해양환경공단, 「선박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2019

□ 다만, 방제분담금 납부의무는 비록 의무의 주체(배치의무자)는 동일하나,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 자체와는 법률상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임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분담금 납부의무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금전 급부의무이나,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작위 의무에 해당함
- 따라서 이들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이므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방제선 등을 배치하였다고 하여 방제분담금이 감경·면제되는 것도 아님
- 법제처⁷⁾ 역시 양 의무는 법적 성질을 달리 하는 별개의 의무로서, 어느 한 쪽을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치의무자(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의 의무 규정]

구분	법적 성격	의무 내용	근거규정
방제분담금 납부 의무	금전급부 의무	선박 입항시 총 톤수 또는 유류수령시 수령량에 따라 정률납부	법 제69조① 및 시행령 제54조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 의무	작위의무	선박 입항시 총 톤수 또는 유류저장용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당 기름회수능력을 가진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	법 제67조① 및 시행령 제51조

7)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부과권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해양오염방제조치라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2항,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22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로부터 방제선등의 배치 또는 설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여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개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다른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료: 법제처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 등 관련)」, 2016.2.29.

나. 주요 쟁점

-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 고위험자인 배치의무자에게 준조세적 성격으로 일괄 부과하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으로는 별도 의무인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를 해양환경공단이 대신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수수료의 성격을 일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법 제67조제2항⁸⁾에 따르면 배치의무자는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한편, 법 제122조제3항⁹⁾ 및 시행령 제93조¹⁰⁾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선 등을 위탁 배치할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 여부를 공단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단은 자체 규정¹¹⁾을 통해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방제선 등의 위탁 배치는 별도 수수료 없이 방제분담금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비용을 받지 않고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음

8)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 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1)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해양환경공단공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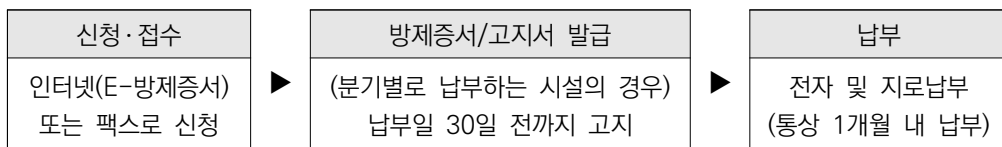
제10조(수수료 부과기준) ① 자재·약제의 비치 위탁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실무상으로도 방제분담금과 방제선 등의 위탁 배치 수수료는 동일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¹²⁾
 - 배치의무자는 방제분담금 납부와 동시에¹³⁾ 공단에 방제선 등 위탁배치 증서를 전자 홈페이지¹⁴⁾ 등에서 발급받아 의무 이행을 곧바로 증명할 수 있음
 - 따라서 방제분담금 납부자는 방제선 등의 위탁 배치 수수료 면제로 사실상 간단한 신청절차 이행만으로 방제선 등 배치의무가 위탁 이행된 것으로 같음되고 있는 상황임

[선박 방제증서(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발급절차]



자료: 해양환경공단, 「선박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2019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집행 측면에서도 해양환경공단은 위탁배치 수수료 수입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방제능력 확보 비용과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공단의 위탁배치 비용을 사실상 구분하지 않고 방제분담금을 집행하고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제2항¹⁵⁾은 방제분담금의 용도를 해양오염방제사업에 한하여 쓸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여기에 방제선 등의 위탁사업을 포함하고 있음(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12) 해양환경공단, 「선박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2019 중 “방제분담금 및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수수료 부과기준”

13) 실무상 엄밀하게는 방제증서와 고지서가 함께 발급됨. 따라서 통상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방제증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체납되더라도 분담금 독촉 등의 체납절차와 별개로 방제증서가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님

14) 해양환경공단 E-방제증서(<https://www.koem.or.kr:4443/site/skoem/main.do>)

15)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그런데 이에 대한 공단의 집행관리는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관리·운영, 노후 장비 교체 등 품목별 관리에 그치고 있음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세부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예산)
사업비	방제선 등 관리·운영	14,326	23,232	21,559	19,890	20,134
	노후장비 교체 등	2,525	2,595	2,507	2,454	4,203
	소계	16,851	25,827	24,066	22,344	24,337
일반 관리비	인건비	3,549	43	-	-	-
	기본경비	4,159	1,649	1,665	1,525	1,481
	소계	7,708	1,692	1,665	1,525	1,481
기타(방제자산 대체)		4,117	842	1,518	2,383	-
계		28,676	28,361	27,249	26,252	25,818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방제분담금 제도 운영은 배치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단 위탁 외 자율적 직접배치나 공동배치 등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배치의무자 간 실질적 방제비용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임
 - 공단에 방제선 등의 배치를 위탁한 업체는 사실상 방제분담금 납부 외에는 별도의 비용부담을 지지 않으나,
 - 방제선 등을 자체 배치하거나 자율적으로 타 업체와 공동 배치하는 업체는 동일한 방제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자체적인 방제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므로 더 큰 방제비용을 부담하게 됨
 - 그 결과, 법률상 규정된 방제선 등 배치의무를 스스로 이행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보는 불합리를 가져올 소지가 있음
 - 또한, 이로 인해 자율적인 자체 배치나 공동 배치가 활용되지 못하고 공단 위탁으로 한정될 소지가 있음
 -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체 배치의무자 중 공단 위탁 외 자체 배치나 공동배치 등의 상세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전체 배치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징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전체 방제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 민간 방제업체 수는 30개 이하에서 정체된 상태이며, 그마저도 방제업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는 4개소에 불과한 상황임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분담금 세부 부과·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부과	건수	20,954	22,494	30,162	29,616	31,600	31,152	31,196	30,549	31,033
	금액	23,718	23,559	25,899	25,732	24,883	28,676	28,361	27,249	26,252
징수	건수	20,713	22,474	30,148	29,418	31,600	31,152	31,196	30,549	31,033
	금액	23,665	23,557	25,899	25,731	24,883	28,676	28,361	27,249	26,252

자료: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 등록업체	29	29	29	30	30
방제업 전업	4	4	4	4	4
겸업(유창청소업)	25	25	25	26	26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정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 운영시 위탁배치 수수료의 성격이 혼용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방제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방제분담금과 위탁배치 수수료의 분리 운영, 집행 시 위탁사업비의 분리 관리 등의 방향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발간일 2026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세일포커스(tel 02·2275·6894)

ISSN 3140-5649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8-002040-10

ISSN 3140-5649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